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나눔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19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일시: 2018년 2월 24일(토) 오후2시

장소: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층(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나눔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19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일시: 2018년 2월 24일(토) 오후2시

장소: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층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원 / 한의원 / 치과(대덕·둔산) / 건강검진센터 / 가정간호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

T. 042-638-9042 / F. 042-638-9055 / E. 6389042@hanmail.net / H. www.mindlle.org

## 나눔과 협동의 조각보처럼



한 조각 한 조각만으로는  
쓰이기 어려운 조각 천들이 한데 모이고  
서로의 색깔과 모양이 어우러져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쓰임새를 만들 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나누고 협동하며  
한 땀 한 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지이자 상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한 땀 한 땀을  
함께 이루어가시겠습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나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WHO. 2000)

## **건강약속**

아플 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응시할 수 있게 하소서.  
우주인 생명이 내는 소리에 귀를 열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깨닫게 하소서.  
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서로가 되게 하소서.  
이웃이 아플 때 아픈 내 몸 쓰다듬듯 손 내밀어 잡게 하소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늘 서로 나누며  
그것을 통해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게 하소서.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다.

# 사명, 정관 전문

## 사명 정관 전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 공동육아 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를 축하하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살림의료복지의료사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에 조금씩 희망의 기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과 북핵 위기 고조로 잔뜩 위축되었던 경제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동안 한국사회에 쌓여있던 적폐도 청산되어지면서, 한국사회도 빠르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왜 그동안 해결 못했나 싶습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저성장에서 제로 성장사회로, 또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첩첩 산중과도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의 미래는 이러한 호혜와 평등의 경제 구조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사이에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 세계 2위로 소득불평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없이 독거노인 등 취약그룹의 양산과 더불어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불평등 심화, 만성질환 급증, 의료비 폭등으로 의료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 전 생애에 사람들이 존엄함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에 있도록 사회·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의료협동조합이 제반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돌봄과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민 참여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안산의료사협에서 시도하던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치의서비스가 각 시도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기반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간절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안산의료사협이 지역사회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사회가 안산시에서 안산의료사협이 시도한 건강혁명을 본받아,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도록 하는” 혁명적 변화가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희망의 이야기하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협동사회의 큰 꿈을 펼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기념사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부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나 준 식

반갑습니다.  
대의원, 조합원 여러분.

언제부턴가 총회란 자리는 제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자리가 되었어요.  
그저 반갑고 즐겁기만을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 1년을 함께 한 경험들을 가감 없이 내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럴것지요.

모두 실 틈 없이 바쁘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만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나는 내 몫의 노력과 정성을 다 했는지...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업,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건강, 의료, 복지, 돌봄의 현안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민들레가 나아갈 길...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삶이 이일 저일 따로따로 나누어져 돌아가는 것이 아닌듯이, 통째로 굴러나가는 큰 통이 되어 볼까요?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아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조합원들을 믿고 소통하며, 올해도 한 걸음 크게 내딛는 민들레를 만들어 나가요.

고맙습니다.



# 순서

통합19차 정기총회 진행순서 .....	10
통합19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	11
연혁 .....	12
조합 현황 .....	16
우수사례시상 .....	21
통합18차 정기총회 의사록 .....	22
통합19차 정기총회 상정의안 및 자료 .....	29
제1호 의안 2017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31
제2호 의안 2017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	37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117
제4호 의안 2017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121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	125
제6호 의안 임원선출 .....	141
제7호 의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149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181
기타 의안 .....	183
<b>부록</b> .....	185
민들레10원칙에 의한 2017년 보고 .....	186
정관 .....	203
규약 .....	220
개정정관(안) .....	227
개정규약(안) .....	243

# 통합19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진행순서

## 제1부 기념식

- 건강체조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2017년 활동영상 시청
- 내빈소개
- 축사
- 기념사
- 시상
- 폐식선언
- 기념촬영

## 제2부 정기총회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인과 서기 선임
- 경과보고
- 의사일정확정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상정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2017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17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2017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임원선출
  - 제7호 의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 기타 의안
- 폐회선언

# 통합19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경과보고

2018.01.04.(목)	<b>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b>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양봉석(위원장)
2018.1.18.(목)	<b>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b> - 현안검토: 기관별, 공간, 인력, 등 - 사업기조, 임원구성안
2018.1.25.(목)	<b>총회개최안내 문자메세지 발송(대의원 107명)</b>
2018.1.29.(월)	<b>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확대총준위, 이사회)</b> - 정기총회 개최결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확정) - 대의원 정수 107명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임원정수 결정: 이사15명, 감사2명 - 총회준비 경과 및 향후 활동계획 - 사업평가(안)검토: 조합원 설문 제안
2018.1.30.(화)	<b>총회공고</b>
2018.1.31.(수)	<b>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b> - 선관위 구성: 이원표(위원장), 남은순(간사), 박영기, 최순례 -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안) 확정, 후보자 등록일정 확정
2018.2.02.(금)	<b>임원선거공고, 임원후보자 등록(~9일)</b>
2018.2.06.(화)	<b>총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b> - 기조평가, 기조안 토론, 재정현황분석 및 토론
2018.2.08.(목)	<b>종합감사(사업분야)</b>
2018.2.13.(화)	<b>총회준비위원회 5차 회의</b> - 기조토론, 예산(안) 검토 등 <b>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b> - 선거시스템 점검
2018.2.19.(월)	<b>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b> - 후보자 등록서류 검토, 후보자확정, 공보안 확정
2018.2.20.(화)	<b>회계감사, 총회준비위원회 6차 회의(제규정 검토, 종합검토)</b> <b>총회, 선거공보, 대의원설문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b>
2018.2.23.(금)	<b>총회개최 및 참석안내 문자메시지 발송</b>
2018.2.24.(토)	<b>통합19차 정기총회, 임원선출(이사, 감사) 선거일</b>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년	2002년	2003년
<p>■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회원8명 민들레의료생협 준비모임 결성</p> <p>■ 민들레의료생협 준비위원회 결성(20여명)</p>	<p>“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p> <p>■ 민들레의원·한의원 개원</p> <p>■ 발기인 대회 (발기인50명, 대표:김조년)</p> <p>■ 창립총회 (조합원303명, 이사장 김조년)</p> <p>■ 소식지 창간호 ‘민들레’</p>	<p>“주치의 사업의 기반마련, 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한 조합 운영, 진료권 내 중심을 둔 조합활동”</p> <p>■ 홈헬퍼파견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p>■ 공동체화페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2004년	2005년	2006년
<p>“조합원 가족주치의, 법동품앗이, 민들레 학교”</p> <p>■ 일본아마가사끼 의료생협 방문 환영회</p> <p>■ 법동품앗이 창립</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건강실천단 발대식 만걸음 걷기 행사(계족산)</p> <p>■ 새터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운동회</p> <p>■ 민들레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p> <p>■ 한국의료생협연대 개소식</p> <p>■ 민들레의원 1층 이전</p> <p>■ 전화상담 민들레 교육훈련</p> <p>■ 공동체 자원활동가 교육훈련</p> <p>■ 치과 개원</p>

## 2007년

“건고 체조하고  
자전거타는 해”

- 월평공원-갑천 생태계 지키기 시민대책위
- 「공생공빈」저자 스찌다 다카시 초청강연회
- 암치유 전략워크숍(나준식)
- 공동생협학교

## 2008년

“지구와 함께 건강해지는 해”

- 태안 자원활동
- 건강실천단 발대식
- 한의원 뜸 전략 기획단
- 슬로건 만들기 대의원 WS
- 창립6주년 등반대회
- 건강캠프 ‘오약사 따라잡기’
- 소액금융지원 약정체결 (사회투자지원재단)
- 의료생협 서비스 품질 WS

## 2009년

“건강증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해”

- 일본 미나미 의료생협 민들레 방문 및 교류회
- 제1차 이용자 간담회
- 건강증진실 개소
- 창립7주년 야간산행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보건분야 개강
- 호숫가품앗이가게 개소식
- 노인복지센터 이전개소식

## 2010년

“건강한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 해”

- 일본 / 일본의료생협 연수
- 건강검진센터 개소
- 비영리경영컨퍼런스
- 가정간호사업소 개소

## 2011년

“조합원이 함께  
민들레를 세우는 해”

- 건강검진 협약 (세이브더칠드런 등)
- 대전지역생협연대 공동산행
- 조합원 방문의 날
- 제2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
- 임시대의원 총회(둔산진출)
- 둔산민들레 추진위원회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전광역시)

## 2012년

“새로운 10년을 펼치는 해”

- 둔산민들레 개원
- 황성수 박사 초청 특강
- 한미FTA폐기 동네춧불
- 현미채식건강실천단
- iCOOP씨앗기금 전달식
- 조합원 제안사업
- 우수 사회적 기업 표창 (대통령)
- 업무협약(양심과 인권‘나무’)
- 마라톤 소모임 창립
-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
- 치과진료협약(굿네이버스)
- 여성새일센터 협약
- 여성친화기업 인증
- 대덕치과 이전

## 2013년

###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 민들레-한발생협 세화강좌
- 씨앗기금 협약
- 한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 가입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환창립
- 의료생협 현지조사 참여 (보건복지부)

## 2014년

### “조합원과 더 많이 만나는 해”

- 좋은 이사 학교
- 장애인부모연대 치과치료협약
- 임시총회(건물매입)
- 세상콘테스트 성장기부문 수상
- 건물매입계약
-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
- 민들레 방문의 날 (비영리협동조합연대)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자 민들레 방문
- 건물매입을 위한 조합원 행사 진행(구별)
- 건강의 집 담당자 교육
- 사회공헌 한마당 참여
- 마당극패 우금치 업무협약

## 2015년

### “흑자경영 원년”

- SK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 우수 협동조합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 건물매입을 위한 일일чат집 (유성구 조합원)
-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 홈커밍데이
- 건강나눔터 “바르게 걷기”
- 전국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어린이집)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문제해결 기술연구 리빙랩사업 선정(연구재단)
- 건물매입완료

## 2016년

### “건강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해”

- 예비이사학교
- 1기 건강조직가 양성과정
- 유성구 진잠동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 리빙랩-당노자조모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 노인의료복지연구모임
- 우리건물꾸미기, 본부이전
- 아동여성안전병원 협약(대전광역시)
- 민들레 산악회 발족
- 사회적기업 클라우드 펀딩대회 최우수상
- ‘청춘은행’ 시스템 구축
- 스포츠의학센터 개소
- 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 김삼용 교수 건강상담(둔산민들레)
- 민들레 혁신전략 TFteam 운영
- 여성친화기업 인증(대전광역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

“주민참여 보건의료혁신을 통한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주도해가는 해”

- 조세종 감사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 나준식 이사장 사회적기업 유공 대전광역시장 표창
- [드림터] 청소년 희망멘토 사업장 인증(대동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개소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격차해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재단)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가꾸자 사업(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민들레 스마트 주치의
- 2017년 제1차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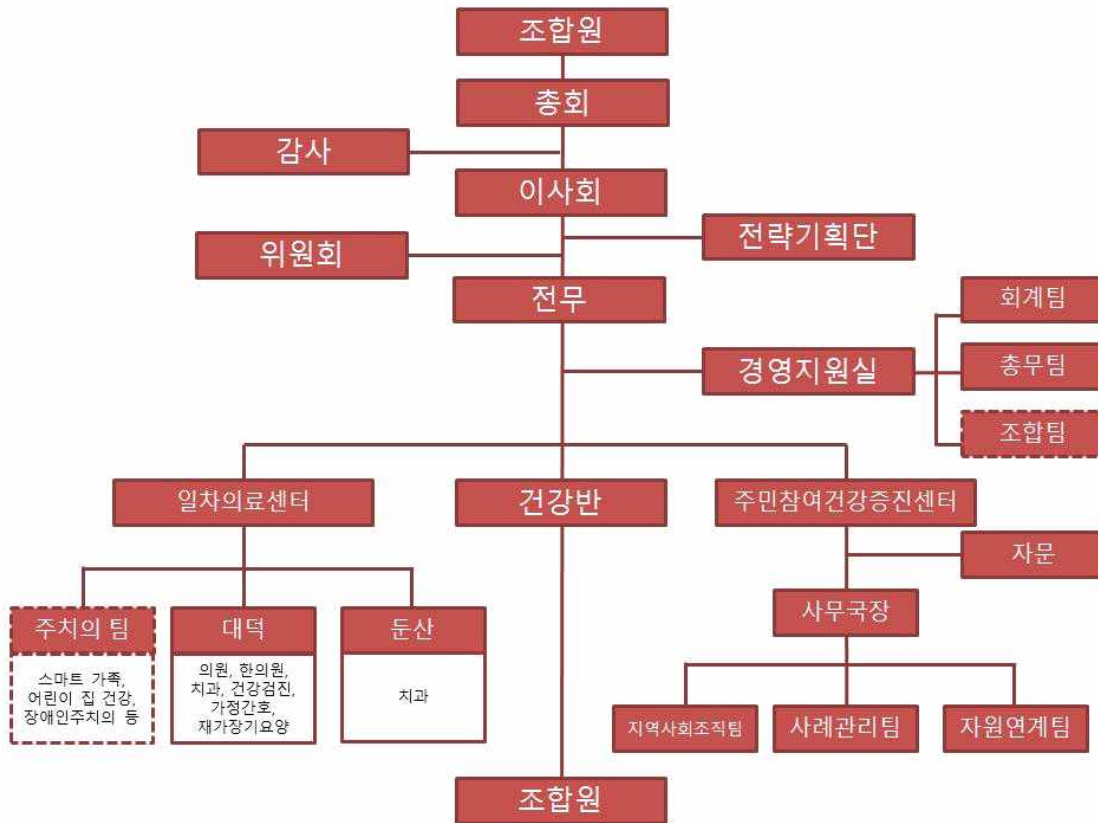
※ 각종 인증 및 협약현황 (p.200) 참조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1. 일반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12.31현재)
조합원(세대)	3,542	3,610
출자금(원)	1,372,695,591	1,299,503,241
총자산(원)	2,856,191,935	2,064,180,853
직원(명)	49	41

## 2. 조직도





### 3. 직원 현황

〈2018. 2. 24현재〉

소속	부서	이름
일차 의료 센터	의원, 가정간호	나준식 박지영 윤미경 유미경 김옥순 황신애 김인화 이주현(육아휴직중) (8)
	검진	허애령 이지명 황정인 한선영 최수이 박종례 김혜원 (7)
	한의원	염종원 김문경 홍현채 이은주 (4)
	대덕 치과	이창준 신종섭 감능야 곽지영 박윤민(육아휴직중) (5)
	둔산 치과	김희형 장현미 김은선 장사라 (4)
주민참여 건강증진 센터	사무국	양봉석 민혜란 이명희 (3)
	지역사회조직팀	송직근 남은순 이자우 (3)
	사례관리팀	이시현 염은경 김태현 (3)
	자원연계팀	배영미 (1)
경영지원실		김성훈 한영수 전경화 오은아 강종예 (5)
<b>직원 계</b>		<b>43</b>

### 4.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소 속
이사장	나준식	민들레의원장 / 경영위원회
부이사장	김성훈	본부장 / 조직교육위원회 / 혁신전략TFteam
이사	민혜란	사업부장 / 경영위원회 / 환자권익위원회 / 혁신전략TFteam
이사	배영미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팀장 / 조직교육위원회
이사	봉미경	조직교육위원회
이사	양봉석	혁신전략TFteam
이사	유승민	환자권익위원회 / 혁신전략TFteam
이사	장기홍	조직교육위원
이사	정봉현	홍보위원회
이사	정운재	경영위원회
이사	홍미옥	마음의 숲
<b>이사 계</b>		<b>11 명</b>
감사	조세종	소셜경영연구소장
감사	배남억	공인회계사
<b>감사 계</b>		<b>2 명</b>
<b>임원 계</b>		<b>13 명</b>

## 5. 대의원 현황 (7기)

유형	선거구	명단
소비자	대덕1~4	장현미, 김옥순, 최은남, 오민우, 이은예, 신경자, 진옥화, 변동명, 공옥순, 송석호, 신귀연, 최재덕, 조미선, 강경아, 김찬옥, 김창원, 박종례, 김혜원, 이정민, 오순희, 박명순, 이자우, 박은배, 이순순, 권의경, 이은영, 김연희, 김도화, 이지명, 박윤민, 홍현재, 오재진, 김경아, 이현옥, 홍춘기, 홍기분
	동구1~4	탁현배, 황정현, 이호숙, 강수환, 한선영, 김현철, 윤성숙, 황용학
	서구1~6	강주성, 김창근, 홍은영, 황유미, 김효섭, 양봉석, 정은희, 장사라, 김윤기, 장기홍, 최수이, 봉미경, 신현정, 김대회, 조선기, 정운재, 서온철, 김진화
	유성1~4	유영란, 석연희, 박미양, 홍미자, 이원호, 고 연, 유승민, 김인숙, 김은선, 박병철, 나준식
	중구1~4	권성민, 박용숙, 홍미옥, 박문주, 유인수
자원 봉사자	자조모임	이금자, 고광현
	건강리더	김성훈, 이주현
	건강반	송직근, 옥 영, 전경화, 박종휴
직원	본부/사업소	유미경, 김문경, 신종섭, 김희형, 황정인, 윤미경, 민혜란, 배영미, 한영수
후원자	스스로조합비	조세종, 이선아, 최정혜, 신용희, 이종현
단체	건강의 집	박종갑, 이정섭, 이경자, 김계숙, 이 송, 최장희
계		107명

## 6. 건강리더 현황

구분	명단	인원(명)
어르신 건강리더	김창순, 박상옥, 신귀연, 신명희, 심석순, 이정자, 이정자, 임종분, 정옥금, 정춘택, 조정자,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14
청소년 건강리더	김윤기, 김희진, 박준서, 고경민, 최동민, 오지은, 채지은, 양인준, 임호진, 백찬하, 하예은, 고가원, 김묘선, 정형준, 송성민	15
1기 건강조직가	민혜란, 배영미, 김정준, 이명희, 전경화, 이자우, 송직근	7
1기 건강리더	장기홍, 봉미경, 오민우, 이주현, 장현미, 민혜란, 이자우, 김성훈, 송직근, 김문경, 이정민, 김찬옥, 김수연, 박윤민	14
2기 건강리더	김수진, 임주성, 배영미, 남은순, 박은배, 이금자, 김옥순, 박종례, 박진숙	9
시니어 2기	강영순, 권영주, 김경순, 김경희, 김정자, 김태순, 소육례, 송선희, 서경숙, 심석순, 안영숙, 우종숙, 윤정순, 이정자, 이정자, 정옥금, 정춘택,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한귀분	21
3기 건강리더	최미경, 국경덕, 한영수, 김혜원, 이명희, 이영은, 박정희	7
청소년 2기	강규혁, 고경민, 구재모, 구지영, 김동용, 백찬하, 심지후, 안경민, 안도현, 윤희섭, 이민수, 허재영	12
4기 건강리더	이시현, 최석민, 박미리, 정성미, 최은숙, 김영미, 신지혜, 이순희, 유난형, 신철교, 이임향	11
계		110

## 7. 스스로조합비 참여현황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계
이월(세대수)	48	153	181	185	199
신규(세대수)	115	29	7	18	9
해지(세대수)	10	1	3	4	13
당월 계(세대수)	153	181	185	199	195
금액(원)	11,920,000	5,040,000	10,770,000	16,530,000	22,550,000

### o 조합비 참여자 명단(2017.12.31. 기준)

강건구 강수환 강종구 강종숙 강종예 강현석 고광현 고명순 고명호 고미경 공옥순 권기철  
 권미양 권의경 권지연 권지훈 김경희 김광희 김대희 김동석 김동수 김무남 김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향 김민희 김삼용 김성훈 김수경 김수진 김영선 김영해 김옥순 김용경 김윤기  
 김은선 김 의 김자영 김재용 김찬옥 김창일 김현영 김현태 김혜원 김희형 나준식 남은순  
 노가은 노미정 노훈희 민혜란 박문주 박미양 박범진 박병철 박상수 박승도 박영민 박유경  
 박종례 박종희 박준규 박지영 박진희 박태일 배영미 백경수 백유선 봉미경 서온철 서현정  
 석연희 선재규 성광진 손태희 손형우 송석채 송직근 송해경 신경희 신귀연 신명호 신소연  
 신용희 신원식 신지혜 신현정 신호섭 안영섭 양봉석 양성주 엄경애 엄기정 엄윤숙 엄은경  
 오민우 우광제 우인옥 유 미 유미경 유수진 유승민 유승우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윤명숙  
 윤미경 윤보국 윤순애 윤연숙 윤창재 이경자 이금자 이기순 이덕희 이동철 이민영 이선아  
 이선영 이 송 이숙경 이연주 이영은 이원표 이윤정 이자우 이정섭 이종현 이주욱 이주현  
 이지명 이진미 이찬현 이해순 이해영 이효진 임경옥 임애경 임은정 임인선 임주성 임현정  
 임희정 장기홍 장병천 장사라 장현미 전경화 전송희 정나현 정병오 정복희 정상민 정연희  
 정운재 정은희 정종하 정철호 정현숙 조병민 조성주 조세종 조영국 조윤희 주영배 주웅식  
 진옥화 차은영 차주연 채유희 천성아 최소영 최수이 최영태 최은남 최장희 최정주 최정혜  
 한선영 한영수 허애령 허영란 홍미옥 홍미자 홍완기 홍은영 홍종순 홍춘기 홍현채 황성희  
 황신애 황정애 황정인 (이상 195명)

## 8. 후원금 현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600,000	(주)동영건설	360,000
마음의 숲	1,400,000	생명복지관	100,000
씨앗 후원금	21,370	강만식	40,000
김삼용	150,000	김영만	50,000
배영미	30,000	최장희	2,330,000
허애령	500,000	무명	15,700
<b>계</b>			<b>5,597,070</b>

## 9.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위원	실무간사
인 사 위 원 회	나준식, 김성훈, 민혜란, 봉미경, 유승민, 정운재, 한영수	한영수
환 자 권 익 위 원 회	유승민, 봉미경, 장현미, 이종현, 김연희	민혜란
조 직 · 교 육 위 원 회	권의경, 김성훈, 김문경, 배영미, 봉미경, 석연희, 장기홍, 홍춘기, 황정인, 남은순	송직근
경 영 기 획 위 원 회	나준식, 정운재, 김성훈, 송직근, 한영수, 전경화	한영수
장 기 발 전 위 원 회	나준식, 김성훈, 양봉석, 조세종	민혜란
홍 보 위 원 회	강화평, 김성훈, 박영기, 유승민, 정봉현	송직근
소 식 지 편 집 위 원 회	김윤기, 권나경, 유인수, 이미선, 이종현, 최장희, 한영수	한영수
임 직 원 협 의 회	나준식, 김성훈, 유승민, 이지명, 황정인, 장현미	한영수

## 10. 건강의 집 현황

구분	지역	건강의 집	주요활동
조합형	본 점	대덕 민들레	의료기관, 건강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연대형	대덕구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	현미채식 등 건강프로그램 협의
		마루어린이도서관	건강리더양성과정
		동아체육관	건강리더양성과정
	서 구	작은나무어린이도서관	바르게 걷기 강좌 진행
		한살림대전 생명문화공간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바르게 걷기 등 건강프로그램 협의
	유성구	잇수다	바르게 걷기, 책읽기 소모임 운영
	중 구	원도심레츠	바르게 걷기, 건강강좌 진행
동 구	호숫가 마을(추동)	건강모듬 협의	
민관협력형	진 잠		CBPR

# 우수사례 시상

부 문		수 상 자	수 상 이 유
건 강 리 더	조합원	신철교	신철교 조합원은 건강리더 4기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민들레의 활동에 함께 해 오셨습니다. 나와 이웃, 마을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응원하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직원	윤미경	윤미경 가정간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필요한 어떤 곳,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나와 이웃, 마을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임원	경영위원회	늘 민들레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들레를 생각합니다. 매월 거르지 않고 민들레의 발전과 민들레의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고뇌와 열띤 토론으로 2017년 경영수지 흑자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마움을 이 상장에 담아 전합니다.
건강반	민들레 가족산악회	민들레가족산악회는 민들레 대표적인 건강반으로 자발적인 운영위를 구성해 매월 정기산행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난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당노자조모임	민들레당노자조모임은 당뇨라는 질환에 관심을 가진 조합원들의 모임입니다. 정보나눔과 상호지지를 넘어 '내 안의 의사'를 통한 건강증진 활동을 응원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일차의료센터	둔산민들레 치과	둔산민들레치과는 2012년 둔산지역에 새롭게 동지를 트는 의료기관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예방의료와 적정진료의 원칙으로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이경민	이경민 조합원은 노인건강돌봄사업에 작업치료사로 참여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기능 및 사회자원 활용 능력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심리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오신 활동에 고마운 마음을 이 상에 담아 드립니다.	
	(주)파란세상	주식회사 파란세상은 어르신들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시도록 주거 공간의 환경위생 개선과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언제나 따스한 손길과 미소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열린부뚜막 협동조합	열린부뚜막협동조합은 민들레와 영양만점 반찬 사업을 진행하며 정성을 다한 반찬 제공과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한결 같이 살피고 속 깊은 이야기도 들어주며 따스한 손길과 미소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특별상	고연	고연 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설립 발기인, 자원활동가, 대의원, 이사, 후원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해 참여해주셨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 전차회의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 필 : 이사장 나준식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18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18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2. 공고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3. 개최일시 : 2017.2.18.(토) 오후2시(기념식), 3시6분~5시3분(정기총회)
4. 개최장소 : 우리조합건물 3층(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5. 정기총회 (의장: 나준식)

### 가. 성원확인

의장이 성원보고를 부탁하다. 송직근 조직부장이 선출대의원 110명 중 조합탈퇴 1명을 제외한 대의원 총원 109명 중 76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이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다.

### 나. 개회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3시6분에 통합18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의사록 서명날인인 및 서기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신경희, 이은영, 박병철 대의원을 선임하고, 서기로는 이명희 조합원을 선임한 후 참석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서명날인인과 서기를 확정하다.

### 라. 경과보고

의장이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하다. 이에 김성훈 본부장이 자료집 11쪽을 참고하여 총회개최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이 회의가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개최되었음을 선포하다.

### 마. 의사일정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29쪽에 상정되어 있는 의안 외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대의원에게 확인하

다. 다수의 대의원이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바.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

의장이 지난 임시총회당시 통합16차 정기총회 의사록은 확인했고,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통합17차 임시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회의록 낭독을 부탁하다. 전차회의록 낭독자 권의경 대의원이 진행발언으로 전차회의록 낭독을 대신해 자료집에 작성되어 있는 서면으로 확인 할 것을 제안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총회 의사록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재차 당부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하다. 이경자 대의원이 동의하고,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전차회의록을 승인하다.

**사.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2016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조세종 감사가 자료집 33쪽~35쪽을 참고해 감사보고를 하다. 의장이 참여 대의원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다. 김창근 대의원이 동의하고, 오민우 대의원 외 다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6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2) 제2호 의안: 2016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의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자료집 41쪽~43쪽 총평을 중심으로 장기홍 이사(조직교육위원장)가 사업보고를 하고, 자료집 119쪽부터 나와 있는 경영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운재 이사(경영위원장)가 결산(안)을 설명하다. 의장이 참여 대의원에게 의견 및 질문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다. 김창근 대의원이 동의하고, 이원호 대의원이 재청하여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한영수 총무부장이 의안을 설명하다. 의안에 대해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2016년 탈퇴조합원 61세대에게 출자금 4,820,000원을 환급하는 것을 승인하다.

**4) 제4호 의안: 2016년 손실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한영수 총무부장이 의안을 설명하다. 의안에 대해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2016년 당기 손실금 454,855,069원과 기존의 손실금 489,907,908원을 포함한 총 944,762,977원의 손실금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을 승인하다.

**5) 제5호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송직근 조직부장이 의안에 대해 자료집151쪽~153쪽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개정될 정관은 총3개 조항으로 조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제2조), 건물매입으로 인한 주사무소 주소 변경과 의료법 관련 조항 신설로 의료기관 소재지 정관기재(제4조), 기타사업에 임대사업을 포함(제57조)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현행 구(舊)조문	개정(안) 신(新)조문
<b>제2조(목적)</b>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b>제2조(목적)</b>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u>전문에서 밝힌 네가지 이념에 따라</u>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

<p>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u>의료의 공공성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법동)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u>②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u>  <u>③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u></li> <li>2. <u>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u></li> <li>3. <u>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u></li> <li>4. <u>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u></li> <li>5. <u>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u></li> </ol>
<p><b>제57조(사업의 종류)</b>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li> <li>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li> <li>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li> <li>4.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li> <li>5.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li> <li>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li> </ol>	<p><b>제57조(사업의 종류)</b>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li> <li>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li> <li>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li> <li>4.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li> <li>5.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li> <li>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li> <li>7. <b>임대사업</b></li> </ol>

의장이 참여 대의원에게 의견 및 질문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정관개정(안)을 승인한다.

**6) 제6호 의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의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자료집 160쪽~161쪽 총평을 중심으로 양봉석 이사(혁신TFteam)가 사업기조 및 혁신안을 설명하고, 자료집 175쪽부터 나와 있는 경영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운재 이사(경영위원장)가 예산(안)을 설명하다.

• 재정독립을 추구했는데, 안되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본부의 인력을 재편했는데도 본부가 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박봉희 조합원)



• 이사회 산하의 본부가 지금은 직제 개념으로 되어있었는데, 사업소, 경영지원실과 센터 간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조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사장, 부이사장이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사람으로 본부장이 남아있다. 재정독립은 2년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양봉석 이사)

• 재정과 관련한 부연설명을 하자면, 작년 모금회 집행된 금액과 둔산적자 1억2천만원이 올해 총 적자규모이다. 둔산을 배제하고 보면 재정적인 수지구조는 맞추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본부의 경우 작년에 스스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면서 1억 2천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다. 올해도 모금회, 리빙랩과 재작년부터 모색해온 스스로조합비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교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건강증진센터의 구체적인 인력구성으로는 대표로 전 이사장이신 총대병원 암센터 김삼용 교수님을 추천, 전체총괄 센터장으로는 나준식 이사장, 조직체계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많아 양봉석 이사 본인이 매니저, 스태프로 모금회 인원, 본부 인원이 재편되어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한다.(양봉석 이사)

• 치과 매출예산을 마이너스로 잡은 이유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수입에 대한 근거, 작년 출자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텐데 올해도 목표액이 적지 않다. 목표가 과하지는 않은가? 따져봤을 때 차기년도 예산이 2억원 정도 마이너스될 것 같다. 질문 드린다.(오재진 대의원)

• 치과 교정치료 항목이 없어지는 것과 관련한 매출감소, 치과원장 1인 감소로 인한 지출도 감소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수익도 감소될 것이라 전체적으로 매출을 작게 잡았다. 조직활동 항목에 있는 약 7천만원은 사회성과인센티브, 스스로조합비 목표치 300명, 출자금 신규가입을 반영한 결과이다. 출자금은 신규조합원출자금과 10년 넘게 시행해 온 CMS 등 최소한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은 출자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실제로는 증가분이 줄어든 것이다. 증자총액 자체는 높았다.(나준식 이사장)

• 건물매입 당시 많은 출자를 조직했었고, 이후 필요에 의해 감좌한 금액이 많아 실제 증가분이 많이 늘지 못한 측면이 있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시스템화 되어야 지속적으로 증좌가 된다. 자본 확충 계획은 조합원이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시스템화 작업은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정운재 이사)

• 자료집 178쪽, 관리비 29억이 자료집176쪽 예산총칙(안)의 내용과 다른 것 같다. 확인바란다.(송석호 대의원)

• 인건비, 관리비 항목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다.(한영수 총무부장)

• 인건비가 관리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비로 들어가 잘못되어있다. 자료집 176쪽 교정하면 맞다. 수정하겠다.(나준식 이사장)

• 민들레에서 진료 후 다른 곳에서 수술하라고 해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수술할 것이 아니라더라. 전체적으로 규모도 커지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것 같아 말씀드린다.(송석호 대의원)

• 치과, 본인이 하기에 가장 좋은 치료가 아닐 경우 무리하게 본인이 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다른 치과에 가보라는 말에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진료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안내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 최근 사업소 질관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나준식 이사장)

- 자본조성계획이 일목요연하게 표현되면 좋을 것 같다.(오재진 대의원)
- 예산 총칙, 전년 수치를 대비해 표시해주는 방식 등으로 만들어 가겠다. 지적사항 반영해서 대의원 밴드에 올리겠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결산대비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전년예산도 같이 포함시켜서 표시되면 좋을 것 같다.(나준식 이사장)
- 조합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 동의를 안된다. 왜 조합원 참여가 저조한지, 왜 전체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마을 모임이 운영이 안되는지,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2017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 것이 뜬구름 잡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예방사업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조합원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보고되었으면 좋겠다.(김연희 대의원)
- 조합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 각자가 지역사회 건강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도록 건강리더 양성과정 진행했고 올해 100명의 리더 양성 목표, 리더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진행, 그런 성과들이 결합된 활동이 거점인 건강의 집에서 펼쳐지도록 할 예정. 추가 보완 설명은 이사회 논의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나도 폐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조합원 중심의 운영이라는 방법 자체가 폐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나준식 이사장)
- ‘대기업이 하는 방식의 건강관리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이 아닌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김연희 대의원)
-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그것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한다. 건강의 집과 건강리더, 건강반 활동이 주로 예방 건강증진의 주활동이다. 현재는 본부의 활동에 편재되어 있고,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나열적이고 담당자가 정해주는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여형을 만든 이유는 현재 역량과 자원을 개편해 건강의 집과 건강리더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공공서비스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확대하지 말고 점검해보자는 의미이다. 지향하는 바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다. 주민들이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 목표이고, 그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양봉석 이사)
-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존 조합원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으니 보완해주면 좋겠다.(김연희 대의원)
- 건강의 집, 건강리더활동, 건강반활동을 주민참여형건강증진센터로 옮긴다. 당분간은 현 체제를 옮겨서 운영하고 이후 전체적으로 시스템, 내용을 유기적으로 개편 운영하겠다는 안이다. 언급이 없지 않다.(양봉석 이사)
- 나머지가 주민참여형건강증진센터로 사업으로 가는 것인가?(김연희 대의원)
- 현재 안은 그렇다.(양봉석 이사)
-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김성훈 부이사장/본부장)
- 요청한 내용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자료집 162쪽~173쪽에 부서별 사업계획 및 업무배치가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송직근 조직부장)

의장이 참여 대의원에게 추가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예산총칙(안) 표수정 및 보완(전년대비, 세부내역 등)한 자료를 추후 대의원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절차를 진행하다. 송석호 대의원이 동의하고,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 7) 제7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참여 대의원에게 승인요청을 하다. 다수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2017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384,521,009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할 것을 승인하다.

**8) 제8호 의안: 특별결의(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이경자 대의원이 자료집 191쪽~194쪽을 참고하여 의안을 설명하다.  
다수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특별결의(안)을 승인하고, 핵재처리·고속로 실험 중단, 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처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관련단체와 연대할 것을 결의하다.

**아. 폐회**

의장이 부의된 모든 안건이 모두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기타의안이 있는지를 물어 없음을 확인한 후 오후 5시3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18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총회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이 전원이 기명날하다.

2017년 2월 18일

의 장	나준식
서명날인인	신경희, 이은영, 박병철



# 통합19차 정기총회(제14차 대의원총회)

## 상정의안 및 자료

제1호 의안	2017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7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7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
제7호 의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기타 의안	



## 제1호 의안 2017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의결주문: 2017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6호, 제52조제1항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2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2017년 종합감사보고서

감사는 정관 제5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아 래 -

### 1. 감사 일시

- 사업부문 : 2018년 2월 12일 (월)
- 회계부문 : 2018년 2월 20일 (화)

2. 감사 범위 : 2017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3. 감사 근거 : 정관 제52조에 의함

### 4. 감사 결과 보고

#### 가. 사업 부문

무엇보다 2017년 한해 많은 도전 속에서도 민들레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흑자경영을 달성하였습니다. 흑자경영을 이루기 위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보건의료의 혁신적인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더욱이 지난 총회에서 민들레 사업기조는 '사업소별 자주관리시스템 도입'과 '흑자경영 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조합원들께 흑자경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더욱 반갑고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2017년도 사업부문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의견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들레는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안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논의한 혁신안이 조합원들에게 잘 소개되고, 조합원들의 의견 또한 수렴될 수 있도록 대의원 대회나 지역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조합원의 증가에 있어 목표 대비 21%(300세대 목표 대비 63세대 증가)에 불과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구성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조합 활동 사업이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모듬의 성과 중에서 ‘산악회’와 ‘역사와놀자’ 모듬에 대한 성과 관리가 미흡합니다. 조합원이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산악회’와, 자발적으로 역사탐방을 지속하고 있는 ‘역사와놀자’팀의 구성원들은 자발성과 지속성으로 실질적인 건강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인원을 건강리더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참여건강관리를 위한 민들레의 혁신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계에서도 민들레의 연대를 커다란 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과 논의하고 협동조합간의 일상적인 교류를 더욱 폭넓게 하시길 당부합니다.

다섯째, 민들레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요지는 협동조합의 업무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상태와 예산집행 현황을 관할 행정기관이 인식할 수 있었던 기회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체계적인 업무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치의와 고령화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정책과 지역사업이 조화롭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 회계 부문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17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17년 경영성과는, 경영진의 책임있는 경영계획과 각고의 노력으로 적자에서 흑자(당기순이익:20,284,289원)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2018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합원들의 후원금(금:28,147,070원)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였습니다.

사업감사 조 세 종



회계감사 배 남 역





## 제2호 의안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5호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2017년 사업보고

- 총평
- 5대 핵심지표 달성현황
- 일차의료센터 보고
- 경영지원실 보고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보고

# 혁신전략 추진경과와 평가

## 2017년 민들레의료사협 혁신전략 추진경과와 평가

양봉석(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이사)

### 1. 의료사협과 혁신

#### 1) 혁신의 개념

혁신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와 시장 및 공공섹터의 전 분야에서 쓰일 수 있지만 특히 신기술과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이는데 단순한 생산기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신시장 개척이나 신제품의 개발, 신자원의 획득, 생산조직의 개선, 신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가 주장한 경제발전론의 중심 개념인데 의료사협과 관련해서는 소위 안성의료사협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의료사협 모델의 미션, 사회적 가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사업과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 2) 의료사협(구 의료생협)의 혁신의제

##### (1) 역사

의료생협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중 아시아 지역에만 300개 이상이다. 그 가운데 일본 의료생협운동은 70여년의 역사에 119개 조합, 220만 조합원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 의료생협운동은 현재와 같은 의료생협이 나타나기 이전, 94년 안성의료생협 창립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법) 제정 이전, 법제정 이후부터 한국의료생협연대 (이후 연대) 출범이전까지, 연대 출범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 의료생협운동이 태동되기 전 활동했던 집단으로 첫째, 1968년 부산지역에서 장기려박사에 의해 추진된 청십자의료협동조합운동, 두 번째는 1972년 도시빈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 외곽에서 진행한 의료협동방식의 운동이 전개되어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 조직, 1974년 서울 신설동 판자촌에서 허병섭 목사가 시도한 의료협동조합, 그리고 한국 노총의 향운노조가 세운 인천의 복지병원도 우리의 의료생협사를 논하는 데는 다루어야 할 소재들이다.

㉡ 현재와 같은 의료생협운동의 시작부터 생협법 제정이전 시기는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단계였다. 이 시기 설립된 의료생협의 특징을 보면 지역주민과 의료인의 강한 신뢰가 설립의 중요 요인이다. 1994년 설립된 안성의료생협의 경우는 1987년 주말 진료소 활동으로부터 쌓인 지역주민과 의료인의 신뢰가 있었고 1996년 인천평화의료생협의 경우도 1989년부터 노동자 건강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평화의원과 지역주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에 반해 1991년부터 지역에서 건강문제를 고민했던 지역주민조직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과 "동의학 민방연구회"가 1996년 안산에서 의료생협을 추진, 2000년 4월에 안산의료생협이 창립하여 의료생협 법인1호로 등록하였다.

㉔ 생협법 제정이후부터 연대 출범이전 시기는 1998년 법이 제정되어 제도로부터 오는 공신력과 안성, 인천평화의료생협의 사례가 있어 의료생협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외부환경이 조성된 시기로 이러한 외부조건과 지역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운동, 산돌교회 중심의 다양한 노동자 활동, 지역 화폐운동의 경험이 2002년 원주, 서울, 대전에서 의료생협을 만들어 냈다.

㉕ 2003년 연대 출범 이후 그동안의 인적 교류를 넘어선 조직적인 연대활동이 시작되었고 연대의 시민사회단체와 생협을 대상으로 한 의료생협 활동과 공영방송 KBS 일요스페셜의 의료생협 방영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료생협이 알려지게 된다. 이때부터는 의료생협 설립과 관련된 문의 및 지원을 연대 차원에서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의료생협운동의 전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연대 설립 이후 전주, 함께걸음(서울 노원구), 청주, 용인, 성남, 수원, 시흥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생겨났고 이 무렵부터 연대 소속 외 의료생협들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 (2) 의료사협운동의 간략 평가와 아젠다

### ㉑ 한국의 건강보험 개요

한국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500인 이상부터 시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00인 이상,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5인 이상 사업장을 거쳐 1989년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 오늘날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결국 제도의 발전과정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확대와 직결된다고 했을 때 의료서비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유럽의 산업혁명시기 사회적경제 활동이 시작된 것처럼 실업이나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소명의식을 지닌 양심적 의료인과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협동조합방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보건 의료체계는 민간 위주로 이루어져 ㉑ 의원 => 민간 대 공공 비율은 95 대 5 로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㉒ 병원 => 민간 대 공공 비율은 90 대 10 으로,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에도 민간 분야가 압도적이다. 병상총량제나 의료기관 기능정립 같은 규제수단이 작동되지 않아 수도권과 도시로의 편중현상이 심각해서 경쟁구조 심화되었고 여기에 한국의 건강보험 지불구조는 행위별 수가에 3저 시스템으로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율로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전반적인 요인이 상승 작용하여 보건의료의 상업화가 심각해졌다. 치료중심, 과잉진료, 의료기관 기능미정립, 수도권 이외 지역과 특히 농어촌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비급여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를 위한 지불구조 개선, 의료기관 기능정립과 전달체계 개편,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의료 확충, 적정진료, 주치의제 등이 사회적 아젠다로 제기되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의 지나친 약 처방과 항생제 남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 22.7%의 2.6배를 웃돌았다. 항생제 내성률(약물 복용을 반복함으로써 약효가 저하하는 확률)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국가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의료사협의 사회적 미션과 주류 보건의료기관과의 차별화요소에 대한 문제의식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먹거리생협운동이 시작되었고 MB정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아이쿱 생협 등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처럼 의료사협도 의료서비스 자체의 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과잉 공급과 경쟁 심화라는 외부적 환경과 항생제 남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로부터 의료사협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아젠다인 주치의제와 적정진료, 여기에 예방과 보건이라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추가하여 대안적인 보건의료운동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건강보험의 3저 시스템 하에서, 그것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대도시 1차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킬러컨텐츠(항암치료, 천식 아토피 등 난치성 만성질환의 획기적 치료), 접근성(의료기관의 입지, 24시간 진료), 의료인의 스펙, 장비로 승부하거나 가급적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양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주치의제와 적정진료는 우선 수가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하고 1차 의료기관간 경쟁에서 차별화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다. 더욱이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받을 수 없는 지역사회 보건예방 서비스와 조합원 조직 활동에도 재정적 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재정적 어려움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한때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모면했으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한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냉철하게 판단해서 과연 의료사협이 주치의제와 적정진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 하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정확하게 적정진료와 주치의제에 대한 개념과 가치, 방법론, 객관적 성과지표는 합의되어 있는가? 적정진료와 주치의제를 넘어서 의료사협다운 진료원칙은 무엇인가? 진료철학도 명료하지 않고 서비스에서의 차별화가 상업화된 주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혁신을 선도할 만큼 유의미하거나 임팩트가 없으면서 경쟁력에서도 뒤진다면?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그 어느 쪽도 명료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만일 특정 의료인이나 리더의 역량, 헌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재정적 도움, 그리고 지역적 특성(시민사회의 역량이나 결속력, 농어촌과 같은 특수성)으로 의료사협이 유지된다면 보편적 대안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 ㉡ 의사인력의 수급과 권력관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사협에서 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의료사협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급여총액 등 일정한 기득권의 포기를 감수해야 하고, 전문가로서 의사의 진료에 대한 권한을 제약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주류 의료기관이나 의사그룹과 경쟁관계 내지 문제제기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민간의료부문 뿐만 아니라 보건소 측에서도 제기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조합원들이 고용한 인력이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사장이나 임원일 경우 의사와 내용적, 수평적, 수직적으로 조합원의 견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

사의 진료방식과 진료량에 조합의 매출이 좌우되고 혹여라도 사직하게 되면 기반이 취약한 의료사협은 존립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권력관계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위와 같아보니 일단 의사수급이 어렵고 운영과정에서도 진료문제를 놓고 긴장관계나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도에 사직하여 위기를 맞는 사례도 상당하다. 궁극적으로 의료사협에 있어서 의사의 안정적 수급은 가능한가?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전문가인 의사와 정보비대칭이 명확한 일반 조합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신뢰하면 되는가?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한가?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지켜질 수 있을까? 즉, 의료사협 의료진에 대하여 의과대학의 전문과목처럼 정형화된 재생산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일반은 의사자격으로 대치한다 하여도 의료사협의 가치나 철학, 비전, 미션 등 차별화된 정체성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부분 의사의 기본자질, 자기결단과 헌신에 의료사협의 상당한 명운을 걸어야 하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 질문할 수 밖에 없다.

㉔ 의료협동총론에 대하여

2013년 의료사협연합회 교육연구센터에서는 연구모임과 자문단을 구성하고 건강관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 1)조합원 참여에 의한 접근 방법, 2)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3)기존 의료협동조합 발간자료를 검토하고, 의료협동조합운동사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활동을 진행, 의료협동조합 20주년을 맞아 조합원의 평범한 이야기,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건강가치들을 찾아보고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건강화두- 건강수다 놀이]를 제안하였다. 이후 건강수다는 조합원 교육, 일상 활동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몸지도, 건강에세이 등 조합원 참여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APHCO(아시아태평양보건기구)에서 [협동조합다운 건강 정의]초안을 발표, 아울러 협동조합 진영과 공공부문 등으로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건강문제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해결방안을 이슈화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바를 의제화 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의료협동조합 총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료협동조합운동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힌다. 즉 여러 현실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적 노력으로 판단되고 의료협동조합운동의 소중한 지침서, 가이드라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협동조합 총론의 발간과 건강관 정립이 현실의 의료사협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쉬운 예를 들어 민들레의료사협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 의료사협다운 진료원칙이 협동조합총론으로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총론을 읽으면서 협동조합론인데 論이라면 과학적 근거에 의한 논리체계여야 하는데 종교나 이념적 결사체의 신념체계로 읽혔지는 부분이 있다. 보건의료를 주제로 하여 세속의 주체와 행위들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반정립으로 의료협동조합운동과 주체의 차별성을 선언적으로 명기한 성서나 헌장 같은 느낌이 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체제의 엄혹한 현실에서 민중들의 구체적인 문제와 욕구해결에 대한 실천적 내용이 정리되어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즉 How와 What이 빠져있다.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체제하에서 상업적 의료체계의 문제가 어떻게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한 문제로 민중들이 어떻게 고통 받고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 2. 민들레의료사협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TF 제안

‘혁신의 설계자’(린다 A 힐, 켄트 라인백, 그레그 브랜도)에 따르면 조직의 혁신은 특정주체가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혁신가가 아니라 혁신의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혁신의 과정에서 구성원과 조직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에는 ‘부분의 합’ 이상이 필요하므로 개인 역량은 풀어놓고, 집단천재성으로 묶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는가? 하나의 가치와 규칙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구성원들과 혹은 구성원들끼리 계속 부딪치고 토론하라, 빠르게 실험하고 결과에서 배우라, 경계를 넘어 혁신 생태계를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 의료사협 혁신에 있어서 우선하여야 할 것은 조직적으로 공통의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의료사협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철학이 필요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논증하였듯이 의료협동조합총론은 매우 추상적이고 조직 구성원들조차 공통의 가치와 비전은 물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합의해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선 의과학에 명시된 이론과 보건의료현실에 근거해서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고, 2016년 한국사회의 보건의료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무엇이며 그러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해나가는 데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어떠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안으로서 검토해보아야 할 모델과 추진전략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민들레의료사협의 혁신을 책임질 핵심리더들이 공통의 이론체계와 방법론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여 스스로 혁신의 대안을 도출해내어야 한다.

## 3. 혁신의 주제와 구현체에 대하여

### 1) 의료개입단계별 공급모델에 대한 비전경로 설정을 위한 사례와 시사점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를 전제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의 개입단계에 따라 1차 예방(질병예방과 건강증진), 2차 예방(조기검진, 조기치료), 3차 예방(재활과 재발방지)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급성기 치료, 아급성기 영양과 재활, 영양기 재활과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개입단계에 맞추어 어떠한 의료서비스 공급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지 비전에 대한 경로설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의원급 의료중심으로 직접 서비스 공급조직으로 머무는 것이다. 의원을 중심으로 생활권 반경 내 주민밀착형 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는 수직적으로 2차, 3차 병원, 수평적으로 전문과목별 의원들과 의뢰하며 의료이외의 사회서비스는 관련기관내지 주체들에게 단순 의뢰하는 수준의 모델이다.

두 번째는 양심적 의료인이 주도하는 하드웨어중심의 성장전략인데 선빌리지의 존엄케어처럼 창업자인 의사와 설립주체들이 돌봄에 대한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고령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의 결과들이 훌륭한 성과로 드러난 경우다. 일본의 지역밀착형 의료법인처럼 최소한 2차 병원을 갖추고 의료개입의 전체 단계를 다 구현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재정적 문제도 해결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2차 병원을 중심으로 특정 행정구역인 시·정·촌을 범위로 해서 재활병

원, 복수의 장기요양 시설, 복수의 그룹홈, 주간보호센터, 복합기능의 노인센터, 재가센터를 통한 방문개호사업, 방문개호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홈헬퍼나 가사도우미, 이동지원이나 급식지원센터 등 부대 인프라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법인 내에 설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패키지 인프라를 하나의 법인이 통합적으로 연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의 기후현 이케다 마을의 선빌리지, 미츠키초 사례처럼 의사가 중심이 되어 병원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들을 차례로 만들어간 경우가 있다. 또 하나 일본에는 보건·의료·복지복합체라는 복합기능의 의료기관이 상당한 숫자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도 장기요양 제도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된 밀양의 세종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급성기 재활과 요양기 환자를 통합으로 진료하는 방식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나미의료생협처럼 주민들이 설립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과 보건, 그리고 노인들의 돌봄 문제로 시설과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 경우이다. 가나가와는 생활협동조합이 기반이지만 병·의원이 아니고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상의 요구를 조직한 워커즈컬렉티브로 구성된 지역사회기반 생활복지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상의 니즈에 따라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어 순환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시설과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음.

미나미의료생협이나 가나가와 복지클럽생협은 둘 다 사회적경제 조직이긴 하지만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나미 의료생협은 병원 진료소, 의료인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반이라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조모임들이 이루어지고 돌봄과 관련한 재택돌봄지원사업소, 헬퍼스테이션, 데이케어, 소규모 다기능홈, 그룹홈 등을 갖추어나가면서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을 연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가나가와 복지클럽생협은 사회적경제조직이긴 하지만 병의원이나 의료인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요를 느낀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워커즈컬렉티브라는 생산자협동조합을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 간 경우이다. 가나가와복지클럽생협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가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시설과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한 게 아니라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되 호혜와 연대의 원리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결정해서 필요한 서비스와 조직을 만들어 간 경우이므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굳이 보건과 복지의 연계나 케어매니지먼트 같은 이론이나 방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케어시스템을 만들어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가나가와복지클럽생협은 생활상의 필요를 워커즈컬렉티브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 대표자를 내보내는 정치적 결사체로까지 발전해 나갔다.(Local Party 운동)

## 2) 의료개입단계별 의료사협의 공급모델에 대한 비전경로설정 검토

첫째, 1차 의료기관 중심의 협소하고 단순한 모델인데 이정도 스케일로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병상총량제와 기능정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의료기관의 공적기능에 대한 보상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어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대안체계 구축이 용이한데 비하여 한국은 대도시 수도권으로 갈수록 무한경쟁 상황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설립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경영적으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의 선병원, 을지병원, 순천향병원, 가천길병원 등 오늘날 규모화에 성공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병원들은 6.25전쟁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료 수요의 급증과 함께 군사정권이 국공립병원 신설대신에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지원과 외국의 원조 내지 저리의 차입금을 들여올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의료기관이 과포화상태인 현재는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메이저 의료기관들에 의해 시장이 선점되어 의료기관의 설립과 성공의 공식과 양상이 달라졌다.

장기요양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취약계층중심의 복지시설로 인정되어 설립과 운영에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급기관 수급을 시장방식으로 결정, 진입장벽을 낮추어 과다경쟁 상태인데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중증도 위주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구조상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임,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도 몇 개의 기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수가문제로 요양보호인력의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으며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민들레의료사협이 이러한 의료기관 확대중심의 하드웨어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조달 능력, 건강보험 지불구조의 불합리성이라는 제도적 한계 내에서 상업화된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자 경쟁구조에서 차별화하여 흑자경영과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는 의료기관경영역량을 구비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일본의 미나미의료생협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모델일 수 있으나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강력한 조직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민들레의료사협이 주민조직화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온 것은 아닌지 평가가 필요하다. 가나가와복지클럽생협은 고령화에 따라 고령 노인의 케어를 감당해야 하는 주부들의 절실한 필요가 대안을 찾기 위한 왕성한 조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역시 강력한 주민조직화가 전제된 것이고 케어의 필요성의 정도와 지역사회 여건,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등이 존재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료생협 모델이 참고가 될만 하지만 이를 적용하려면 주민조직화 역량과 방법 및 방향이 적절한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 4. 주민참여형 건강증진플랫폼 구축에서 돌파구를 찾아나갈 것을 제안함

##### 1)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전략과 일본의료생협 성장전략의 시사점

첫째, 2차 이상 의료기관 중심의 하드웨어 성장전략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만성질환중심 질병구조로 인하여 급성기를 담당하는 2차, 3차 의료기관보다 아급성기와 요양기 재활과 건강관리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각각 나뉘어지고 각각의 전달체계 내에서도 공급기관간 기능이 분절화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셋째, 병원기반보다 지역사회와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아급성기와 장기요양, 지역사회, 1차 의료를 통합하는 방법은 하드웨어적 접근이 있고 주민조직화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적 방법이 있다.

넷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장기요양서비스체계상 시설설치에 대한 재정부담과 경쟁구조에서 차별화하는 역량을 민들레가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를 보완하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되 시설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와 조직화에 방점을 두는 경로설정이 필요하다.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조직화와 필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의 정도에 비례하여 조직화된 주민조직과 지역사회 참여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2)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 플랫폼 제안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시설을 구비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메타조직으로서 일종의 플랫폼 방식을 상정해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의 건강관리, 암, 희귀난치질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등의 급성기 치료 중 재가에서의 건강관리(식이영양, 신체활동, 심리문제 등)와 사회서비스, 급성기 치료 후 아급성기 재활과 건강관리(식이, 심리, 신체활동)와 사회서비스, 장기요양단계 재활과 건강관리(식이, 심리, 신체활동)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신체, 심리, 사회, 경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및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분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 민간위주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된 기능과 시장화된 공급체제로 인하여 통합적인 중재가 안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와 사회서비스 통합 공익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와 복지를 포함하는 제반의 자원을 연계하여 최적화하는 모델이 필요함, 재정은 기본적으로 혼합할 수밖에 없다. 거칠게 구분하면 공익기능에 대한 보조금,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분담금이나 수수료, 사회적경제 지원금, 사회혁신프로젝트 지원금, 서비스 이용자 회비 등, 더욱 더 확장하면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플랫폼 참여 공급조직을 확장하고 식품과 생활재 등 재화(상품)플랫폼과 온오프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상품)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모델이지만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모델과 사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공익플랫폼의 구체적 모델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센터, 미국의 PACE 등이고, 민들레의료사협이 수행했던 유성구 보건소 프로젝트인 진잠동주민참여형건강마을만들기 지역조사 사업과 공동모금회 지역사회 주도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두 사업의 중차대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문제해결이나 진로 모색과 연관 짓지 못한, 또 하나의 부가되는 과제로 인식, 보고서 쓰는 일로 귀결되는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유성구 보건소 사업은 그 자체를 계기로 조직적으로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학습, 진잠지역 중심의 주민조직화 가능성, 유성구 보건소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의식적 진행이 아쉬워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공동모금회 사업은 위에서 이야기한 조직의 진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실험을 할 수 있고, 더욱이 사업 내용에 따라 수익의 돈이 유입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굳이 부채를 발생시켜가면서 위험부담이 큰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5. 민들레 혁신전략 추진내용

### 1) 조직개편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혁신모델 창출을 미션으로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주민참여 건강증진플랫폼인 **가)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이하 가)주민건강센터)**를 신설한다. 이 새로운 사업소는 공동모금회 프로젝트(노인건강돌봄사업)를 활용하여 콘텐츠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향후 민들레의료사협의 모든 외부 프로젝트는 민들레의료사협의 혁신을 위한 전략방향에 철저히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추진하고자 한다.

○ 현재의 민들레의료사협의 조직과 사업은 ①의료사업소 ②가)주민건강센터 그리고 두 사업소를 지원하는 ③경영지원실 개념으로 재편한다.

○ **의료사업소**의 미션은 주치의제를 통한 적정진료와 건강관리로 비즈니스모델은 1차 의료기관

○ **가)주민건강센터**의 미션은 지역사회 1차 의료영역에서의 주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비즈니스 모델은 주민참여형 건강플랫폼

○ 가)주민건강센터의 대상과 사업내용에 있어 민들레의료사협 조합원을 포함하되 대전시로 확장하여 민들레의료사협의 혁신모델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보건의료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한다.

○ 일정한 경과기간 후 시스템과 콘텐츠의 정립을 전제로 구상하는 수익모델은 건강관련 정책사업 참여에 의한 공공재원, 플랫폼 참여 공급기관 분담금, 이용자 부담금(회비, 이용료 자기부담 등), 프로젝트 사업비, 기부금 등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재정독립을 추구한다.



2) 조직 및 인력배치도



6. 민들레 혁신전략 추진경과와 평가

1) 추진경과

① 민들레의료사업소

첫째, 주치의제와 걱정진료를 실천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원 조직 활성화와 재정해결책으로 스마트주치의를 실행

둘째,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진료부담을 경감, 상담과 진료시간을 좀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을 지원

셋째, 둔산치과의 교정을 정리하고 대덕한의원 원장의 퇴사를 계기로 둔산한의원을 대덕으로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는 구조조정을 단행

넷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합동감사를 계기로 민들레의료사업소는 1차 의료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주치의와 걱정진료이외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②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첫째, 행정회계와 조합원관리 업무, 홍보업무 등을 제외하고 공동모금회 사업, 사회서비스, 건강의 집, 건강리더 양성, 건강반 활동, 보건예방사업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편입시킴

둘째, 공동모금회 재원의 지역사회주도노인건강돌봄사업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의 시스템과 콘텐츠를 모델링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양봉석이사과 의료사업소 나준식원장, 김화준 원장 등이 정기적으로 노인건강돌봄사업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수퍼바이저 함

셋째,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부를 구조조정함

넷째, 노인건강돌봄사업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들레가 원하는 전략방향으로 조직과 사업이 가동되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하고 양봉석이사가 비상근센터장으로 참여하면서 조직과 사업을 재편, 조직을 사무국장, 행정회계 담당, 사례관리팀, 지역사회조직팀, 자원연계팀의 3개 팀으로 재편하고 민들레의료사협의 전략적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다섯째, 공동모금회 지원기간인 3년의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모델링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의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산업자원부 프로젝트 수주가 유력하면서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공급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의 계획을 수립

여섯째, 조직과 사업을 재편하면서 지역사회조직팀 업무 가운데 민들레의료사협의 협동조합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회의체계, 조합원 관리와 의사소통 등의 업무는 경영지원실로 이관하기로 결정

### ③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은 본부체계에서 조합운영을 위한 행정, 회계, 인사와 노무, 의사결정 회의구조 운영, 조합원 관리, 조합원 조직활동, 조합 홍보 업무, 지역사회 보건예방활동, 대외협력 등 의료사업소 이외 모든 업무를 통합하고 있었으나 혁신전략 내용에 따라 기능을 재편함

2017년 총회 직후에는 행정과 회계, 시설관리, 조합운영지원 중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합동 감사를 계기로 조합운영에 관련된 제반 체계를 1차 전면적으로 정비함, 이후 민들레의료사협 운영과 관련한 협동조합 의사결정 회의체계 운영, 행정, 회계, 인사와 노무, 조합원관리, 조합원 의사소통, 홍보 등의 업무로 조정되는 과정임

### 2) 혁신전략 내용 추진 평가

형식적이고 큰 틀에서는 원래 제출된 혁신전략 내용을 거의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조직을 일차의료센터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로 거시적으로 분류하고 과거 본부의 복잡하고 혼란한 기능을 분화하여 각 조직별로 미션과 사업내용을 명료하게 재구성하였다. 특히 일차의료센터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스마트주치의와 진료의사 충원을 시도하고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와 협업구조를 구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도 애초 계획대로 여러 사업과 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부서로 재편하고 일부는 구조 조정함으로써 체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공동모금회사업 종료에 따른 모델링 자원과 시간의 문제를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경영지원실은 두 개의 센터를 지원하면서 민들레의료사협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른 경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해나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이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내용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해야할 문제도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주민조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으로서 주민조직화 역량이 취약하여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프로젝트는 철저히 민들레의 미션과 전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조직관리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이 초래되고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도 많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셋째, 이제 겨우 민들레의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조직을 개편했으나 민들레의료사협 직원들은 물론이고 임원과 조합원 전체가 이러한 혁신전략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내면화해서 조합활동에 적극참여하도록 동기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공동모금회 프로젝트가 올해로 종료되기에 신규프로젝트를 반드시 수주하여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모델을 성사시켜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다섯째, 민들레의료사협의 혁신내용 구현을 미처 완료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의 보건외와 장기요양부문 혁신정책과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어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초조함이 심한 압박으로 조여오고 있다.

# 평가요약

## ■ 5대 지표

조합현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금, 건강리더, 건강모듬, 스스로조합비를 주요지표로 삼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5대지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3,610세대 / 100세대(21%)	신규170세대, 탈퇴107세대
출자금	1,299,503,241원 / 1억원( -73%)	증감 -73,392,350원
건강리더	100명 / 110명(110%)	2016~2017 건강리더 110명 양성
건강모듬	10개 / 6개(60%)	신규 2개(내일은 브롬달, 기체조)
스스로조합비	195세대(65%), 22,550,000원(75%)	

조합원은 3,610세대로 신규조합원수가 최근5년을 기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탈퇴 조합원수는 가장 많았다. 이는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조직 정착에 집중된 한해로 전통적인 조합 활동을 전개치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규조합원 확대를 위한 방안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탈퇴조합원의 사유는 무응답을 제외 하고, '의료기관 미이용'이 높게 나타나 조합원 가입 및 유지의 목적이 의료기관이라는 반증이라 아쉽다. 따라서 조합원이 의료기관 이용 이외의 조합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출자금은 약 7,000만원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누적 출자금도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합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이는 건물매입을 위한 증자된 출자금이 어느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출자자 필요자금이 감자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인에 의한 고액 출자 보다 다수의 조합원이 감자를 하지 않는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해 생활증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건강리더는 110명으로 집계되었다. 과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조합원 기준에 따라 집계하던 것에서 조합의 주요한 역량으로서의 건강리더로 양성과정을 수료한 누적 연인원으로 집계기준을 조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말 기준 36명의 건강리더에 시니어 21명, 일반 41명, 청소년 12명가 양성되었다. 교육과정수로 중심의 개념규정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모듬은 참여조합원의 자발성을 독려하기 위해 건강반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진행하고자 했다. 2016년 9월 규정 제정 이후 4개의 건강반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운영되었고, 내일은 브롬달(당구모임), 기체조 모임 2개가 추가되었다. 산약회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산행계획부터 집행까지 완결구조를 갖추고 대전 도솔산에서 진행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산행도 직접운영하기도 했다. 다만, 옥상텃밭의 경우 공간문제로 올해까지만 운영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스스로 조합비는 의료협동조합다운 의료기관으로서 조합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보건예방활동 사업비를 조합원의 조합비로 충당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목적

사업비로서, 보건예방활동 사업비 중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에 전액 총당되고 있으며 2017년말 현재 195세대가 참여해 총액기준 22,550,000원이 모였다. 이 금액은 기타 후원금과 함께 2018년도 보건예방활동사업비로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 ■ 조직

2017년은 각 분야의 자치력이 향상되는 해였다. 조합은 크게 일차의료센터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로 나뉘고 경영지원실이 양 센터를 지원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회는 경영지원실과 파트너십을 갖고 조합의 운영 및 경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차의료센터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자주관리를 안착시켰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는 건강리더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를 실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반 등 조합원 활동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 ■ 사업

2017년은 둔산치과 교정 및 둔산한의원 철수가 안타까웠지만 일차의료센터의 안정이 눈에 띄는 해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주도노인건강돌봄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혁신형협동조합모델발굴사업, 한국연구재단의 격차해소연구프로젝트,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공동체활성화 '가꾸자'사업 등 외부재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이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주민참여형건강관리플랫폼' 모델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재정

직원들의 헌신에서 비롯된 일차의료센터의 안정화,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 자금으로 모델링을 진행해온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스스로조합비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노력들이 어우러져 2017년 당기순이익 2000만원을 기록하고, 2018년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후원금 2800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되었다.

## ■ 경영보고

우리 조합의 총 자산은 2,037,433,783원이며, 출자금은 1,299,503,241원이고, 부채는 1,655,511,016원으로 917,610,474원의 누적 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이다.

2017년 총 매출액은 2,625,435,788원이고 매출이익은 2,331,739,668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44,289원이다. 또한 후원금을 보건예방활동비 중 취약계층지원금을 기부금총담금계정으로 별도관리하기 위하여 영업외 수익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후원금 28,147,070원을 포함 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48,461,359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적자 경영수지에서 벗어나 흑자 경영수지 구조로 변화되는 민들레 재도약의 기점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4월에 결정된 둔산 한의원의 폐업은 조합의 예상치 못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대덕한의원 원장의 퇴사로 인해 둔산한의원 원장이 대덕한의원으로 전보되었고, 둔산한의원 원장 구인 난항으로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양질의 적정진료와 지리적 편리성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제공하였지만, 조합의 경영수지 적자 요인이 상쇄되어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동의료기관의 의원과 검진은 1,270,413,714의 매출로 321,890,757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고 치과는 481,840,970원의 매출로 62,655,059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 이 두 의료기관은 규정예의 한 공동비용 안분 후에도 흑자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원장의 퇴사와 전보 발령된 원장 마저 퇴사하여 대신의가 약 1개월 공백을 메우고 8월부터 신임 원장이 부임하였다. 이로 인해 경영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305,906,480원 매출로 4,710,277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원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영성과가 발생하였다.

둔산의료기관에서 둔산 한의원 폐업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둔산 치과는 411,655,363원 매출로 29,535,584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동안 펼쳐온 적정진료에 대한 믿음을 조합원 및 인근 주민에게 인식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인 원장 운영에서 1인 원장으로 구조 조정된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시도하여 이용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의 만성적 적자 원인 차단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과 맞물려 지원금 수급 사업 전개에 따른 조합 역량 집중으로 2016년 약 1억2천만원의 적자구조를 2017년에는 약 2천만원 흑자로 전환된 기념비 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 5대 핵심지표 달성현황

## ■ 조합원

2016년 말 기준	목표 / 산출근거	결과
3,547세대	<b>300세대</b> • 6개사업소*40세대: 240세대 • 지역조직활동: 60세대	<b>3,610세대</b> 신규: 170세대(56.6%) 탈퇴요청: 107세대

## ■ 출자금

2016년 말 기준	목표 / 산출근거	결과
1,372,895,591원	<b>증감계 1억원</b> • 신입조합원 1천5백만원 • 조합원증자운동 1억원	총액: 1,299,503,241원 증감: -73,392,350원(-73.3%)

## ■ 건강리더

2016년 말 기준	목표 / 산출근거	결과
1기 건강리더 14명 양성 1기 건강조직가 7명 양성	<b>100명</b> • 건강리더양성 기초과정 ※ 노인20명, 일반40명, 청소년20명 • 건강리더양성 심화과정: 20명 • 건강리더양성 전문가 과정: 10명	<b>110명</b> 시니어 2기: 35명 청소년 2기: 27명 일반 4기: 41명 건강조직가: 7명

## ■ 건강모듬

2016년 말 기준	목표 / 산출근거	결과
4개 달민이, 산악회, 역사와 놀자, 옥상텃밭	<b>10개(이사회 승인 건강모듬)</b> • 기승인(4개): 유지관리 • 예비(4개): 자발적인 운영지원, 승인지원 • 신규(2개): 건강리더를 중심으로 신규발굴	<b>2개 증가 / 6개</b> 달민이, 산악회, 역사와놀자, 옥상텃밭, 내일은 브롬달, 기체조

## ■ 스스로 조합비

2016년 말 기준	목표 / 산출근거	결과
153세대 / 11,920,000원	<b>300세대 / 3,000만원</b> • 기존 150세대*12=1800만원 • 신규(매월15세대)*12=1,170만원	<b>195세대(65%)</b> <b>22,550,000원(75%)</b>

# 일차의료센터

- 의원
- 검진, 가정간호
- 한의원
- 대덕치과
- 둔산치과

■ 의원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p>■ 환자에게 더욱 집중하는 한해</p> <p>■ 기초 평가 : 환자에게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진료원장 증원을 증원하여, 내원 환자 만족도 및 의료사협다운 진료 및 환자를 위한 진료에 기여</p>
---

□ 2017년도 세부 사업 평가

2017 사업계획		주요 세부 실적 및 실행 내역		대비 실적 달성율 (%)	실적 달성율에 따른 원인 분석
주사업 계획	세부 계획	세부 실적	평가 지표 실행 내역		
학습과 성장	환자 응대시 접촉면이 가장 넓은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위하여 직원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것을 공유하고 지켜봐주며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간 격식 없는 회의와 자유로운 상호 의견 공유를 위한 정기적으로 식사와 Tea-Time을 갖었음</li> <li>- 매월 개최</li> <li>○ 조합원 및 직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건강리더교육 2명 수료</li> <li>○ 건강마을네트워크1명교육</li> </ul>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직원이 평생 직장으로서의 조합을 위한 마음가짐</li> <li>○ 필요한 교육으로서 참여 의지</li> </ul>	
의료사협다운 의료기관	<p>〈환자권익을 우선하는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환자 중 검진 이용환자를 검진센터 직원에게 설명하며 인수 인계 하기</li> <li>- 내시경, 골다공증 등</li> <li>○ 예방접종 환자 오류 접종 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이용 만족도 제고</li> <li>- 검진센터와 유기적 협진을 위해 환지 이송 시 직원 상호 확인 후 인계 정착</li> <li>○ 초진 환자의 경우 향후 방문을 대비하여 기본 사항 사전 체크후 진료</li> <li>- 혈압, 혈당, 체온, 체중 등</li> <li>○ 예방접종 환자 오류 접종 방지를 위해 추가</li> </ul>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를 우선하여, 환자의 마음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수행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및 조합 신뢰도 증대</li> </ul>	



	지를 위해 진료 사이트에서 확인 하고 접종 ○ 초진환자 기본 검사 - 혈압, 혈당, 체온, 체중 등 ○ 혈액검사 추가시 체크후 확인 ○ 화장실 비데 설치 - 겨울엔 너무 추움	확인 후 접종 실시 ○ 혈액검사 추가 판정 시 원장님 오더 체크 - 검사기관 잔량 유무 확인 - 오더에 따른 재확인 ○ 화장실 난방기 설치		
--	---	---	--	--

□ 2017년도 실적 중 모범사례

- 진료환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 함으로서, 진료 만족도 및 신뢰도 기여
- 진료 의사 증원으로 진료 환자에게 진료 시간 보장 및 대기 시간 단축

□ 제안 사항

- 환자 대기공간 환경 개선(의자 및 편의 시설 등)

## ■ 검진, 가정간호센터

###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 함께가는 민들레!!!, 민고찾는 검진

■ 기초 평가 : 검진 진행과정 및 종료시 까지 직원들의 노력(친절함, 세심한 배려)으로 만족도가 향상되어 신규 검진자 증가, 내원자 대상으로 조합안내를 통한 조합원 및 스스로조합원 가입 실적 향상

### □ 2017년도 세부 사업 평가

2017 사업계획		주요 세부 실적 및 실행 내역		대비 실적 달성율 (%)	실적 달성율에 따른 원인 분석
주사업 계획	세부 계획	세부 실적	평가 지표 실행 내역		
학습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식시 교육내용 추가 진행 (격월진행예정)</li> <li>○ 건강관리(서적, 운동)계획 및 tea-time을 위한 coffee break</li> <li>○ 공부 등을 위한 모둠 만들기</li> <li>○ 야유회로 친목도모, 간식비 책정으로 직원사기 상승</li> <li>○ 조합 건강리더 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회식1회,</li> <li>○ 검진회식1회,</li> <li>○ 야유회 0회</li> <li>○ 건강리더 2명 수료</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식비 절감으로 친목도모 및 교육의 어려움이 있었다</li> <li>○ 검진률 증가와 시간외수당 절감을 위한 대체 휴가 사용으로 업무 로딩 발생</li> </ul>	
의료사협다운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기관평가 우수를 목표로 신뢰도 상승</li> <li>○ 알 권리, 결정할 권리에 대한 충분한 안내</li> <li>○ 지속적인 검진사후관리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우수기관 평가 중</li> <li>○ 문진표 체크시 1:1진행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내원자 만족도 상승</li> <li>○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li> </ul>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검진진행을 위해 직원모두가 협동하고 협력하여 검진률 상승함</li> </ul>	

	검진의 중요성 안내 ○ 노후 장비 교체로 검진 신뢰도 향상 :산소포화도, 내시경스코프, 원심분리기, 칼라프린트 등	검진을 상승과 진료환자 증가 - 이용예정자 대상 직원의 안내전화 실시 ○ 초음파 교체	○ 초음파 교체로 진단의 정확성과 검사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상승 ○ 원장의 프로필 게시로 의료기관 신뢰도 상승
--	---	---	--

□ 2017년도 실적 중 모범사례

- 건강검진 항목의 자세한 안내로 내원자분들의 알권리에 대해 충족 할 수 있었으며, 비해당 검사 항목일지라도 예방 및 검진이 꼭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여 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만족도를 향상 시켰음
- 검진홍보전화를 직원이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설명과안내로 확실한 검진을 상승
- 최신기계(초음파)도입으로 검사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상승

□ 제안 사항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형성하기과 직원 상호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회의 진행시 간식비 예산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 ■ 한의원

###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 ■ 건강관에 입각한 진료

- '건강'하면 민들레한의원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
-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꾸준한 학습

■기초 평가 : 원장 변경으로 2017년도 기초를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그 생각을 갖고 환자들에게 성심을 다 했음

### □ 2017년도 세부 사업 평가

2017 사업계획		주요 세부 실적 및 실행 내역		대비 실적 달성율 (%)	실적 달성율에 따른 원인 분석
주사업 계획	세부 계획	세부 실적	평가 지표 실행 내역		
학습과 성장	○ 직원 개인 역량 강화 ○ 조합 활동 역량 강화	○ 컴퓨터 활용 능력향상위한 교육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전직원 건강리더 수료 ○ 소모임 구성(켈리그라피 등)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25%	○ 원장 및 직원 교체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전력을 다함
의료사협다운 의료기관	환자권익을 우선하는 의료기관	○ 환자 중심에선 진료 우선 - "잘 듣기"를 통한 환자 이해도 향상 ○ 뜸치료의 정착 - 타 한의원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영 수지 개선 ○ 방문환자 이용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환경 개선	○ 내부환경 개선 실시 - 침구실 커튼 교체 - 천정 뜸 기구 정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li> <li>- 사업기조의 건강관에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킨다.</li> </ul>			
--	--	---	--	--	--

□ 2017년도 실적 중 모범사례

- “민들레한의사랑방” 카카오톡 친구 플러를 이용, 방문 환자 및 조합 정체성을 위하여 원장과 직접 소통할 공간 마련
- 공진단 행사를 통해 매출 증대 일익

□ 제안 사항

경영의 안정화

## ■ 대덕치과

###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 28개의 치아를 100세까지라는“2080”

- 조합원과 환자들의 구강보건예방 활동과 홍보 적극적으로!

■ 기초 평가 : 임플란트 수가가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1.5배나 수술이 늘어나 매우 만족스럽다.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구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서 큰 무리없이 한해를 보낸 것 같아 만족하고 있음. 소아진료 비중을 늘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미미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생김

### □ 2017년도 세부 사업 평가

2017 사업계획		주요 세부 실적 및 실행 내역		대비 실적 달성율 (%)	실적 달성율에 따른 원인 분석
주사업 계획	세부 계획	세부 실적	평가 지표 실행 내역		
학습과 성장	직원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완료</li> <li>○ 보험 청구를 위한 최신 교재 활용</li> <li>○ 스케일링시 모든 환자에게 응대 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li> <li>○ 둔산치과와 정기 교류</li> </ul>		70%	둔산 치과와의 정기 교류는 팀장 간 유선으로 소통하였음
의료사협 다운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권익을 우선 하는 의료기관</li> <li>○ 칫솔질 교육(TB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심치과 타이틀에 맞게 적정진료 하에 민들레의 이미지 관리</li> <li>○ 원활한 진료와 환자 만족도를 위한 직원 총원</li> <li>○ 소아환자의 불소 및 홈메우기</li> <li>○ 성인환자에 대하여 스케일링, 정기검진 필요성 교육 및 TBI교육 실시소</li> <li>○ 스케일링 736건, 실런트 122개, 불소 25건 실행</li> </ul>		90%	직원 1인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구인에 어려움, 이로 인해 TBI의 1:1교육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시간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I는 거의 실행 못함</li> </ul>		0%	

□ 2017년도 실적 중 모범사례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임플란트 수가 조정이 실행되면서 임플란트 환자 증가됨(전년대비 1.5배 증가)

□ 제안 사항

어려움 함께 공유해서 이겨내려는 마음은 알지만 반복적으로 듣다보니 약간 패배감들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칭찬과 격려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 둔산치과

###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 환자권익을 우선하는 믿음직한 치아 주치의

■ 기초 평가 : 믿음직한 치아 주치의로 내원 환자의 신뢰도가 상승하여 재내원률과 소개환자의 내원 실적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자주관리 기틀을 마련하였음.  
전반적으로 진료 환자 만족도 및 경영 실적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보람 있는 한해였음

### □ 2017년도 세부 사업 평가

2017 사업계획		주요 세부 실적 및 실행 내역		대비 실적 달성율 (%)	실적 달성율에 따른 원인 분석
주사업 계획	세부 계획	세부 실적	평가 지표 실행 내역		
학습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직원 간 회의진행</li> <li>○ 치과정보지 구독 학습</li> <li>○ 민들레의료사협 알리기</li> <li>○ 건강리더 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 전반적 정보 공유와 매뉴얼화</li> <li>○ 최신 치과경향과 치과 정보 획득</li> <li>○ 조합원 가입 및 스스로 조합비 권유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1회 경지실 주관으로 회의 개최</li> <li>○ 조합원 가입건수 : 28건</li> <li>○ 스스로조합비 가입건수 : 4건</li> </ul>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에 집중하여 계획에 대비하여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나, 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반복하여 의식적으로 실행에 노력하였음</li> </ul>
믿음직한 치아 주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결한 구강상태 유지관리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I&amp;PTC 교육 실시</li> <li>○ 구강위생용품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개인의 맞춤설명</li> <li>○ 꿀팁제공</li> </ul>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증가와 인력부족으로 100% 달성은 어려웠음</li> </ul>



	정기검진	리콜문자전송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 율 증가	95%	환자와의 신뢰도 상승으로 인함
	예방치료 적정진료	실런트 권장 잇몸치료	비보험실런트 권장 정기적 스켈링과 잇몸치료 권장	95%	만족도 상승

□ 2017년도 실적 중 모범사례

영구치 큰어금니만 보험 적용이 되어 실런트 권유를 했었는데, 요즘은 작은 어금니쪽도 충치가 많이 생기는 추세라 비보험 실런트지만 보호자에게 설명 후 진료를 하게 되었음.

그 이후 정기검진으로 내원하게 되었는데 보호자의 반응이 진작에 알려주지 그랬냐며 너무 좋아 하심

치료 후 치아관리의 부담감이 좀 편안해 졌으면 정기검진시 비용부담감이 있었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치과를 내원하게 되어 좋았다고 하심

□ 제안 사항

질책보다는 관심과 격려로 끝까지 믿어주는 관계가 좋은 결과로 돌아옴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단시간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마시고 관심과 협력의 관계로 서로를 응원하는 민들레가 되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6. 사회서비스사업

###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위한 포괄케어시스템 기반조성’이라는 기조 하에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사업과 등급 외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사업(바우처)을 운영하였으나,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신설 이후 플랫폼을 통한 자원 연계제공 계획과 당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사업관리의 한계가 맞물려 재가장기요양사업은 서비스 종료를 노인종합돌봄서비스사업은 폐업을 결정하였다.

이용 중이던 어르신과 활동하던 요양보호사들은 지역에서 연대 중이던 나우리돌봄노인복지센터(대덕지역자활센터)에 인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나우리 센터 등록 어르신 중 민들레의 노인건강돌봄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용자에 대하여는 일부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이고 장기요양 및 바우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연계하여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해당 사업은 종료하였지만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위한 포괄케어시스템’은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경영지원실

□ 2017년도 사업평가 총평

■ 꿈의 직장 "민들레" 구현

- 직원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 최적 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의 효율화와 목적의식
- 최상의 경영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기초 평가 : 2017년도 흑자 경영 도출과 경영진과 직원간의 가교 역할과 및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자부함

□ 2017년도 세부 사업 평가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내용	일정	기대효과	실적(추진사항)
조합원 관리	조합원 가입,탈퇴 출자금 관리 조합비 관리 후원금 관리	○ 조합원 관리와 홍보 ○ 조합비 및 후원금 관리	연중	○ 정확한 정보 관리 ○ 출자금/후원금 관리의 효율화	○ 조합원 가입 : 170명 - 9,400,000원 ○ 스스로조합비 가입: 63명 - 22,550,000원 ○ 조합원 탈퇴: 107명 - 11,895,000원 ○ 증좌 - 263,212,650원 ○ 감좌 횟수: 38회 - 324,690,000원 ○ 후원금 : 19회 - 3,584,534원

<p>시설관리</p>	<p>건물관리 시설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li> <li>○ 공간구성</li> <li>○ 컴퓨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li> </ul>	<p>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절감</li> <li>○ 신속한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유지 보수</li> <li>○ 건물 시설 유지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건물 4층 공간 확장</li> <li>- 우리건물 뒷마당 환경정리</li> <li>- 참선 사무공간 확장</li> <li>- 옥상텃밭 철거</li> </ul> </li> <li>○ 의원/검진 초음파 교체 구매 및 재배치</li> </ul>
<p>회계/행정</p>	<p>통합회계 인사, 노무행정 법무 총회, 이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관리</li> <li>○ 인사, 노무행정 관리</li> <li>○ 법무관련 업무</li> <li>○ 총회, 이사회, 임직원협의회 등 회의 주관</li> <li>○ 계약, 협약, 인증 관리</li> <li>○ 직원 법정교육 수행 및 사내 교육 주관</li> </ul>	<p>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과 경영진간의 가교</li> <li>○ 각종 위법 사항 미연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건물 옥상중계기 임대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80만원 * 2대</li> </ul> </li> <li>○ 직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lt;온라인 교육 도입 시행&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li> <li>- 산업안전보건 교육</li> </ul> </li> <li>○ 임직원협의회 개최 : 4회</li> <li>○ 이사회 개최 : 12회</li> <li>○ 매주 의료기관 팀장회의 주관</li> <li>○ 매월 전직원 회의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결과 보고 및 기타 사안 공유</li> </ul> </li> <li>○ 직원 상조회 회칙 제정</li> <li>○ 직원 사내 교양 교육 2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감수성교육 : 7.17</li> <li>- 성소수자 이해(다양성과 관용이 있는 민들레를 위하여) 교육 : 3.20</li> </ul> </li> <li>○ 보건복지부 감사 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1. 21~11.23</li> </ul> </li> </ul>
<p>지원업무</p>	<p>의료사업소 지원 민들레주민참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 자주관리 지원</li> <li>○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li> </ul>	<p>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적극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 시스템 도입 구축</li> <li>○ 의료기관 회계시스템 구축 활용</li> <li>○ 규정 제·개정</li> </ul>

	강증진센터 지원	센터 지원 ○ 경영진에 경영판단 자료 제공			- 직제규정 제정 - 공동비용 센터별 안분 규정 제정 - 급여 지급 규정 제정 - 진료비 감면 및 지역화폐 적용 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 인사 행정 -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행정(직원 4인) ○ 행사 주관 - 직원 가을 나들이 : 10.27 - 직원 치맥 행사 : 12.12
--	----------	----------------------------	--	--	--

□ 2017년도 실적 중 모범사례

- 차입 구조 개선
  - 이자비용 약 1,500만원 절감
  - 계획된 차입 상황을 위한 조합원 차입 의존도 개선

□ 제안 사항

- 과중한 업무 분산을 위한 증원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 주민참여형건강관리플랫폼 모델링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격차해소연구개발사업(연구재단)
- 가꾸자사업(사자센터)
- 혁신형협동조합모델발굴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

## ■ 사회자본연계

- 씨앗기금
- SK사회성과인센티브
- 사회적기업 홍보캠페인(베네프)
- 대전시 홍보매체 활용지원사업
- 민들레 스스로조합비 사업

# 주민참여형건강관리플랫폼 모델링

##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

### ■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 건강돌봄 지원사업

1. 사업명: 공동체 돌봄을 통해 노인 스스로 존엄한 노년의 삶 만들기
2. 사업기간: 2016.01~2018.12(3년) 중 2차년
3. 사업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진잠·구죽동
4. 사업대상: 사업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500명, 의료취약계층 및 중위소득 80% 이내
5. 사업목적: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을 통한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  
 <건강수명 연장과 웰다잉(Well-dying)>
6. 지원기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7. 소요예산: 모금회 지원한도액 400,000,000원

총예산	모금회 지원금	민들레 자부담
413,501,797원	400,000,000원	13,501,797원

### 8. 한눈으로 보는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

<b>노인건강 네트워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회의: 15회</li> <li>○ 이사회·위원장 회의: 24회</li> <li>○ 건강리더양성: 43회</li> </ul>	<b>통합돌봄 지원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간호: 2,231회</li> <li>○ 방문주치의: 251회</li> <li>○ 방문구강관리: 150회</li> <li>○ 운동처방: 196회</li> <li>○ 긴급간병: 404회</li> <li>○ 응급의료: 3회</li> <li>○ 의료지원: 354회(98명)</li> <li>○ 영양지원: 56회(2,800명)</li> <li>○ 정서지원: 165회</li> <li>○ 주거개선: 53회</li> </ul>
<b>통합사례 관리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관리: 516명</li> <li>○ 통합관리: 206명</li> <li>○ 사례회의, 자문: 53회</li> </ul>		
<b>건강교육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교육: 25회</li> <li>○ 건강교육: 18회</li> </ul>		



9. 성과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p>성과목표</p>	<p><b>[수행기관 공통]</b>          - 노인 신체 건강 개선          - 노인 심리·정신 건강 개선</p> <p><b>[단위기관 개별]</b>          - 네트워크 구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감소          -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삶의 질 향상          - 보건·의료·복지 통합 돌봄 지원을 통한 신체적, 심리 정서적 건강 개선          - 건강교육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개선</p>
<p>주요사업내용</p>	<p><b>[노인건강네트워크사업]</b>          • 전문의료네트워크 활용          • 주민건강리더, 노인건강리더 활동 연계          •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성</p> <p><b>[사례관리사업]</b>          • 등록 관리 - 총500명(돌봄지원군200명, 자가관리군300명)          • 사례회의 및 자문</p> <p><b>[통합돌봄지원사업]</b>          • 보건의료지원사업          - 방문주치의, 방문간호, 방문구강관리          - 운동처방, 긴급가사간병지원          • 영양관리지원사업          - 맞춤형 건강식 지원, 영양정보 제공          • 심리지원사업          • 건강환경개선지원사업</p> <p><b>[건강교육사업]</b>          • 만성질환관리교육          - 만성질환관리, 인지재활, 우울중재          • 건강관리교육          - 구강관리 집단교육</p>

10. 평가 및 시사점

<p>활동실적 및 양적평가</p>	<p><b>[노인건강네트워크사업]</b>          • 노인건강네트워크: 501명 참여(원장단, 이사회, 건강리더 등)          • 지역네트워크: 50곳</p> <p><b>[사례관리사업]</b>          • 실서비스인원: 516명 (돌봄지원군206명, 자가관리군310명)          • 사례회의 및 자문: 53회</p>
----------------------------	--

**[통합돌봄지원사업]**

- 방문주치의: 251회
- 방문간호: 2,231회
- 방문구강관리: 150회
- 운동처방: 196회
- 긴급가사간병: 404회
- (응급)의료지원: 357회
- 영양관리지원: 56회 2,800명
- 심리지원: 165회
- 건강환경개선: 53회, 32명

**[건강교육사업]**

- 만성질환관리교육: 25회 47시간 235명
- 건강관리교육: 18회 21시간 201명

**[배분의제 성과 평가 결과 참고]**

	2016년	2017년	비고
주관적 건강상태	2.34점 /5점	<b>2.34점 /5점</b>	주관적 건강감 유지
자살 사고	12.4%	<b>13.4%</b>	2016년에 비해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 응답 비율이 높아짐. 반면, 자살계획을 세우거나 자살시도를 해본 응답 비율은 2016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함.
자살 계획 수립	22.3%(약 55명)	<b>20.0%(약 54명)</b>	
자살 시도	12.1%(약 30명)	<b>11.5%(약 31명)</b>	
사회적 지지체계	실험집단		사업 전반에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여 사례관리, 건강리더 활동 및 각 사업 운영 전반에 관계 확장 및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9.4%	<b>7.81%</b>	
	비교집단		
	6.8%	<b>6.75%</b>	
행복도	49.93점 /100점	<b>50.78점 /100점</b>	주관적 행복도 상승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경험	병의원 (실험집단)		미치료 경험은 감소. 적극적 치료중재의 사례관리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됨.
	35.5%	<b>26.6%</b>	
	치과 (실험집단)		
	43.4%	<b>38.8%</b>	
건강행태 변화	흡연 경험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금연 중이라는 응답이 높음
	23.7%	<b>20.6%</b>	
	평균흡연 시작나이		
	25.6세	<b>26.7세</b>	
	1년 이내 음주		음주상태는 늘었으나 주량은 줄
	17.2%	<b>17.4%</b>	
	평균음주량		
	4.3잔	<b>4.2잔</b>	
	규칙적운동		운동 관련사항은 전반적으로 줄어듬
	35.1%	<b>31.1%</b>	
주 평균운동횟수			
4.9회	<b>4.8회</b>		
주 평균운동시간			
46.6분	<b>44.5분</b>		

<p>질적평가 및 시사점</p>	<p><b>[노인당사자에 대한 영향력 및 기여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회에서 패널로 조사하는 성과연구사업 결과 노인건강 돌봄사업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u>방문의료서비스</u>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건강식 배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노인건강 돌봄사업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u>건강 활동 지원은 도움 받은 만족도가 높게</u> 나타났다.</li> <li>- 또한 노인건강 돌봄 사업 서비스 중 향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의료서비스, 건강식 배달, 사례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li> <li>- 대전지역은 노인건강 돌봄사업 서비스 8가지 모두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li> </ul> <p>- 사업 이용자 FGI 조사 결과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혈압도 재 주시면 우리가 조절을 하잖아요. 먹는 음식을 조절한다던가, 말씀하시는 게 병원에 가면은 딱 지정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것만 말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오시면 이야기도 잘 하셔. 방문 하시는 분들이. 그게 우리는 참 좋죠.”(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임정기,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 사업성과 기초결과 분석’ 중에서)</p> <p>-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인 노인에게 이 사업은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 전술된 임정기 교수의 자료(p.132)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다.</p> <p>‘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인 건강 외에 심리적인 안정감은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초적인 필요요소이다. 인터뷰 조사 결과 서비스 대상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으며 더 나아가 사람에게 대한 신뢰의 회복까지 나타났다. 이 같은 안정감의 회복은 서비스 수혜자에서 제공자로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는 곧 당사자성의 회복으로 해석된다.’</p> <p>실제로 같은 자료에는 어르신들의 진솔한 느낌이 담겨 있다.</p> <p>“혼자 가만히 있으면 못된 생각만 하지... 어서 갔으면 좋겠다. (생략) 내가 몸이 아프니까 활동을 못하니까 부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략) 몸도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지. (생략) 진짜 나는 민들레 가면 좋아. 원장님도 잘 보시고 하지마는 간호사들도 친구 같고. 내가 소녀로 돌아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야. 농담도 하고 말하자면 자식 같고 친구 같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은 어르신들과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고 말한다.</li> </ul> <p>“살아갈 이유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죽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p>
---------------------------	---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반응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겪었고...”  
- 이 외에도 “자식보다 낫다는 말”, “문을 이렇게 잠그고 계셨는데 일단은 문을 개방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어떤 어르신들은 “내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직접 만든 식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고 고백한다.

- “나는 나누고 싶어. 나도 나누고 싶은데 개별이나 뭐가 있어야지. (생략)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안 받지. 예를 들면 나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니까 나도 한 톨 끼어가지고.”(같은 자료, p. 132)

-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제공자 위주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몇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느냐로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이봉주, ‘성과에서 컬렉티브 임팩트까지의 로드맵’ 중에서)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들의 당사자성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및 기여도]**

- 임정기 교수의 자료(p. 133)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 참여기관 조직 문화 역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과 같은 참여기관의 경직성이 점차 협력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반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평적 의사 소통을 토대로 한 협력적 관계 구축을 가능케 하였다.

- 이용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동 주민센터의 게이트 키핑 기능을 적극 활용한 결과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사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사례관리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지역의 복지관들이 주축이 된 민관협력 사례관리 발표대회에서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례가 주요 케이스로 발표되었다.

- 일단 건강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 노인이 발생하면 먼저 민들레에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시로 이용자에게 대해 정보와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컬렉티브 임팩트에서 제안한 조건 중 ‘공유된 성과측정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하나의 공통 아젠다’와 ‘상호보완적인 행동’,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초기 단계지만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및 향후계획]**

한 사람의 삶은 건강과 경제와 문화와 사회관계 등이 다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사람의 생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제도와 서비스들은 부분 부분의

전문성을 무기로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복합만성질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노년의 삶에 있어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모금회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은 아직은 채워야할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의 생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2년간 민들레를 중심으로 구축한 이 모델은 지원 마지막 년도인 2018년에는 보다 지역으로 시선을 넓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 네트워크들과 진정한 지역사회 돌봄을 가능하게 할 건강리더들과 더불어 '주민참여형건강증진플랫폼'을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하며 지속하고자 한다.

11. 활동사진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진료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영양관리지원	건강환경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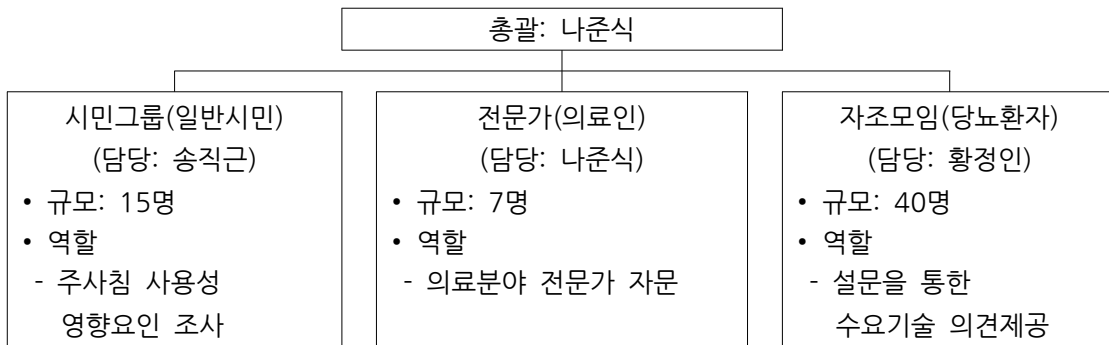
# 주민참여형건강관리플랫폼 모델링

## 격차 해소 연구개발사업

### ■ 사회문제해결형 격차해소 연구개발사업

1. 사업명: 저소득층 당뇨 치료용 보급형 인슐린 주사침 개발 리빙랩 운영 및 보급
2. 사업기간: 2015.11.30.~2017.11.29(2년) 중 2차년
3. 사업지역: 대전광역시
4. 사업대상

㉠ 민들레시민참여연구단



㉡ 설문: 약500명(비당뇨환자, 당뇨환자:인슐린미사용, 주사기인슐린사용, 펜타입인슐린사용)

5.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분야 사회적 기업과 사회기술기반 기업의 참여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제품·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사업.
6.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7. 소요예산: 2차년 사업비 80,000,000원

8. 한눈으로 보는 저소득층 당뇨 치료용 보급형 인슐린 주사침 개발 리빙랩 운영 및 보급 사업



<p><b>당사자 조직</b> (당뇨자조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뇨자기관리 능력 향상</li> <li>○ 정기모임, 프로그램 진행</li> <li>○ 정보공유, 학습</li> <li>○ 후속활동 토론(당뇨협동조합)</li> </ul>
<p><b>임상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증경감</li> <li>○ 출혈과 같은 부작용 감소</li> <li>○ 인슐린 주입량 확인</li> </ul>
<p><b>시제품</b> <b>보급 및 홍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사침 사용권유</li> <li>○ 제품에 대한 개선의견 취합</li> </ul>

<p><b>리빙랩</b> <b>구축 및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연구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그룹 15명</li> <li>- 전문가 7명</li> <li>- 자조모임 40명</li> </ul> </li> <li>○ 리빙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 의료인 등</li> <li>- 당사자 의견 청취: 40명</li> <li>- 소비자 설문: 489명</li> <li>- 임상연구: 자조모임 10명 참여</li> </ul> </li> <li>○ 연구개발 타당성 확보</li> <li>○ 연구방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펜타입 개발</li> <li>- 보험수가제도 진입 검토</li> </ul> </li> </ul>
--------------------------------------	--

9-1. 성과목표

목표	세부내용
리빙랩 구축	15인 이상 구성
리빙랩 운영	소비자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 200명 이상, 요구사항 5종
문제해결 지원	연구개발단위 간담회 2회, 20인 이상 진행과정 공유 및 정기평가 3회, 20인 이상
임상연구시험	저통증 최소침습 마이크로니들의 통증 경감 정도 및 주입량 평가 임상 연구 시험을 수행하여, 마이크로니들의 인체 내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
시제품 보급 및 홍보	주사침에서 펜형 니들로 전환되어 개발될 시제품에 대한 자조모임 의 임상연구 참여 및 사용 후 개선사항 피드백 등을 통해서 최종 제품개발에 참여하고, 제품개발 후 보급 등에 참여

9-2. 2017년 주요 사업 내용

2017.04.24	<p>운영위원회 보고 및 회의</p> 
2017.05.01	<p>당뇨자조 점심 모임</p>
2017.05.16	<p>당뇨자조모임 워크숍, 당뇨병 식사의요법 강의</p> 
2017.06.21	<p>주사침 생산시설 견학</p>





당뇨자조모임 고지혈증 강좌

2017.07.17



당뇨자조모임 나들이

2017.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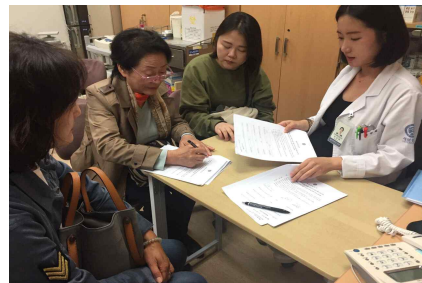
당뇨자조모임 산행

2017.10.14



당뇨자조모임 임상시험 참여

2017.10.19  
2017.10.20  
2017.10.23  
2017.10.30



최종워크숍

2017.11.25

1. 당뇨자조모임 산행
2. 리빙랩 진행경과와 결과발표 참여자 소감 및 평가

10. 평가 및 시사점

<p><b>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빙랩에 대한 이해와 참여경험</li> <li>(2) 의료인, 당뇨인, 자원활동가, 시민참여연구센터 등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li> <li>(3)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자조모임의 구성 및 운영경험</li> <li>(4) 제품개발에 수요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변경되는 경험 (주사기형→펜타입)</li> <li>(5) 제품개발 참여경험으로 새로운 필요와 욕구 구체화 (당뇨인 협동조합, 당뇨인을 위한 복합공간 당뇨카페)</li> <li>(6)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취약계층의 자조모임을 통한 소셜케어, 사회참여활동으로 사회격차해소에 기여</li> </ul>
<p><b>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기획 단계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필요보다는 기술 중심의 개발과제선택</li> <li>(2)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리빙랩을 새로운 형식적인 절차 혹은 역할분담 정도로 인식</li> <li>(3) 기술개발, 생산자와 달리, 수요자 그룹은 제품개발 참여과정과 결과로부터 얻을 구체적 이득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당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별도의 당사자 조직 구성자체에 많은 역량투여</li> <li>(4) 제품개발과정에서의 단계나 변화에 맞게 새로이 요청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리빙랩 조직구성과 운영 필요(임상연구, 인증허가과정, 마케팅 등)</li> </ul>

# 주민참여형건강관리플랫폼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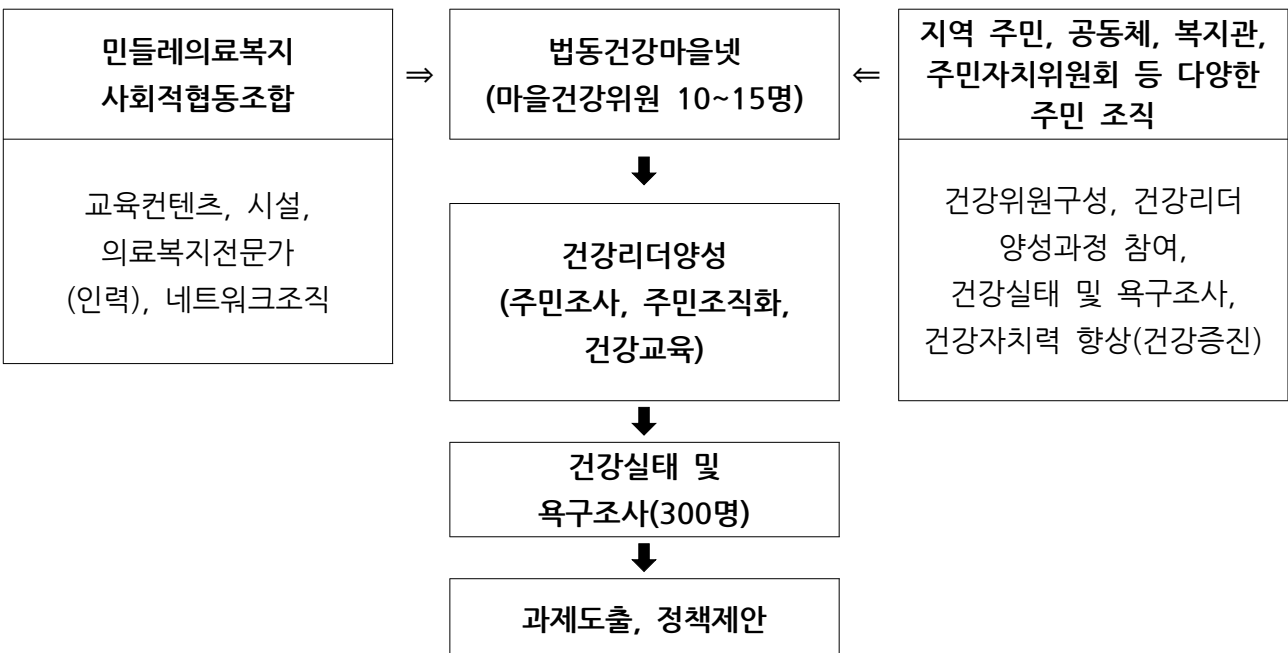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가꾸자

1. 사업명: 주민참여 건강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약칭 법동건강마을넷)
2. 사업기간: 2017년 3월~11월
3. 사업지역: 대덕구 법1동, 법2동
4. 사업대상: 대덕구 법동 마을주민
5. 사업목적: 건강관련 이슈를 주민참여 건강마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결
  - 치료중심의 의료보건체제로 인한 예방적 건강 활동의 부재
  -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한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 전문영역인 의료의 특성으로 인한 건강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자구노력 어려움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
6.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7. 소요예산:

총예산	보조금	자부담
7,700,000	7,000,000	700,000

### 8. 성과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마을 네트워크 구축</li> <li>· 지역주민 건강리더 양성</li> <li>· 노인영양실태조사</li> </ul>
주요사업내용	<p><b>[건강마을 네트워크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1동과 법2동의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제안</li> <li>· 법동건강마을넷 설립 논의 및 운영위 학습 진행</li> </ul> <p><b>[지역주민 건강리더 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주민을 돕는 모델을 만들고 점검·보완</li> <li>· 건강코디네이터인 건강리더의 역할을 실험·완성</li> <li>· 영양중심으로 지역의 이슈를 찾아내고 향후 반찬배달, 공동밥상, 건강식당 등의 사업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li> </ul> <p><b>[노인영양실태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영양결핍의 요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li> </ul>

9. 및 시사점

활동실적 및 양적평가	<p><b>[건강마을 네트워크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15곳</li> </ul> <p><b>[지역주민 건강리더 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기 건강리더: 11명</li> <li>· 청소년 2기 건강리더: 12명</li> </ul> <p><b>[노인영양실태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12명</li> </ul>								
질적평가 및 시사점	<p><b>[지역주민 건강리더 양성]</b></p> <p>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건강리더들이 법동 지역의 어르신 20여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묻기, 건강상태 살피기, 아픔과 생활의 어려운 점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건강리더들이 활동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가슴이 아프고,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우리는 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어르신이 좋아하실 반찬이나 과일을 준비해가며 기쁘고, 어르신이 반기며 나누어 주시는 음식이 참 고맙다. 도움을 드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어르신을 한 주 한 주 만날 수록 자신을 성찰하고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 누구는 딸 같은 마음으로, 누구는 동생 같은 마음으로, 누구는 친구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과 공감하고 가까워져서 공모사업을 마친 후에도 대부분의 건강리더들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p> <p>※ 주민만나기 기록서: 건강리더 신철교 - 배OO씨댁 2017.10.27. 1시</p> <p>- 안부묻기</p> <table border="0"> <tr> <td>식사는 잘하고 계시나요?</td> <td>그냥 먹어요</td> </tr> <tr> <td>약은 잘 챙겨드시나요?</td> <td>약은 꼭 먹어요</td> </tr> <tr> <td>잠은 잘 주무시나요?</td> <td>잘자요</td> </tr> <tr> <td>운동은 하셨어요?</td> <td>밖에 안나가서 안해요</td> </tr> </table>	식사는 잘하고 계시나요?	그냥 먹어요	약은 잘 챙겨드시나요?	약은 꼭 먹어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잘자요	운동은 하셨어요?	밖에 안나가서 안해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나요?	그냥 먹어요								
약은 잘 챙겨드시나요?	약은 꼭 먹어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잘자요								
운동은 하셨어요?	밖에 안나가서 안해요								



10. 활동사진

네트워크 구성 제안(한밭레츠 등)



네트워크 구성 제안(법1,2동 통합)



대덕건강마을네트워크 설립논의



청소년건강리더1-마음열기



청소년건강리더1-건강이야기



청소년건강리더2-MBTI





청소년건강리더2-법동이야기



청소년건강리더3-커뮤니티매핑



청소년건강리더3-마을건강조사



청소년건강리더4-스트레스



청소년건강리더4-특강, 수료식



주민건강리더양성과정  
기획회의





주민건강리더양성과정 기획회의-간담회



법동건강마을네트워크  
운영위 학습



주민건강리더양성 교육훈련1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 사례



주민건강리더양성 교육훈련  
-노인의 이해



주민건강리더양성 교육훈련3  
-주민관계맺기



주민건강리더양성 교육훈련4  
-타임뱅크를 통한 지역건강돌봄





주민건강리더양성 교육훈련5  
-영양과 건강



주민만나기-휴대폰 사용안내



주민만나기-영양실태조사



주민만나기-안부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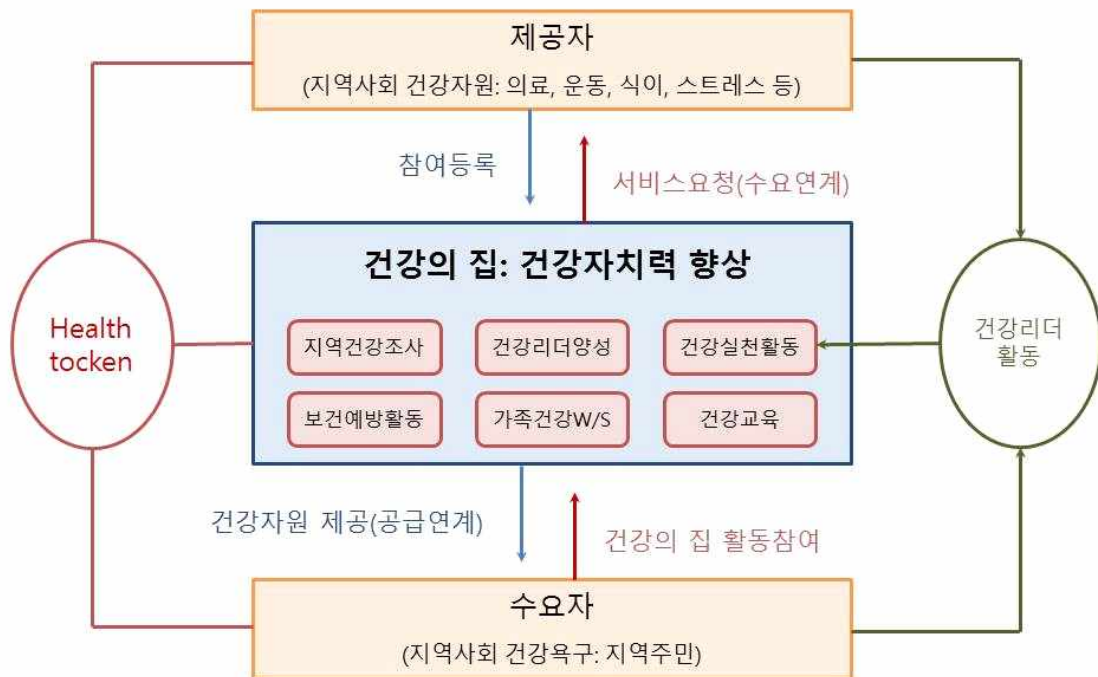


# 주민참여형건강관리플랫폼 모델링

## 혁신형협동조합모델발굴사업

### ■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구축

1. 사업명: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2. 사업기간: 2017.04.20. ~ 2017.11.30.
3. 사업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4. 사업대상: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단체
5. 사업목적: 예방-의료-식생활-운동-정신건강-문화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6.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 소요예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한도액 10,000,000원
8. 한눈으로 보는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총괄, 플랫폼, 건강리더 양성
- 참여기관
  - 분야별 공급기관: 네트워크 참여, 서비스 표준화, 신규 서비스 개발, 체크리스트 개발
  - 복지기관: 수요자 연계, 건강(육구, 수요)조사
  - 연구기관: 체크리스트, 건강(육구, 수요)분석, 성과측정
- 건강리더: 건강(육구, 수요) 조사, 서비스 전달, 자조모임 조직

<b>공급기관 네트워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구축 기획 회의</li> <li>○ 참여기관: 10개</li> <li>○ 공동학습: 8회</li> </ul>	<b>주민참여 건강증진 플랫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구축 위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10회</li> <li>- 컨설팅: 5회</li> </ul> </li> <li>○ 매뉴얼 제작</li> </ul>
<b>정보공유 체계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공유체계: 조사지 취합</li> <li>○ 외부공유체계: 온라인소식지</li> </ul>		
<b>서비스 전달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리더양성: 10명, 6회차</li> <li>○ 욕구조사: 지역노인 20명</li> </ul>		

9. 성과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성과목표	구분	목표	현황	달성도
	주민참여 건강증진 플랫폼	매뉴얼 구축	매뉴얼 구축	100%
	플랫폼 연계기관	8개	10개	125%
	서비스 제공 연인원	500명	160명	31.2%
주요사업내용	<p><b>[공급기관 네트워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기관 네트워크 참여</li> <li>• 플랫폼 이해</li> <li>• 참여기관 신뢰구축: 제공 서비스, 체크 리스트 협의</li> </ul> <p><b>[정보공유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기관 정보, 수요자 욕구조사의 결과를 취합해 매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일부 진행(조사지 취합하는 방식)</li> <li>- 온라인의 경우 비용문제로 추후 진행</li> </ul> </li> </ul> </li> <li>• 외부: 온라인 소식지 활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 카카오프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및 물품 안내</li> <li>- 정기 건강정보 제공</li> <li>- 공통 프로그램 안내 등</li> <li>- 고객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li> </ul> </li> </ul> </li> </ul> <p><b>[서비스 전달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리더 양성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자원 등의 이유로 노인, 영양에 한전해 지역주민 건강육구 (수요)조사</li> <li>-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목표</li> <li>• 사업결과</li> <li>- 건강리더 10명 양성</li> <li>- 어르신 만나기, 안부묻기, 돌봄지원, 노인영양실태조사 등</li> </ul> <p><b>[육구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만나기: 건강리더 10명*어르신 2명*주1회 방문*5주 = 100회</li> <li>• 안부묻기: 식사, 투약, 기분, 영양, 운동 등</li> <li>• 돌봄지원: 말벗, 운동, 병원동행 휴대폰 사용법 교육 등</li> <li>• 노인영양실태조사: 건강리더 10명*노인2명=20명</li> </ul> <p><b>[모델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5회</li> <li>• 교육:10회</li> <li>• 매뉴얼 제작</li> </ul>
--	--

10. 평가 및 시사점

<b>활동실적 및 평가</b>	<b>[공급기관 네트워크]</b>		
	<b>협력 기관명</b>	<b>세부 사업명</b>	<b>협력방안</b>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기술지원과 평가	•체크리스트 제공, 사례관리
	마음의 숲 협동조합	심리서비스	•사례관리 •심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동아체육관 작업치료사	신체서비스	•체크리스트 제공, 사례관리 •운동능력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두레약국	투약서비스	•체크리스트 제공, 사례관리 •복약 관리 교육 프로그램
	파란세상 사회적기업	생활서비스	•체크리스트 제공, 사례관리 •위생관리 교육 프로그램
	대덕품앗이 협동조합	영양서비스	•식습관 관리 교육 프로그램
	한발레츠	자원봉사	•대상자 추천, 자원연계, 자원봉사
	마루마을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	•대상자 추천, 자원연계, 자원봉사
	대덕문화원	정서지원 서비스	•대상자 추천, 자원연계
	봄소프트	IT기술개발과 지원	•digital device 개발 •DB구축

	<p><b>[정보공유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소식지를 통한 통합 홍보공간 마련</li> <li>- 오프라인: 조사를 통한 체크리스트 마련</li> </ul> </li> <li>•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사회복지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li> <li>-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CBPR) 시스템 개발</li> <li>- 주민참여 건강증진 온라인 플랫폼 개발</li> <li>- 코프로덕션(co-production)시스템 구축</li> </ul> </li> </ul> <p><b>[서비스 전달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돌봄시스템 가능성 확인</li> <li>• 건강리더 10명, 어르신 2명, 주1회 방문을 통해 안부문기, 외부자원연계 총 160회</li> <li>• 과제: 케어매니저, 건강리더 양성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li> </ul> <p><b>[주민참여 건강증진 플랫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운영 매뉴얼 마련</li> <li>• 과제: 모델링 및 자원마련 대책</li> </ul>
--	--

11. 활동사진

구축	공급기관 상호교육	공급기관 상호교육
		
정보공유체계(온라인)	건강리더 양성	지역건강조사
		

## 사회자본연계

### 씨앗기금사업

#### ■ 2017건강나눔사업

1. 사업명: 건강나눔 프로젝트
2. 사업기간: 2017.6.23 - 2017.11.30
3. 사업지역: 한국의료사회협연합회 소속 회원조합 지역
4. 사업대상: 건강관리취약계층
5. 사업목적: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6.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7. 소요예산: 총사업비 6천 만원 중 민들레 연계 258,140원

총예산	씨앗기금	민들레 자부담
258,140원	258,140원	외부연계진료, 자부담 無

#### 8. 주요내용

지원 어르신의 경우 수급권자로 백내장 수술 후 망막전막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3회 정도의 항체주사 투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1회만 주사제 투여 후 지속치료를 못 하던 중 씨앗기금의 도움으로 남은 망막항체주사 2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투여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는 이상증세 없이 안정을 찾음.

## 사회자본연계

### SK사회성과인센티브

#### ■ SK사회성과인센티브

1. 사업명: 사회성과인센티브
2. 사업기간: 2015. 1. 1 - 2017.12.31. 3개년 중 3년차
3. 사업지역: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든 사회적 활동
4. 사업대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든 사회적 활동 대상자
5. 사업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 활동 보상을 통한 사회적기업 성장 기여
6. 지원기관: sk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7.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금전적 지원 수급)
8. 사업내용: 2015년 사회성과 측정결과

I.사회서비스	II.고용	III.환경	IV.사회생태계	총성과	매출대비 사회성과 평균
85,558,894	7,472,594	0	0	93,031,488	3.5%

#### 9. 지원금 연도별 수급 현황

2017년 귀속	2016년 귀속	2015년 귀속
미정	14,380,719원	25,471,07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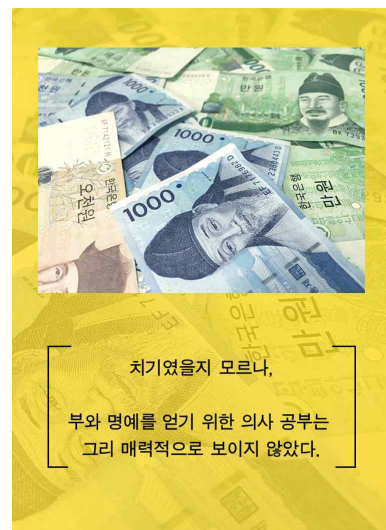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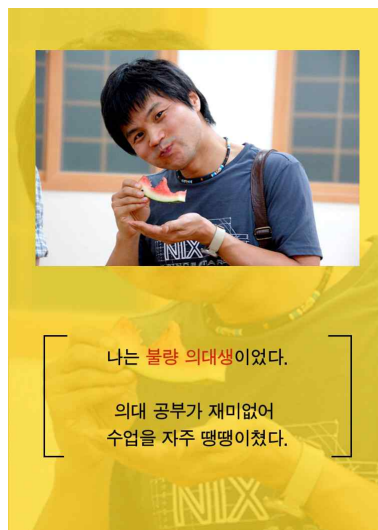


## 사회자본연계

###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회적기업 홍보

#### ■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돌봄)을 부탁해

1. 사업명: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
2. 사업기간: 2017.5. ~ 2017.7
3. 사업지역: 전국
4. 사업대상: 불특정 다수(전국민)
5.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국민들과 함께 공유.
6.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7. 소요예산: 프로젝트 지원금 5,900,000원, 홍보 지원(기획기사, 핸드북 수록, 지속홍보)
8. 한눈으로 보는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돌봄)을 부탁해







그러던 어느 날,  
아픈 사람을 넘어 **아픈 세상**이 보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공부에 매진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는  
국민이 단지 의료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기존의 병원들은 설립 때부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투자를 상회하는 이익창출**이  
제1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아래서는  
최대한 많은 환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의료'를 팔아야만  
병원은 빛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한날 '돈벌이'로 전락한다.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많은 이익이 남기에  
'3시간 대기, 3분 진료, 항생제 과다 처방'은  
피할 수 없는 '**3중 세트**'가 된다.



애초에 시작이 그러한데  
**'환자중심의 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문구일 뿐이다



'이런 왜곡된 현실에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고민을 하던 중  
'의료협동조합'이란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의사, 환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운영되는  
'의료협동조합'은  
의사가 아닌 주민이 병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뜻이 통하는 303명이 힘을 모아 대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환자가 조합원이자 병원의 주인인  
 <민들레>는  
 말 그대로 '환자중심'의 적정진료를 할 수 있다.  
 수익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3분진료'나 '항생제 과다 처방'을  
 더 이상 걱정 할 이유가 없다.

※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평가에서  
 <민들레>의 항생제 사용 비용은  
 전국 46%를 크게 밑도는 8%였다.



<민들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의 아픔 뿐 아니라  
 마음의 아픔, 관계의 틀어짐까지 해소하는  
**정신적 건강**을 추구한다.



즐겁게 노래하는 노래교실,  
 역사를 공부하는 소모임,  
 악기로 소통하는 통기타 교실,  
 채소와 함께 건강도 키우는 옥상텃밭 등



조합원들 간에 일상에서 어울릴 수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꾸려진다.



303명으로 시작된 <민들레>는  
 이제 3,500세대가 넘는  
 조합으로 크게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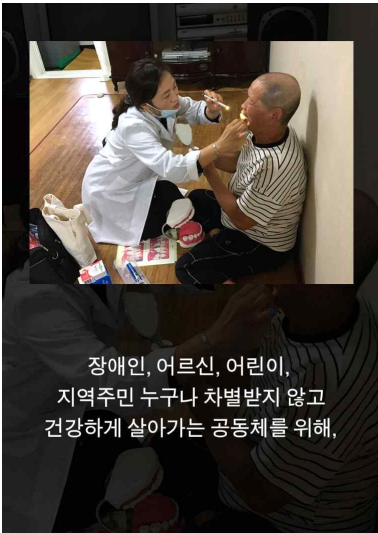


10년 후는 3만세대의 조합원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늙고 병들더라도  
 이웃의 돌봄을 받으며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시장에서 '구매하는 건강'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건강'**을 위해



오늘도  
지역사회 **'건강주치의'**라는





<민들레>의 꿈은  
신나게 **현재진행** 중이다.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구라도 지역사회의 돌봄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응원하기: <https://goo.gl/5sV9Lc>

**함께 성장합니다**





# 사회자본연계

## 민들레스스로조합비

### ■ 스스로조합비

1. 사업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조합비(기부금) 제도
2. 사업기간: 2015. 8월 - 계속
3. 사업대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4. 사업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보건예방활동 사업비 모금
5. 사업내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의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에 따른 보건예방활동 사업비
6. 연차별 조합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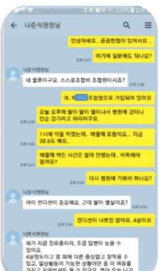
구분	2017	2016	2015	누계
모금 액(원)	22,550,000	11,920,000	1,380,000	35,850,000
회원 수(명)	195	115	48	195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액(원)	37,453,180	20,002,030	30,193,770	87,648,980

### 7.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혜택


- 비보험적용 의료비 5% 추가 지원
-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발행(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자 기부금 비용처리 활용)
- 스마트(카카오톡) 가족주치의 가입
  - 카카오톡으로 원장님과 1:1 상담
  - 건강정보 제공
  - 건강쿠폰 발행

스스로조합비 조합원에 가입하면 스마트(카카오톡) 가족주치의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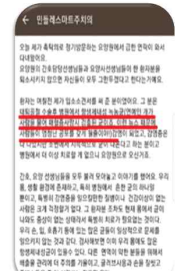
**1. 카카오톡으로 원장님과 1:1 상담**




**2.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보건예방활동 지원**



**3. 알아두면 쓸데있는 건강정보 쉬운**



**4. 건강쿠폰발행**





# 2017년 경영보고

- 자본결산(안)
- 수지계산서(안)
- 예산대비 집행 계산서(안)
- 부서별 수지계산서(안)
- 재무상태표(안)





□ 자본결산(안)

1. 자본조성계획과 현황

분 류	항 목	예상 금액(원)	집행 현황(원)
출자금	신입조합원	15,000,000	9,400,000
	조합원증자운동	100,000,000	△82,792,350
	<b>출자금 소계</b>	<b>115,000,000</b>	<b>△73,392,350</b>
차입금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125,000,000	125,000,000
	기독교청년의료인회		22,000,000
	조합원차입금		185,000,000
	<b>차입금 소계</b>	<b>125,000,000</b>	<b>332,000,000</b>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1,105,816,280	1,105,816,280
<b>합 계</b>		<b>1,345,816,280</b>	<b>1,364,423,930</b>

2. 운용 계획과 집행현황

구 분	품 명	예상 금액(원)	집행 현황(원)
의료기기	검진 내시경 스코프 구입	10,000,000	0
	검진 혈액 원심분리기	500,000	0
	대덕, 둔산 의료용PC 및 비품 교체 (법한 침전기자극기 구매)	10,000,000	720,000
	둔산 구강스캐너 등 의료소모품 구입	2,500,000	0
	<b>의료기기 소계</b>	<b>23,000,000</b>	<b>720,000</b>
시설장치	대덕 3,4층 시설보완 (우리조합건물)	10,000,000	7,670,420
	대덕 사업소 환경개선	10,000,000	1,100,000
	둔산 간판 및 한의원 약재실 이전	25,000,000	3,000,000
	<b>시설장치 소계</b>	<b>45,000,000</b>	<b>11,770,420</b>
차입금 상환	금융권 및 조합원차입 일부 상환	91,068,952	320,656,454
사업 준비금	운용예비비	1,186,747,328	1,031,277,056
<b>합 계</b>		<b>1,345,816,280</b>	<b>1,364,423,930</b>

□수지계산서(안)

-통합수지계산서(안)

과목	제15(당)기2017년		제14(전)기2016년	
	금액		금액	
<b>I.매출액</b>		2,625,435,788		2,694,877,552
임대료수입	7,600,000		0	
의원수입금	870,628,633		786,706,033	
한의원수입금	370,142,030		526,842,400	
치과수입금	893,496,333		836,964,076	
스포츠매출할인	1,462,500		0	
검진센터수입금	399,785,081		361,843,090	
장기요양수입금	57,478,846		61,212,490	
스포츠의학센터	6,981,646		3,538,500	
조합본부수입금	20,785,719		117,770,963	
<b>II.매출원가</b>		293,696,120		358,229,794
의약품매출원가		114,902,640		150,624,578
기초의약품재고액	17,102,642		43,966,799	
당기의약품매입액	110,528,735		123,760,421	
기말의약품재고액	12,728,737		17,102,642	
의료소모품매출원가		178,793,480		207,605,216
기초의료소모품재고액	36,726,922		57,501,541	
당기의료소모품매입액	178,510,683		186,830,597	
기말의료소모품재고액	36,444,125		36,726,922	
<b>III.매출총이익</b>		2,331,739,668		2,336,647,758
<b>IV.판매비와관리비</b>		2,287,256,426		2,702,653,378
임원급여	168,337,580		215,428,610	
직원급여	1,389,316,818		1,371,630,767	
(인건비지원금)	201,083,509		17,586,840	
잡급여	6,081,270		19,304,090	
퇴직급여	125,092,941		131,460,056	
복리후생비	100,541,860		99,613,616	
여비교통비	7,713,953		7,028,160	
통신비	14,457,281		16,537,063	
수도광열비	5,673,531		2,739,618	
전력비	26,378,143		27,811,941	
세금과공과금	47,426,040		53,614,270	
감가상각비	109,169,892		116,952,556	
지급임차료	84,060,000		83,031,600	
수선비	4,484,900		0	
보험료	44,949,306		29,663,290	
(보험료지원금)	18,463,370		0	
차량유지비	421,000		3,818,473	

과목	제15(당)기2017년		제14(전)기2016년	
	금액		금액	
교육 훈련 비	5,267,400		5,781,744	
도서 인쇄 비	1,275,350		4,189,560	
회의 비	6,682,350		6,853,760	
소모품 비	24,891,890		27,904,849	
지급수수료	128,520,666		108,765,325	
건물관리비	4,240,853		4,104,071	
협회비	448,000		1,871,000	
무형고정자산상각	3,984,784		4,788,699	
연대활동비	27,025,710		20,341,030	
조직활동비	1,789,060		1,777,540	
기금사업비	260,034,166		189,190,159	
(기금사업비지원금)	251,435,900		39,602,612	
홍보활동비	7,822,330		4,262,000	
인적용역비	28,724,920		81,558,620	
(인적용역비지원금)	0		14,615,110	
보건예방사업비	123,427,211		134,435,473	
<b>V. 영업손실</b>		44,483,242		-366,005,620
<b>VI. 영업외수익</b>		32,205,558		28,107,566
이자수익	2,161,233		2,189,530	
정부지원및보조금	11,360,000		24,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99,000		0	
잡이익	18,185,325		1,918,036	
<b>VII. 영업외비용</b>		56,404,511		115,978,751
이자비용	49,828,919		61,637,666	
기부금	1,440,000		100,000	
보상비	0		9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22,871		77,000	
지원반환금	0		53,075,469	
잡손실	112,721		138,616	
<b>VIII. 법인세차감전손실</b>		20,284,289		-453,876,805
<b>IX. 법인세등</b>		0		69,300
법인세등	0		69,300	
<b>X. 당기순손실</b>		20,284,289		-453,946,105

□예산대비집행계산서(안)

관	항	목	2017년예산	2017년결산	예산대비	총액대비
<b>수 입 총 계</b>			<b>3,220,326,302</b>	<b>3,150,155,888</b>	<b>103%</b>	<b>100%</b>
수입	사업	대덕의원,검진,가정간호	1,183,000,000	1,270,413,714	107.39%	40.33%
		대 덕 한 의 원	327,600,000	305,906,480	93.38%	9.71%
		대 덕 치 과	482,100,000	481,840,970	99.95%	15.30%
		둔 산 한 의 원	226,300,000	64,235,550	28.39%	2.04%
		둔 산 치 과	339,900,000	411,655,363	121.11%	13.07%
		스 포 츠 의 학 센 터	18,000,000	5,519,146	30.66%	0.18%
		경영지원실+참선	134,511,760	85,864,565	63.83%	2.73%
		참선(프로젝트사업)	492,514,542	492,514,542	100.00%	15.63%
		<b>사업수입합계</b>	<b>3,203,926,302</b>	<b>3,117,950,330</b>	<b>97.32%</b>	<b>98.98%</b>
	사업외	이 자 수 익	2,000,000	2,161,233	108.06%	0.07%
		정부지원및보조금	14,000,000	11,360,000	81.14%	0.36%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000		0.02%
		잡 이 익	400,000	18,185,325	4546%	0.58%
		<b>사업외수입합계</b>	<b>16,400,000</b>	<b>32,205,558</b>	<b>196.38%</b>	<b>1.02%</b>
<b>지 출 총 계</b>			<b>3,217,728,505</b>	<b>3,129,871,599</b>	<b>97.27%</b>	<b>100%</b>
지출	사업비	교 육 훈 련 비	6,700,000	5,267,400	78.62%	0.17%
		회 의 비	7,390,000	6,682,350	90.42%	0.21%
		연 대 활 동 비	20,100,000	27,025,710	134.46%	0.86%
		조 직 활 동 비	6,000,000	1,789,060	29.82%	0.06%
		홍 보 활 동 비	9,500,000	7,822,330	82.34%	0.25%
		보 건 예 방 사 업 비	127,070,000	123,427,211	97.13%	3.94%
		<b>사업비합계</b>	<b>176,760,000</b>	<b>172,014,061</b>	<b>97.32%</b>	<b>5.50%</b>
	판매관리비	의약품비등(재고반영)	350,421,650	293,696,120	83.81%	9.38%
		직 원 급 여	1,419,017,680	1,356,570,889	95.60%	43.34%
		잡 급	4,800,000	6,081,270	126.69%	0.19%
		퇴 직 급 여	126,551,473	125,092,941	98.85%	4.00%
복 리 후 생 비		88,846,660	100,541,860	113.16%	3.21%	

	여 비 교 통 비	8,900,000	7,713,953	86.67%	0.25%
	통 신 비	16,530,000	14,457,281	87.46%	0.46%
	수 도 광 열 비	2,870,000	5,673,531	197.68%	0.18%
	전 력 비	28,890,000	26,378,143	91.31%	0.84%
	세 금 과 공 과	53,950,000	47,426,040	87.91%	1.52%
	감 가 상 각 비	91,598,200	109,169,892	119.18%	3.49%
	지 급 임 차 료	83,545,800	84,060,000	100.62%	2.69%
	수 선 비	5,000,000	4,484,900	89.70%	0.14%
	보 험 료	25,610,000	26,485,936	103.42%	0.85%
	차 량 유 지 비	1,000,000	421,000	42.10%	0.01%
	도 서 인 쇄 비	3,150,000	1,275,350	40.49%	0.04%
	소 모 품 비	24,100,000	24,891,890	103.29%	0.80%
	지 급 수 수 료	108,500,000	128,520,666	118.45%	4.11%
	건 물 관 리 비	4,180,000	4,240,853	101.46%	0.14%
	협 회 비	1,880,000	448,000	23.83%	0.01%
	무형고정자산상각	312,500	3,984,784	1275%	0.13%
	기 금 사 업 비	492,514,542	501,112,808	101.75%	16.01%
	인 적 용 역 비	22,000,000	28,724,920	130.57%	0.92%
	예 비 비	10,000,000			
	<b>판관비합계</b>	<b>2,974,168,505</b>	<b>2,901,453,027</b>	<b>97.56%</b>	<b>92.70%</b>
사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66,600,000	49,828,919	74.82%	1.59%
	기 부 금	100,000	1,440,000	1440%	0.05%
	유형자산처분손실		5,022,871		0.16%
	잡 손 실	100,000	112,721	112.72%	0.00%
	법 인 세 등				0.00%
	<b>사업외비용합계</b>	<b>66,800,000</b>	<b>56,404,511</b>	<b>84.44%</b>	<b>1.80%</b>
<b>연 간 수 지 합 계</b>		<b>2,597,797</b>	<b>20,284,289</b>	<b>780.83%</b>	

□ 부서별 수지계산서(안)

계정과목	의원/검진/가정간호	대덕한의원	대덕치과	둔산치과	경영지원실
I . 매출액	1,270,413,714	305,906,480	481,840,970	411,655,363	7,600,000
II . 매출원가	95,122,973	38,066,311	90,190,610	58,657,660	-
III . 매출총이익	1,175,290,741	267,840,169	391,650,360	352,997,703	7,600,000
IV . 판매비와관리비	854,338,335	263,852,280	328,989,640	323,470,900	300,411,200
임직원급여	564,992,370	163,147,900	231,134,200	195,615,813	100,340,000
잡급	5,424,000	-	-	-	-
퇴직급여	42,362,680	12,945,420	18,705,640	16,261,120	8,686,527
복리후생비	38,083,489	15,859,032	12,470,742	10,351,008	12,694,952
여법교통비	1,027,883	23,700	-	2,102,000	2,698,644
통신비	3,182,484	2,307,195	1,385,494	679,032	5,909,392
수도광열비	1,878,019	617,511	194,314	378,894	2,097,062
전력비	8,134,228	3,790,126	3,887,361	5,330,264	2,558,078
세금과공과금	16,781,270	5,376,470	7,522,900	6,229,100	7,792,280
감가상각비	32,535,371	6,848,059	7,248,446	18,373,675	41,586,418
지급임차료		20,196,000	8,400,000	18,480,000	32,644,000
수선비	458,300	721,500	374,500	76,450	2,832,050
보험료	9,768,351	3,193,366	4,491,432	4,235,208	3,202,093
차량유지비		-	-	-	341,000
교육훈련비	1,376,900	463,700	480,000	622,600	895,000
도서인쇄비	224,800	251,800	538,200		260,550
회의비	97,260	71,180	33,180	35,500	5,493,620
소모품비	7,043,810	3,351,820	1,648,920	2,362,310	5,888,236

계정과목	의원/검진/가정간호	대덕한의원	대덕치과	둔산치과	경영지원실
지 급 수 수 료	63,672,980	5,586,831	10,006,250	10,705,647	14,894,198
건 물 관 리 비		-	480,000	3,230,345	-
협 회 비		-	-	24,000	400,0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1,540,000	-	123,200	209,834	2,044,000
연 대 활 동 비		-	-		24,625,750
조 직 활 동 비		-	-		836,800
기 금 사 업 비	-	-	-	-	-
홍 보 활 동 비		20,000	-		7,789,330
인 적 용 역 비	50,000	4,832,820	50,000		13,628,48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55,704,140	14,247,850	19,814,861	28,168,100	272,740
<b>V . 영 업 이 익</b>	<b>320,952,406</b>	<b>3,987,889</b>	<b>62,660,720</b>	<b>29,526,803</b>	<b>-292,811,200</b>
<b>VI . 영 업 외 수 익</b>	<b>938,351</b>	<b>732,388</b>	<b>4,339</b>	<b>8,781</b>	<b>15,667,340</b>
이 자 수 익	3,347	3,488	4,339	8,755	1,954,122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	-		11,360,000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		499,000
잡 이 익	935,004	728,900	-	26	1,854,218
<b>VII . 영 업 외 비 용</b>		<b>10,000</b>	<b>10,000</b>		<b>51,269,929</b>
이 자 비 용		-	-		49,828,919
기 부 금		-	-		1,440,00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0,000	10,000		1,000
잡 손 실		-	-		10
<b>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b>	<b>321,890,757</b>	<b>4,710,277</b>	<b>62,655,059</b>	<b>29,535,584</b>	<b>-328,413,789</b>
<b>IX . 법 인 세</b>		<b>-</b>	<b>-</b>		<b>-</b>
<b>손 이 익</b>	<b>321,890,757</b>	<b>4,710,277</b>	<b>62,655,059</b>	<b>29,535,584</b>	<b>-328,413,789</b>

계정과목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17년 사업종료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공동모금회 노인건강돌봄사업	둔산한의원	스포츠의학센터	격차해소 리빙랩사업
I . 매출액	78,264,565		64,235,550	5,519,146	
II . 매출원가	-		11,658,566		
III . 매출총이익	78,264,565		52,576,984	5,519,146	
IV . 판매비와관리비	111,140,206	27,132,237	68,791,730	1,805,468	7,324,430
임직원급여	58,087,510	6,113,946	38,761,720	60,000	-1,682,570
잡직급여	657,270				
퇴직급여	4,772,741	13,044,940	3,210,110		5,103,763
복리후생비	3,224,517	3,635,333	3,287,712	287,130	647,945
여비교통비	1,364,326	63,900	405,400	28,100	
통신비	263,135	107,738	622,811		
수도광열비	15,183	379,338	92,260		20,950
전력비	20,705	1,399,247	1,199,600	35,032	23,502
세금과공과금	1,780,820		1,943,200		
감가상각비	-		1,511,487	1,066,436	
지급임차료	-		4,340,000		
보험료	-		22,100		
차량유지비	786,243	-1,601,945	1,662,738	-	748,450
교육훈련비	80,000				
도서인쇄비	348,700	1,026,800		53,700	
회의비	-				
소모품비	733,010	193,300	25,300		
지급수수료	75,190		4,499,604	22,000	
건물관리비	21,080,320		2,475,370	99,070	
협회비	-		530,508		



계정과목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17년 사업종료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공동모금회 노인건강돌봄사업	둔산한의원	스포츠의학센터	격차해소 리빙랩사업
무형고정자산상각	-		24,000		
연대활동비	-		67,750		
조직활동비	2,399,960				
기금사업비	952,260				
홍보활동비	3,366,236	2,769,640	-	-	2,462,390
인적용역비	13,000				
보건예방사업비	10,163,620				
<b>V . 영 업 이 익</b>	955,460		4,110,060	154,000	
<b>VI . 영 업 외 수 익</b>	-32,875,641	-27,132,237	-16,214,746	3,713,678	-7,324,430
이자수익	374,896	13,743,081	303	339	735,740
정부지원및보조금	26,958	123,045	303	339	36,537
잡이익	-				
<b>VII . 영 업 외 비 용</b>	-				
이자비용	347,938	13,620,036			699,203
기부금	70	112,641	5,001,871		
보상비	-				
유형자산처분손실	-				
지원반환금	-		5,001,871		
잡손실	70	112,641			
<b>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b>	-32,500,815	-13,501,797	-21,216,314	3,714,017	-6,588,690
<b>IX . 법 인 세</b>	-				
<b>손익</b>	-32,500,815	-13,501,797	-21,216,314	3,714,017	-6,588,690

□재무상태표(안)

-통합재무상태표(안)

과목	제15(당)기		제14(전)기	
	금액		금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521,391,808		569,962,332
(1) 당 좌 자 산		472,218,946		516,132,768
현 금		7,166,812		6,967,867
보 통 예 금	126,727,470		151,056,675	
기 금 사 업 비 ( 차 감 )	28,939,724	97,787,746	12,459,058	138,597,617
기 타 제 예 금		37,000,000		25,000,000
정 기 예 적 금		0		22,000,000
단 기 대 여 금		33,500,000		36,500,000
미 수 수 익		1,036,778		1,800,000
미 수 금		219,587,472		230,345,305
선 급 금		73,682,379		52,352,709
선 급 비 용		1,419,599		2,520,920
선 납 세 금		482,760		48,350
전 도 금		555,400		0
(2) 재 고 자 산		49,172,862		53,829,564
의 약 품		12,728,737		17,102,642
의 료 소 모 품		36,444,125		36,726,922
II. 비 유 동 자 산		1,516,011,975		1,611,207,482
(1) 투 자 자 산		13,692,620		8,100,000
출 자 금		13,692,620		8,100,000
(2) 유 형 자 산		1,260,177,920		1,361,879,263
토 지		740,676,923		740,676,923
건 물	462,923,077		462,923,07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4,110,575	438,812,502	12,537,499	450,385,578
의 료 기 계	594,256,800		606,536,8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71,478,860	22,777,940	551,181,628	55,355,172
차 량 운 반 구			15,498,76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497,760	1,000
시 설 장 치	345,085,200		528,289,2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11,657,834	33,427,366	449,500,475	78,788,725
비 품	88,887,300		89,822,18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4,404,111	24,483,189	53,150,315	36,671,865

(3)무형자산	10,461,435	11,148,219
소프트웨어	10,461,435	11,148,219
(4)기타비유동자산	231,680,000	230,080,000
임차보증금	230,000,000	230,000,000
기타보증금	1,680,000	80,000
<b>자산총계</b>	<b>2,037,403,783</b>	<b>2,181,169,814</b>

<b>부채</b>		
<b>I.유동부채</b>	<b>1,507,460,074</b>	<b>1,687,128,236</b>
외상매입금	21,653,520	26,190,454
미지급금	166,491,811	238,133,606
예수금	71,447,510	73,283,167
선수금	53,620	30,000,000
단기차입금	1,247,813,613	1,319,521,009
<b>II.비유동부채</b>	<b>148,050,942</b>	<b>65,000,000</b>
장기차입금	148,050,942	65,000,000
<b>부채총계</b>	<b>1,655,511,016</b>	<b>1,752,128,236</b>
<b>자본</b>		
<b>I.자본금</b>	<b>1,299,503,241</b>	<b>1,372,895,591</b>
출자금	1,299,503,241	1,372,895,591
<b>II.자본잉여금</b>	<b>0</b>	<b>0</b>
<b>III.자본조정</b>	<b>0</b>	<b>0</b>
<b>IV.기타포괄손익누계액</b>	<b>0</b>	<b>0</b>
<b>V.결손금</b>	<b>917,610,474</b>	<b>943,854,013</b>
미처리결손금 ( 당기순이익 ) 당기: 20,284,289원 전기: -453,946,105원	917,610,474	943,854,013
<b>자본총계</b>	<b>381,892,767</b>	<b>429,041,578</b>
<b>부채 및 자본총계</b>	<b>2,037,403,783</b>	<b>2,181,169,814</b>

-재무상태표 상세 내역

미 수 금	의료기관청구분,건강보험공단청구분,카드매출미입금분				
	본점	법동한의원	법동치과	둔산치과	합계
건강보험(의원보험)	36,254,650				36,254,650
건강보험(의원보호)	42,306,550				42,306,550
건강생활유지비(의)	75,000				75,000
의-의사소견서(노인)	390,680				390,680
의 원 축 탁 의	540,810				540,810
의금연치료 -공단	86,410				86,410
의금연치료 -국고	148,940				148,940
건 강 검 진 센 터	46,126,960				46,126,960
건강보험(한의원보험)		5,244,790			5,244,790
건강보험(한의원보호)		8,476,720			8,476,720
건강생활유지비(한)		5,000			5,000
건강보험(치과보험)			10,946,390	5,669,280	16,615,670
건강보험(치과보호)			1,700,620	805,750	2,506,370
건강생활유지비(치)			5,500	1000	6,500
치 과 - 검 진			655,690	37,300	692,990
대 덕 구 청	5,479,000				5,479,000
조 직 활 동 행 사	96,000				96,000
카 드 사	22,706,330	1,873,300	6,759,531	15,916,571	47,255,732
기 타				7,278,700	7,278,700
<b>미 수 금 합 계</b>	<b>199,491,294</b>	<b>15,599,810</b>	<b>20,067,731</b>	<b>29,708,601</b>	<b>219,587,472</b>

<b>미 지 급 금</b>	퇴직연금(1억5천만원),카드대금등순연결제처리비용
<b>예 수 금</b>	원천세(4,390만원),제명조합원출자금(1,210만원),4대보험
<b>단 기 차 입 금</b>	조합원개인차입,기독교청년의료인회,사회연대은행,새마을금고,기업은행
<b>장 기 차 입 금</b>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공제기금),하나은행

비 유 동 자 산		본점	법동한의원	법동치과	둔산
출 자 금	하니쿰협동조합	100,000			100,000
	품앗이마을사회적협동조합	3,000,000			
	아이쿰한밭생협 자연드림	50,000			
	대덕품앗이협동조합	3,000,000			
	한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00,000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592,000			
	마음의숲협동조합	500,000			
	한국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 협동조합	1,000,000			
	새마을금고	50,620			
토 지	대덕282-10토지	740,676,923			
건 물	대덕282-10건물	438,812,502			
의 료 기 기	의료기기등	19,841,122	1,128,180	6,000	1,802,638
시 설 장 치	인테리어 & 냉난방설치	30,000,029	2,071,396	1,011,554	344,387
비 품	간판,컴퓨터추가 등	18,071,731	3,703,409	596,049	2,112,000
소 프 트 웨 어	프로그램	9,988,168		472,267	1,000
임 차 보 증 금	대덕282-7(대덕한의원,참선)	100,000,000			
	대덕282-11(대덕치과)	30,000,000			
	둔산임차보증금				100,000,000
기 타 보 증 금	대덕치과 세콤 설치보증금	80,000			
	의원 안구검사기 구입보증금	1,600,000			
<b>합 계</b>		<b>1,402,663,095</b>	<b>6,902,985</b>	<b>2,085,870</b>	<b>104,360,025</b>

## 제3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결주문: 2017년도 탈퇴 조합원 107명의 출자금 11,895,000원  
환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9호, 제34조제4호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2017년도 탈퇴 신청 조합원 현황

### □ 탈퇴조합원 명단 및 환급출자금

(단위: 원)

이순■	470,000	문대■	100,000	황순■	862,000
이재■	50,000	송정■	100,000	전정■	65,000
오정■	50,000	송영■	150,000	김로■	50,000
전강■	50,000	김효■	50,000	최은■	50,000
최수■	50,000	신영■	100,000	김은■	50,000
손흥■	50,000	정은■	50,000	박경■	50,000
이주■	50,000	김진■	50,000	송경■	50,000
박진■	285,000	김미■	50,000	박내■	50,000
방옥■	50,000	지의■	100,000	김화■	50,000
김명■	110,000	ELM■	90,000	김종■	50,000
이현■	100,000	윤미■	50,000	김라■	50,000
최영■	120,000	김충■	50,000	김옥■	50,000
변지■	50,000	전혜■	50,000	김미■	50,000
김영■	50,000	이승■	50,000	이문■	50,000
김부■	50,000	이경■	50,000	임옥■	50,000
성명■	50,000	이수■	50,000	오은■	50,000
문현■	1,120,000	장계■	50,000	장영■	1,330,000
최진■	50,000	김민■	50,000	김지■	50,000
문혜■	50,000	송지■	50,000	전문■	50,000
이경■	50,000	전준■	55,000	김소■	50,000
김은■	50,000	김경■	1,070,000	박신■	50,000
김순■	50,000	윤광■	50,000	안상■	70,000
신은■	50,000	박해■	50,000	김명■	50,000
조현■	50,000	김은■	50,000	백선■	60,000
안영■	50,000	서환■	50,000	오소■	50,000
서원■	50,000	임우■	80,000	이성■	60,000
김예■	50,000	윤경■	50,000	김영■	50,000
강신■	50,000	양지■	105,000	진선■	50,000
박명■	50,000	복홍■	50,000	노명■	52,000
김종■	50,000	윤태■	50,000	문병■	50,000
배정■	50,000	이수■	50,000	박인■	85,000
박봉■	185,000	신■	50,000	김성■	50,000
박중■	50,000	송소■	75,000	김은■	50,000
박예■	50,000	박병■	150,000	장서■	666,000
강지■	50,000	안민■	50,000	최은■	175,000
윤경■	50,000	유제■	65,000	합계	11,905,000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의 일부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총107세대 11,895,000원 환급 신청

- 탈퇴조합원 세대당 평균 출자금 : 약111,170원
- ※ 2017년도 기준 조합원 1세대 당 평균 출자금 : 359,973원  
(2016년도 기준 조합원 1세대 당 평균 출자금 : 387,05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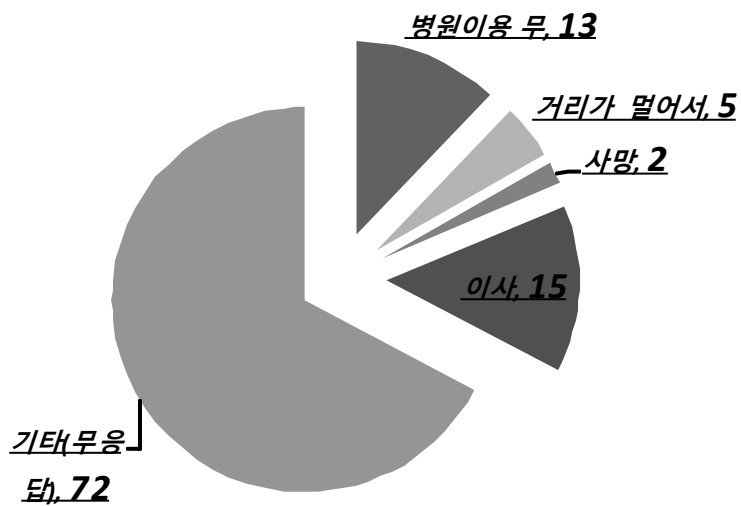
□ 탈퇴 신청 조합원 분석

- 가입 기간 및 탈퇴 사유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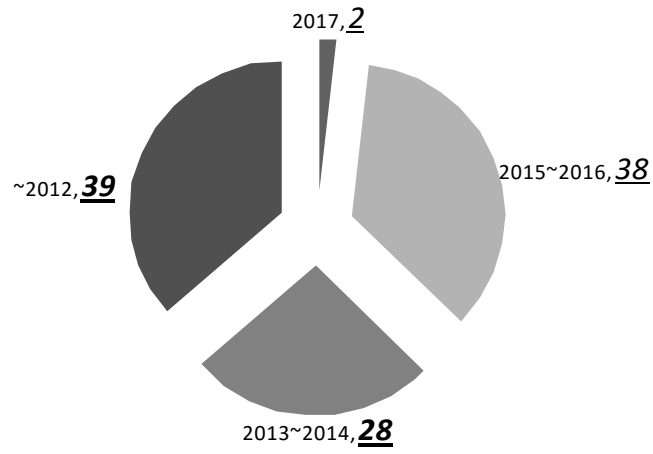
가입기간	총계	이사	의료기관 미이용	사망	무응답/기타 (자금필요 등)
총계	107	15	18	2	72
10년 이상	4	1	1	-	2
10년 미만 5년 이상	35	6	4	-	25
2년 이상 5년 미만	50	6	13	1	30
2년 미만	17	2	-	1	15

□ 탈퇴조합원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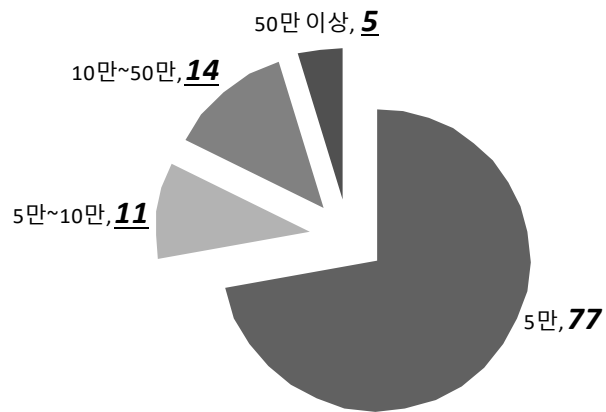
- 탈퇴 사유별 분석



○ 가입 기간별 분석



○ 출자금별 분석





## 제4호 의안 2017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2017년 당기 순이익 20,284,28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금 943,854,013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5호, 제66조, 제68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제6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총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과	목	제15(당기)		제14(전기)	
		금 액		금 액	
<b>I. 미 처 리 결 손 금</b>			<b>917,610,474</b>		<b>943,854,013</b>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943,854,013		489,907,908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7,733,650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1,774,40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손 실	20,284,289		-453,946,105	
<b>II. 결 손 금 처 리 액</b>			<b>0</b>		<b>0</b>
	1. 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2.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0		0	
	3. 이익준비금 이입액	0		0	
	4. 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5. 자본준비금 이입액	0		0	
<b>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b>			<b>917,610,474</b>		<b>943,854,013</b>

[ 계정별 상세내역 ]

- 3. 전기오류수정이익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오류 4,592,000  
프로젝트사업 격차해소리빙랩 사업 인건비 선급지급처리 오류 3,141,650
- 4. 전기오류수정손실 : 오스템임플란트 선급결제 오류 1,774,400원



##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정관 및 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1호, 제34조제1호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 정관 및 규약의 개정사유

-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반영
-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규약의 개정
- 의료법상 관련 조항(의료법 제33조제9항) 신설로 의료기관 소재지 정관 반영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소재지 삭제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⑨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 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 참고

	정관	규약	규정
의결	총회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내용	목적, 명칭, 조직, 운영, 사업,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	정관 이외의 조직,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 규약 이외의 경미한 사항
예시	표준정관(예시)	총회운영, 출자금감소, 배당, 현물출자 등	이사회 운영, 감사, 직원보수, 선거관리 등

## 정관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2조(목적)</b>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u>전문에서 밝힌 네가지 이념에 따라</u>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u>의료의 공공성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목적)</b>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u>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u></p>	<p>•표준정관 필수 기재 사항 반영.</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li> <li>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li> <li>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li> <li><b>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 &lt;삭제&gt;</b></li> <li>5.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li> </ol>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li> <li>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li> <li>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li> <li>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li> </ol>	<p>•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재지 삭제.</p>

<p><b>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b>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li> <li>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li> <li>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li> <li>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li> <li>5. <b>단체조합원</b></li> </ol>	<p><b>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b>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li> <li>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li> <li>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li> <li>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li> <li>5. <b>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b></li> </ol>	<p>•단체조합원 정의 추가.</p>
<p><b>제18조(출자)</b>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b>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lt;삭제&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lt;삭제&gt;</li> <li>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lt;삭제&gt;</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lt;삭제&gt;</li> <li>4.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lt;삭제&gt;</li> <li>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lt;삭제&gt;</li> <li>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lt;삭제&gt;</li> </ol>	<p><b>제18조(출자)</b>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지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p>	<p>•오기수정.</p>



<p>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지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p>		
	<p><b>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b>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p>	<p>•표준정관에 따른 조문삽입.</p>
	<p><b>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b>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표준정관에 따라 조문삽입.</p>

<p><b>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b>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p> <p>1. <u>차량 및 시설 사용료&lt;삭제&gt;</u></p>	<p><b>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b>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p> <p>1. 시설 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약 → 규정</li> <li>•신설조항 추가로 인한 조문번호 수정 (이하 조문 순연).</li> </ul>
<p><b>제66조(법정적립금)</b></p>	<p><b>제25조(법정적립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정관에 정관 제66조를 제25조로 이동.</li> </ul>
<p><b>제67조(임의적립금)</b></p>	<p><b>제26조(임의적립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정관에 정관 제67조를 제26조로 이동.</li> </ul>
<p><b>제28조(대의원총회)</b>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u>단, 변경전 정관의 임기로 선출된 대의원도 변경후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한다.&lt;삭제&gt;</u></p>	<p><b>제28조(대의원총회)</b>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p> <p>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변경으로 인한 경과규정 삭제.</li> </ul>
<p><b>제29조(정기총회)</b>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p><b>제30조(정기총회)</b>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정관에 따라 수정.</li> </ul>
<p><b>제30조(임시총회)</b>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p>	<p><b>제31조(임시총회)</b>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p>	

<p><b>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b>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b>제51조</b>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p>	<p><b>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b>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b>제52조</b>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p>	
<p><b>제33조(총회의 의사)</b> ③ 총회는 <b>제31조</b>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34조(총회의 의사)</b> ③ 총회는 <b>제32조</b>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b> ③ <b>제36조</b>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b> ③ <b>제37조</b>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b>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b>제31조제1항</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b>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b>제32조제1항</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41조(이사회 의결사항)</b> ② 이사회는 <b>제60조</b>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b>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b> ② 이사회는 <b>제61조</b>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b>제42조(이사회 의의)</b>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lt;삭제&gt;</b>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b>제43조(이사회 의의)</b>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보건복지부 감사 및 표준정관에 따라 제2항 삭제.</p>

<p><b>제44조(임원의 정수)</b>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b>9명 이상 20명 이내</b>의 이사와 <b>2명 이상</b>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되 <b>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는 임원선출선거공고 3일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lt;삭제&gt;</b></p> <p>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p>	<p><b>제45조(임원의 정수)</b>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b>3명 이상 20명 이내</b>의 이사와 <b>1명 이상 5명 이내</b>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 표준정관: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0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0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 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p>
<p><b>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b>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b>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p>	<p><b>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b>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b>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b>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b>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b>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p>	<p><b>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b></p> <p>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b>2년으로</b> 하되 위원</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p> <p>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p> <p>⑤ <u>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u>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b>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p> <p>③ <u>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u>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u></p>	<p><b>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b>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p> <p>③ <u>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u></p> <p>④ <u>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b>제65조(운영의 공개)</b> ⑥ <u>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규약, 규정</li> <li>2. 사업결산보고서</li> <li>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li> <li>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56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li> <li>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li> </ol>	<p><b>제58조(운영의 공개)</b> ⑥ <u>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규약, 규정</li> <li>2. 사업결산 보고서</li> <li>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li> <li>4. 사업결과 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li> <li>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li> </ol>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p> <p>•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p>제57조(사업의 종류)</p> <p>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p> <p>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p> <p>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p> <p>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처리되어야 한다.</p>	<p>제61조(사업의 종류)</p> <p>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p> <p>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u>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u>으로 한다.</p> <p>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li> <li>•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li> <li>•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li> <li>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li> <li>3.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li> <li>4.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li> <li>5.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li> </ul>
---	--	---

<p><b>제58조(소액대출)</b>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7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5%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한도 이내로 한다.</p> <p>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소액대출계약시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 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p><b>제62조(소액대출)</b>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u>제61조</u>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u>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u> 이내로 한다.</p> <p>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소액대출계약시에 정한다. 다만, <u>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 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⑧ 소액대출 사업은 <u>제61조</u>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p>•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p> <p>•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15.5월 기준 3.27%)를 고려하여 정한다.</p> <p>•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5%)을 초과할 수 없다.</p>
<p><b>제59조(상호부조)</b>⑧ 상호부조 사업은 <u>제57조</u>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p><b>제63조(상호부조)</b>⑧ 상호부조 사업은 <u>제61조</u>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제64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 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p>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li> <li>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li> <li>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li> <li>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li> <li>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li> <li>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li> </ol> <p>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p>		
<p><b>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b>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3개월 이내</u>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b>제6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b>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2개월 이내</u>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u>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u>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p>	<p><u>제67조(회계)</u>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u>제68조(손실금의 보전)</u>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u>제66조</u>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p>	<p><u>제70조(손실금의 보전)</u>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u>제25조</u>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p>	<p>•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u>부칙 제1조(시행일)</u>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1차 개정)</u>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u>제3조(2차 개정)</u>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u>제4조(3차 개정)</u>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u>제5조(4차 개정)</u>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u>제6조(5차 개정)</u>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p>	<p><u>부칙 제1조(시행일)</u>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규약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u>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u>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u>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u>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의 내용에 맞춰 수정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p><b>제15조(의사록)</b>          ① 총회의사록은 <u>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u>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b>제15조(의사록)</b>          ① 총회의사록은 <u>총회에서 선출한 2인의 서기가 작성하고,</u>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관계조항의 내용에 맞춰 수정</p>
<p>출자좌수감소규약</p>		
<p><b>제1조[목적]</b>          이 규약은 정관 <u>제67조제5항</u>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약은 정관 <u>제21조제5항</u>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p>
<p>단체출자에 관한 규약</p>		
<p><b>제2조[단체의 정의]</b>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u>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등을 말한다.</u></p>	<p><b>제2조[단체의 정의]</b>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u>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u></p>	<p>•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단체의 정의 명확화</p>
<p>과태금에 관한 규약</p>		
<p><b>제1조[목적]</b> 이 규약은 정관 <u>제23조제3항</u>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약은 정관 <u>제24조제3항</u>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p>

## 제6호 의안 **임원선출의 건**

**의결주문:**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해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3호, 제44조, 제45조, 선거관리규정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되 선출하여야할 임원의 정수는 임원선출선거공고 3일 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원표
선거관리위원	박영기
선거관리위원	최순예
선거관리위원(간사)	남은순

### 2. 경과

2018.01.29.(월)	1월 정기이사회(확대총준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결의, 임원정수 확정
2018.01.31.(수)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위원장, 간사 선출) -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안)확정, 후보자 등록일정 확정
2018.02.02.(금)	임원선거 공고, 임원후보자 등록
2018.02.09.(금)	후보자 등록 마감
2018.02.13.(화)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 후보등록서류 보완(~19일) - 투표시스템 점검
2018.02.19.(월)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 - 후보자자격심사 확정 - 후보자 기호결정 - 공보(안) 확정
2018.02.20.(화)	선거공보
2018.02.23.(금)	선거운동기간
2018.02.24.(토)	선거일. 통합 19차 정기총회

### 3. 입후보 현황

구분	임원정수	등록	비고
이사	15명	15명	
감사	2명	2명	사업감사, 회계감사
<b>계</b>	<b>17명</b>	<b>17명</b>	

## 4. 임원 선출 선거 입후보자 소개

### ■ 이사후보


####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2018.02.20.</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번</p> <p>◆ 성명 : 권경미 (1968년생)</p> <p>◆ 직업 : 협동조합 임원</p>		
<p>대한불교대각종 도원경사 주지 사회적협동조합 도원참사랑나눔 이사장 도원참사랑나눔 봉사회 회장</p> <p>조합원 가입(2018.2.9)</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2018.02.20.</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2번</p> <p>◆ 성명 : 김성훈 (1972년생)</p> <p>◆ 직업 : 협동조합 임원</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지역품앗이 한발레즈 감사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p> <p>조합원 가입(2001.10.25)</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2018.02.20.</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3번</p> <p>◆ 성명 : 김지훈 (1977년생)</p> <p>◆ 직업 : 교육업</p>		
<p>대동간호학원원장 민들레 노인요양시설 추진TFteam 자문 前 사회복지법인 열림재단 회계과장</p> <p>이사회 추천</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2018.02.20.</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4번</p> <p>◆ 성명 : 김진호 (1968년생)</p> <p>◆ 직업 : 출판업</p>		
<p>모두의 책 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이사</p> <p>조합원 가입(2018.1.16.)</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5번</p> <p>◆ 성명 : 김찬욱 (1972년생)</p> <p>◆ 직업 : 마을공동체 활동가</p>		
<p>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상근 두루지기 마을기업 (주)좋은이웃 이사</p> <p>조합원 가입(2012.6.27.)</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6번</p> <p>◆ 성명 : 나준식 (1967년생)</p> <p>◆ 직업 : 의사(내과 전문의)</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원장</p> <p>조합원 가입(2001.10.15.)</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7번</p> <p>◆ 성명 : 민혜란 (1980년생)</p> <p>◆ 직업 : 사회복지사</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사무국장</p> <p>조합원 가입(2006.4.27.)</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8번</p> <p>◆ 성명 : 박봉희 (1960년생)</p> <p>◆ 직업 : 사회복지사</p>		
<p>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설 교육연구센터 소장 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상담센터장</p> <p>조합원 가입(2015.9.4.)</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 2018.02.20.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		
◆ 기호 : 9번 ◆ 성명 : 붕미경 (1965년생) ◆ 직업 : 영어 강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대건대 인문영재 교육원 전임강사 시민대학 전임강사  조합원 가입(2011.12.9.)  ※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 2018.02.20.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		
◆ 기호 : 10번 ◆ 성명 : 송직근 (1978년생) ◆ 직업 : 협동조합 활동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 前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前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운영위원  조합원 가입(2010.7.15.)  ※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 2018.02.20.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		
◆ 기호 : 11번 ◆ 성명 : 신택연 (1991년생) ◆ 직업 : 협동조합 임원 / 진로탐험가		
peto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JP모건 청년 사회혁신가 인큐베이팅 선정 STRONG™직업상담 외 3개의 전문교육 수료  조합원 가입(2018.2.9.)  ※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선거 공보

	<h3>임원선거공보</h3>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 2018.02.20.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		
◆ 기호 : 12번 ◆ 성명 : 양봉석 (1960년생) ◆ 직업 : 협동조합 임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 이사장  조합원 가입(2016.1.14.)  ※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3번</p> <p>◆ 성명 : 유승민 (1969년생)</p> <p>◆ 직업 :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사) 풀뿌리사람들 이사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p> <p>조합원 가입(2015.10.26.)</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4번</p> <p>◆ 성명 : 장기홍 (1955년생)</p> <p>◆ 직업 : 前 교육공무원</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조직교육위원장 前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연수부장</p> <p>조합원 가입(2010.4.29.)</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 style="text-align: center;"><b>임원선거공보</b></p> <p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2.20.</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이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5번</p> <p>◆ 성명 : 정운재 (1958년생)</p> <p>◆ 직업 : (주)그린플러스 대표이사</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경영위원장 前 특허청 부이사관</p> <p>조합원 가입(2015.8.3.)</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 감사후보

임원 선거 공보

	<p><b>임원선거공보</b></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2018.02.20.</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감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1번</p> <p>◆ 성명 : 배 남 익 (1971년생)</p> <p>◆ 직업 : 공인회계사</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계감사 공주의료원 사외이사</p> <p>조합원 가입(2008.2.20)</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임원 선거 공보

	<p><b>임원선거공보</b></p> <p>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p>	<p>이 공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발행함</p> <p>2018.02.20.</p> <p>선거관리위원장</p>
<p>선거관리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감사 입후보자로 확정되었기에 공고함</p>		
<p>◆ 기호 : 2번</p> <p>◆ 성명 : 조 세 종 (1965년생)</p> <p>◆ 직업 : 협동조합 활동가</p>		
<p>前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업감사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부설 SBM연구소 소장</p> <p>조합원 가입(2002.1.17)</p> <p>※ 학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p>		



## 제7호 의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주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4호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2018년 사업계획

- 2018년 사업기조
- 5대 핵심지표 달성목표
- 사업단위별 계획

# 2018년 사업기조

## □ 사업기조

1.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통합시스템 대덕구모델의 단계적 구축
2. 건강리더 육성과 건강반 조직활성화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
3.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통합시스템 대덕구모델 확산 거점지역 초동주체 구성
4. 조직혁신 과정의 조합원 참여와 소통,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연대강화

## □ 예산기조

흑자 기조를 만든 2017년도 경영성과를 토대로 연속적 흑자구조를 이어가는 해

2018년 자본예산은 출자금 167,250,000원 과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 192,000,000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차입금 상환, 시설 및 장비교체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지예산 수입부는 2017년 결산 총 매출액 2,625,435,788 대비 2,575,400,000원으로 소폭 하향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매출분에 폐업된 둔산한의원 및 스포츠 의학센터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계 후 2018년도 의료기관 매출은 4% 상향 편성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립 하였다.

수지예산 지출부는 경비절감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 결산 2,287,256,426원 대비 2,293,433,287원으로 약 600만원 소폭 상향 반영하였다.

수지예산 당기 손익은 23,476,713원의 당기 순이익을 목표로 편성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센터 매출 목표를 4% 상향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600만원 상향 편성하였다.



# 5대 핵심지표 달성목표

## ■ 조합원

2017년 말 기준	목표	산출근거
3,610세대 신규: 170세대(56.6%) 탈퇴요청: 107세대	825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차의료센터 200명</li> <li>•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00명</li> <li>• 경영지원실 25명</li> <li>• 이사회 300명</li> </ul>

## ■ 출자금

2017년 말 기준	목표	산출근거
총액: 1,299,503,241원 증감: -73,392,350원(-73.3%)	증감계 167,2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조합원 41,250,000원</li> <li>• 조합원증자운동 126,000,000원</li> <li>※ 생활증자, 증자운동, 사업소 이용증자</li> </ul>

## ■ 건강리더

2017년 말 기준	목표	산출근거
110명 시니어2기(35명) 일반4기(41명) 청소년2기(27명) 건강조직가(7명)	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리더 3기: 10*3=30명</li> <li>• 청소년 2기: 10*2=20명</li> <li>• 건강리더 CBPR과정: 10명</li> <li>• 시니어 1기: 10명</li> </ul>

## ■ 건강모듬

2017년 말 기준	목표	산출근거
6개 달민이, 산악회, 역사와 놀자, 옥상텃밭, 브롬달, 기체조	10개 (이사회 승인 건강모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승인(5개): 유지관리(옥상텃밭 제외)</li> <li>• 예비(3개): 자발적인 운영지원, 승인지원</li> <li>• 신규(2개): 건강리더를 중심으로 신규발굴</li> </ul>

## ■ 스스로 조합비

2017년 말 기준	목표	산출근거
195세대(65%) 22,550,000원(75%)	300세대 3,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195세대*12=2,340만원</li> <li>• 신규(매월10세대)*12=1,200만원</li> <li>※ 신규산출근거: 일차의료센터(5)+기타(5)</li> </ul>



## 사업단위별 계획

- 일차의료센터
- 민들레경영지원실
-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스마트주치의팀

기관명	민들레의원, 가정간호센터					
기초	1. 직원과 화목하고 소통하는 해 2. 어르신들 복용약 한 알 줄이는 해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지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비보험 진료확대	심장초음파(나원장님), 갑상선경동맥(박원장님)	심장초음파(년100건) 갑상선, 경동맥(년50건)	건수
		비용감소	시간외절감. 일회용품줄이기	6시 퇴근. 종이컵 등 소모품 절약		예산 대비 절감율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가입유도	모니터활용(조합설명 등)	50명(스스로조합원10명)	대상자 수
		조합활동참여	교육참여. 참센과연계활동 주치의활동	스마트주치의(당뇨플러스 친구), 어린이주치의방법모 색(협약어린이집중심)	조직 개편시 별도 수립	이행 실적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5월 부터 장애인주치의참여	내원 또는 방문		이행 실적
혁신	시설개선		대기실난방 의자배치	대기실 에어커튼 설치 의자교체 및 재배치	쾌적한 환경과 대기공간	이행 실적
	장비개선		소아, 노인치료개선	네블라이저, 비내시경구매	소아환자 신뢰 및 만족도 향상	이행 실적
	서비스개선		영유아 예방접종	원장 직접 주사	소아환자 신뢰 및 만족도 향상	건수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주사 및 검사시 안내	전화 또는 문자안내	지속적관리	건수
	학습과 성장		응급 대처 방법 진료서비스와관련	직원 회의 시	월1회 교육	실시 횟수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직원간 소통과 화목	워크숍계획		실시 횟수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약한알줄이기	환자의 상태를고려하며 약줄여가기	적정진료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유통기한	매달 재고 정리	매달재고정리로 확인가능	100% 준수	이행 실적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발생	설명하고 잘 받고잇는 중	100% 준수	이행 실적
	의료행위	주사관리	마약,인슐린잔여량 관리	잔여처리 문제	잔여처리 문제 해결	이행 실적
	의료기관 관리	감염관리	사회적 사안발생 시 원칙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안내	문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소아환자 신뢰 및 만족도 향상	실시 횟수

기관명	민들레 검진센터					
기조	검진 먼저입니다...우리 함께 검진 받으러 가즈아~~~~~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지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공단검진(5대암)의 중요성 홍보와 종합검진은 민들레에서~~~~	-유방초음파 진행 -현수막설치 와 전화 작업 진행 -직원가족, 지인들에게 서비스 검사 진행	-3월부터 오후에 예약진행 -추가 서비스검사로 공단검진인원증가	이행 실적
		비용감소	-자제 직원 전화 홍보를 통한 인건비 감소 -시간외수당 감소 -일회용품품줄이기	-직원 각자 담당분량 할당 -대체 휴가 사용 -장갑1개 사용, 수건사용	-매주 평가하기 -매월 사용 -년중	이행 실적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내원 검진자와 아는 조합원에게 적극적 안내	-접수시 조합원 유무 확인 -비용계산시 스스로조합원 확인	조합원: 60명 스조합원: 30명	대상자 수
		조합활동참여	조합교육, 활동,회의에 참여	-업무로딩이 덜한 오후시간 참여가능	년중	참여자 수 및 횟수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사회적기업,시민단체, 협동조합 연계	-필요시 오후 일정에 참여가능 시도	상반기기검진으로 안내	연계 실적
	혁신	시설개선		-대기공간 과 문진표공간협소 -검진복도와 진료공간에 음식 냄새 차단	-의자추가로 공간 재배치 -주방공간청결과 후드배치 조정	상쾌한 검진
장비개선		-장비 교체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신뢰도 향상	-내시경스코프 추가 구비 -원심분리기 교체 -서버PC 교체	최대한 사용 후 3년 이내로 교체	이행 실적	

	서비스개선		-검진후 사후관리 체계완성 -문진시 꼼꼼한 설명으로 기록	1:1 상담과안내, 문진표 작성	검진결과 입력시 완벽입력	이행 실적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조합교육(신입), 소모임 권장	조합교육,소모임 권장과 참여로 조합안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중요성 인식 기대	이행 실적
	학습과 성장		-질환별교육(사후관리대상) -분야 별 교육 후 소통기회 -직원소통과 단합	-원장님과 월 1회 진행 -담당자가 점심시간이용해서 전달 -2달에 한번씩 회식진행으로 친목도모	-교육시 진행 -연6회 진행	이행 실적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사회적기업,시민단체,단체출자 기관,협동조합 연계	방문,전화,공문,우편 등으로 연락		이행 실적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알권리, 선택할 권리 안내	모든검사 진행시 마다 환자랑 대화하기	검사 누락 감소	
위험	법적측면(의료법)		본인부담금 받기 오후에도 원심분리기 돌리기	퇴근 전에 확인하기	년중	이행 실적
	의료기관 관리	감염관리	조직검사기구는 일회용사용	일회용비용 안내로 진행		이행 실적
		폐기물관리	사용한 수액병 처리	보이지 않게 가림막 설치 또는 케이스 설치와 뚜껑 만들기		

기관명	한의원					
기초	1. 체질 맞춤 진료 표방 2. 한의사랑방 활성화 통한 열린 공간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지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비보험 영역의 다각화	성장환, 면역환 홍보	비보험 비중 20%	이행 실적
		비용감소	비생산적 근무시간 축소	조기 퇴근	2월 부터 시행	이행 실적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소모임 가입권장	인센티브제공	전직원 참여	대상자 수
			조합원 가입	상담시 권유	30명	
		스스로조합비 가입	상담시 권유	12명		
조합 활동 참여	조합연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유도	인센티브제공		이행 실적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방문진료를 통한 지역 의료안정망 구축	건강증진센터와의 연계		이행 실적		
혁신	시설개선		대기실 환경 개선	친환경 라디에이터 난방	현재 운용중	이행 실적
	장비개선		진료 만족도 향상	경추자극기 도입(완료)	현재 운용중	이행 실적
	서비스개선		환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강화	항시적인 내부 교육		이행 실적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한의사랑방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	30-50대 가입률 제고	이행 실적
	학습과 성장		조합내 직원교육 참여		전직원 동참	참여자 수 및 횟수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지역밀착형 의료사협의 특성을 부각.	한의사랑방에 치료후기를 사진과 함께 업로드	홍보 및 조합원 결속의 재료로 활용	한의사랑방 접속수
	환자권리강전(적정진료)		환자진료시간 적정확보	충분한 상담 진행	환자 주관적 만족도 제고	이행 실적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한약재유통기한	약재관리대장에 기입	매달 재고정리시 확인,처리		이행 실적
	의료행위	의료사고	침 시술후 부작용	한 의사 배상 보험 가입		이행 실적
	의료기관 관리	소방안전관리	소화기점검,화재대피훈련	소화기교체필요		이행 실적

기관명	대덕 치과					
기초	우리가족 치과주치의(아이부터 어른까지 치아건강은 민들레 치과와 함께!)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지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소아진료 활성화, 기본진료 줄이기 보험틀니, 임플란트 늘리 기	-실런트,레진,부분치석제 거등 소아진료 확대 -자부담 줄어듬 홍보하여 적극 상담	기본진료청구 줄이기 레진,실란트 건수 늘리기	이행 실적
		비용감소	의료소모품 줄이기	골드인레이, 골드크라운 ⇒지르코니아로 유도		이행 실적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 확충 (비보험진료 환자에게 조 합원 적극 권유)	조합원 권유  스스로조합비 회원 권유	30  15	가입자 수  가입자 수
		조합 활동 참여	조합관련 행사 참여		전직원 참여	참여자 수 및 참여 횟수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취약계층 의료지원	타단체(동사무소,복지관), 참선과 연계		이행 실적
혁신	시설개선		환경 개선	-차트장 확장, -어두운 대기실 및 진료 실 형광등 교체, -노후된 화장실 보수	상반기 개선	이행 실적
	장비개선		업무 효율 증대	-노후 x-ray교체 -데스크 듀얼모니터	1/4분기 개선	이행 실적
	서비스개선		친절한 응대	서로간에 모니터링	친근하고 상냥한 이미지 만 들기	이행 실적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리콜, 해피콜 ,	-해피콜 다양하게	정기검진 통해 지속적인 치	이행 실적

			다양한 소모임 활성화	-정기검진 리콜 -지속가능한 소모임 만들기	과내원과 치아 관리	
	학습과 성장		보수교육 및 세미나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및 직무관련 세미나 참석	직무능력 향상	참석 횟수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둔산치과와의 교류	분기별 또는 기간을 정해서 미팅	같은 치과로서 소통과 상호팁또는 어려운점 공유로 함께 성장	개최 횟수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환자별 상황에 맞는 진료	원하는 범위내에서 성심껏 치료	과잉진료 하지 않는 양심치과	
위험	법적측면(의료법)	진찰료	기본진료비 받기			이행 실적
		처방	항생제 처방 줄이기	처방전 발행만 원하는 환자 많음⇒진찰 유도		권유 횟수
	의료행위					
	의료기관 관리	감염관리	철저한 멸균 및 위생관리	기구 멸균 철저함 강조		
폐기물관리		발치한치아+골드 반출 자체	크라운(골드)된 채로 발치한 경우 환자분 요구에 의해 드리고 있으나 명백히 반출 안됨 설명			수시 점검, 이행 실적

기관명	둔산 치과						
기조	소중한 치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한 치과!!!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지표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적극적 예방치료 의식의 전환	비보험 실런트 권장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설명판 매		이행 실적	
		비용감소	전기 및 수도요금 절감 소모품 절감			이행 실적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상담시 설명	30명 목표	가입자 수
			스스로조합비 가입		상담시 설명	15명 목표	
		조합활동참여	조합 교육 및 행사 적극 참석			전직원 동참	이행 실적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구강예방교육		조합 조직 활동과 연계	조합외부활동참여 어린이집체험활동[원 내방문교육]	이행 실적
혁신	시설개선		기계실 보수를 통한 쾌적한 진료실 구축	기계실 보수	상반기 시행	이행 실적	
	장비개선		정비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진료실 컴퓨터 교체 데스크모니터 교체	상반기 시행	이행 실적	
	서비스개선		편안한 병원방문을 위해 노력	친절응대[스마일]	밝은 미소로 응대	이행 실적	

	이용자(조합원, 지역주민) 관리		다음 내원일 알려주기	리콜문자전송		횡수
	학습과 성장		직원의 최신 지식 습득	교육을 통한 직무 업그레이드	새로 바뀐 보험청구 치과소식지 구독[매달]	횡수
	소통(협동조합 운영, 내/외부)		조합활동을 통한 구강예방 관리교육	적극참여		참여자수 및 참여 횡수
	환자권리장전(적정진료)		환자의 궁금증 적극 해소	친절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 소		이행 실적
위험	법적측면 (의료법)	유통기한 엄수	각종 약재류	매달 재고정리 시 확인		이행 실적
	의료행위	의료사고	사전 설명 고지 동의서작성	치과의사 배상보험 가입		이행 실적
	의료기관 관리	감염관리	기구의 철저한 멸균 소독	수시 실시		수시 점검, 이행 실적
		폐기물관리	철저한 관리	수시 실시		수시 점검, 이행 실적

<b>기관명</b>	경영지원실				
<b>기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li> <li>○ 최적 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의 효율화</li> <li>○ 최상의 경영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li> </ul>				
	<b>항목</b>	<b>내용</b>	<b>방법</b>	<b>목표</b>	<b>지표</b>
<b>성과</b>	보조금 및 지원사업을 통한 조합 운영 자원 마련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보조 사업 신청	발생시	1,000만원 이상	수주 금액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팀별 예산 집행 실적 점검</li> <li>○ 지출의 최소화</li> <li>○ 적절한 대환대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평가 회의 개최</li> <li>○ 회의시 예산 집행 실적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10회 개최</li> <li>○ 예산 대비 5% 절감</li> </ul>	회의 개최 횟수 절감 실적
<b>혁신</b>	포스 운영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분석을 위한 전산화</li> <li>○ 출자금 카드 수납으로 증자 방법 개선</li> <li>○ 의료기관 수납 편의성 제공</li> </ul>	1,2월 시범 운용을 토대로, 3월 부터 운용 정착	활용 매뉴얼 작성	이행 실적
	인사·노무 관리	기준(규정)에 의한 인사 노무 관리	제규정 제·개정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제정</li> <li>○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li> </ul>	이행 실적
	행정·회계 시스템 정비	제규정 정비	제규정 제·개정후 활용	회계규정, 전결규정, 기부금운영 규정, 차입금 운영 규정 등 제정	이행 실적

	<p>신청서 및 증서 부분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가입서,</li> <li>- 조합비 가입서,</li> <li>- 현금출자 증서</li> </ul>	<p>신청자에게 부분 발행으로 신뢰도 향상</p>	<p>NCR지 이용 인쇄</p>	<p>1/4분기 시행</p>	<p>이행 실적</p>
위험	<p>출자금, 차입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경영의 현금유동성 확보</li> <li>○ 조합원 및 출자금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안별 현황표 작성</li> <li>○ 추계표 작성</li> </ul>	<p>운영 유지</p>	<p>이행 실적</p>
	<p>조합 운영의 적법성 확보</p>	<p>법규 및 제규정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기본법 준수</li> <li>- 정관 및 규정 이행</li> <li>- 감사관련 준수 및 이행</li> </ul>	<p>법규 및 제규정 준수에 의한 업무 처리</p>	<p>미지적</p>	<p>이행 실적</p>

<b>기관명</b>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b>기초</b>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시스템,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모델링				
	<b>항목</b>	<b>내용</b>	<b>방법</b>	<b>목표</b>	<b>지표</b>
<b>성과</b>	프로젝트 수주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모델링 연계 사업 수주	각종 기획사업 정보수집 및 응모	1개 이상 사업 수주	수주여부
	HR시스템 개발: 건강리더, 케어매니저	역량개발 시스템 구축	HR 컨설팅 용역	케어매니저, 건강리더 교육·훈련 교육 과정 개발	개발여부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시스템개발	연구, 조사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V.1 개발	개발여부
	공급자(기관) 네트워크 구축	대덕노인건강통합지원협의회 구성	지역단체 및 공급업체 조직 및 연대	온·오프라인 CM체계 V.1 개발	개발여부
	MHC조직	소생활권건강공동체 조직	문제와 욕구별 건강자조 모임 조직 및 운영	MHC 5개 조직 및 운영	MHC 수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거점 확산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거점 확산 준비	유성구 지역 초동논의 조합원 그룹 조직	유성구 1개 지역	조직 여부
	신규조합원 조직	조합원 가입 조직	조직활동, 연대활동	신규 300명 (스스로조합비 50명)	가입자 수



혁신	한국형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시스템,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구축	공급자네트워크-통합사례 관리-소생활권건강공동체 시스템 개발 구축	추진단 구성, 프로젝트 수행	주민참여건강증진플랫폼 V.1 개발	개발여부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보조금사업 모델링	주민참여형건강증진플랫폼 사업 제안	대덕구청 담당부서 연계, 사업 제안	대덕구청장 공약 반영	반영여부
	민들레형 장애인주치의사업 모델 개발 대전장애인건강권네트워크 활성화	대전장애인건강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장애인통합건강관리 모델 구상	시범사업 참여 및 연구	등록 장애인 확보 및 사업 실시	등록 장애인 수 및 실시여부
위험	재원확보	공동모금회 지원 종료 후 플랫폼 운영 대안 모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모델 제시, 보조금 사업 수주	프로젝트 수주	수주여부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충돌	기득권 조직들과의 이해관계 대립 및 충돌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이해관계 조정	이해관계자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구축	구축여부

기관명	스마트주치의팀					
기초	육아에 온 마을이 필요하듯, 건강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항목		내용	방법	목표	지표
혁신 & 성과	재무적 성과	매출증대	- 스스로조합원 확대	- 가입서에 QR코드입력으로 가입시 플러스 친구 가입완료편의 제공 - 조합안내, 가입을 태블릿 활용방안 검토 - 스스로조합원 가입 이벤트 진행 - 정기적인 쿠폰발행	스마트주치의 플러스친구 300명	플러스 친구 수
		비용감소	- 문자발송비 절감	- 카카오톡 활용.		
	사회적 성과	조합원 조직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가입을 증대	- 기존 스스로조합원 플러스친구 미 가입자에게 전화 홍보(추천인이 직접 권유) - 이야기 형식의 조합비 운영 보고로 관심 도모 - 이슈화 되는 건강정보에서의 원장님들의 의견 게시		
		조합활동 참여	- 스스로조합원 오프라인 모임 진행	- 비정기적 관심주제로 모임진행. - 참선 오프라인 교육 시 참여 독려.		
	지역사회연대 (보건예방활동)	- 공동체의 의식 강화	- 플러스친구에 참여센터 활동 보고로 지역 사회 관심 독려.			

# 2018년 운영계획

- 2018년 예산총칙(안)
- 2018년 총예산흐름도
- 2018년 자본예산(안)
- 2018년 수지예산(안)

□2018년 예산총칙(안)

<제1조> 본 예산의 회계년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18 회계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관	항	목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수입	사업수익	대덕	의원, 검진, 가정간호	1,148,549,123	1,270,413,714	1,320,800,000
			한의원	312,593,790	305,906,480	312,000,000
			치과	467,071,386	481,840,970	499,200,000
			스포츠의학센터	3,538,500	5,519,146	
		둔산	한의원	214,248,610	64,235,550	
			치과	369,892,690	411,655,363	436,800,000
		주민참여 건강증진 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61,212,490	78,264,565	
			모금회 노인건강돌봄사업	0	0	
			격차해소 리빙랩사업	15,736,380	0	
			경영지원실	84,034,583	7,600,000	6,600,000
	사업외 수익	이자수익	2,189,329	2,161,233	2,000,000	
		정부지원 및 보조금	24,000,000	11,360,000	81,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0	499,000		
		잡이익	378,036	18,185,325	720,000	
<b>수입합계</b>			<b>2,703,444,917</b>	<b>2,657,641,346</b>	<b>2,659,320,000</b>	
지출	사업비	교육, 회의, 연대, 조직, 홍보, 보건예방활동	173,985,947	172,014,061	169,060,000	
	관리비	매출원가	358,521,794	293,696,120	292,000,000	
		인건비(급여, 지급, 퇴직연금)	1,713,971,683	1,487,745,100	1,563,716,667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204,772,855	197,214,676	220,380,000	
		기금사업비	144,348,157	8,598,266	16,440,000	
		기타 판관비	444,890,010	421,684,323	323,836,620	
	기타	법인세와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	116,048,051	56,404,511	50,410,000	
<b>지출합계</b>			<b>3,156,538,497</b>	<b>2,637,357,057</b>	<b>2,635,843,287</b>	
<b>수지합계(수입합계-지출합계)</b>			<b>-453,093,580</b>	<b>20,284,289</b>	<b>23,476,713</b>	

□ 스스로조합비 회계처리 기준 조정 안내

구분		2016	2017	2018
회 계 처 리	수 입	손익계산서에 수입으로 처리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처리 (‘기금사업비(차감)’ 계정)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처리 (‘기금사업비(차감)’ 계정)
	지 출	취약계층지원내역 있으나 회계반영 미처리 2018년도 처리예정	취약계층지원내역 있으나 회계반영 미처리 2018년도 처리예정	취약계층에 진료비 지원 시 ‘(가칭)기부금충당금’계정 신설하고 차감계정으로 처리예정
변경이유		회계감사 시 스스로조합비 연차별 증가에 따라 별도 관리 필요성 대두. (2017년 연2,255만원)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수입금 계정에 타 수입과 함께 기록되어 한눈에 드러나지 않음. - 스스로조합비 입금 시 자산으로 처리 하고, 지출 시에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칭)기 부금충당금’ 계정으로 비용처리 후 ‘(가칭)기부금충당금차감’ 으로 비용을 마이너스로 처리.		

<제3조> 수입 및 지출명세는 다음의 수지예산(안)과 같다.

<제4조>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목간이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조> 예산의 항간이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업량의 증가·세울변경·급격한 물가변동·특별사업의 실시·조직체계 및 기구의 변경·기타 대  
내외 지원금 등으로 인한 예산은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활동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한다.

<제9조> 2018 회계년도 차입금 최고한도는 현재의 차입금(1,395,864,555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한다.

□ 2018년 총예산 흐름도

**자본조성**

출자금	167,250,000
차입금	192,000,000
기 조성금	1,031,277,056
<b>합 계</b>	<b>1,390,527,056</b>



**자본운용**

의료기기	93,300,000
시설장치	43,000,000
차입금 상환	200,000,000
운용 예비비	1,054,227,056
<b>합계</b>	<b>1,390,527,056</b>

**수 입**

사업수입	2,575,400,000
사업외 수입	83,920,000
<b>합 계</b>	<b>2,659,320,000</b>



**지 출**

사업비	169,060,000
관리비	2,416,373,287
사업외 비용	50,410,000
당기순이익	23,476,713
<b>합 계</b>	<b>2,659,320,000</b>

□ 2018년 자본예산(안)

1. 자본조성계획

분 류	항 목		예상금액(원)
출자금	신입조합원	의센(200명)	10,000,000
		참센(300명)	15,000,000
		경지실(25명)	1,250,000
		이사회(300명)	15,000,000
		<b>소계</b>	<b>41,250,000</b>
	조합원증자운동	CMS 증자	30,000,000
		자동이체 증자	18,000,000
		현금 증자	2,000,000
		직원 추가 증자	26,000,000
		조합원 추가 증자	50,000,000
	<b>소계</b>	<b>126,000,000</b>	
<b>출자금 소계</b>		<b>167,250,000</b>	
차입금	기독교청년의료인회		50,000,000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50,000,000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		92,000,000
	<b>차입금 소계</b>		<b>192,000,000</b>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1,031,277,056
<b>합 계</b>			<b>1,390,527,056</b>

2. 운용 계획

구 분	품 명	예상금액(원)
의료기기	의원/검진 초음파 2대 교체	52,000,000
	검진 내시경 스코프 구입	20,000,000
	검진 혈액 원심분리기 교체	500,000
	의원 텔레스코프 신규 구매	3,500,000
	의원 검진 서버 PC 교체	10,000,000
	대덕치과 X-Ray 교체	3,300,000
	대덕, 둔산 의료용PC 및 의료용 비품 교체	4,000,000
	<b>의료기기 소계</b>	<b>93,300,000</b>
시설장치	의자식 계단 리프트 설치	10,000,000
	지하 식당 4층 이전	3,000,000
	Pos 장비 S/W	16,000,000
	복지부 감사 지적 간판 개선(치과, 한의원 등)	6,000,000
	의원 대기실 환경 개선	3,000,000
	기타 시설 장치	5,000,000
	<b>시설장치 소계</b>	<b>43,000,000</b>
차입금 상환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금 일부 상환	200,000,000
사업준비금	운용예비비	1,054,227,056
<b>합 계</b>		<b>1,390,527,056</b>

□부서별 결산대비 예산(안)

계정 과목	민들레 통합		의료사업소					
	통합결산	통합예산	의원,검진 가정간호 결산	의원,검진 가정간호 예산	대덕한의원 결산	대덕한의원 예산	대덕치과 결산	대덕치과 예산
I . 매 출 액	2,555,681,092	2,575,400,000	1,270,413,714	1,320,800,000	305,906,480	312,000,000	481,840,970	499,200,000
II . 매 출 원 가	282,037,554	292,000,000	95,122,973	97,000,000	38,066,311	40,000,000	90,190,610	95,000,000
III.매 출 총 이 익	2,273,643,538	2,283,400,000	1,175,290,741	1,223,800,000	267,840,169	272,000,000	391,650,360	404,200,000
IV.판매비와관리비	2,209,334,798	2,293,433,287	854,338,335	926,646,667	263,852,280	251,788,667	328,989,640	335,927,287
임 직 원 급 여	1,319,431,739	1,439,000,000	564,992,370	626,000,000	163,147,900	155,000,000	231,134,200	239,000,000
갑	6,081,270	4,800,000	5,424,000	4,800,000				
퇴 직 급 여	116,779,068	119,916,667	42,362,680	52,166,666.67	12,945,420	12,916,667	18,705,640	19,916,667
복 리 후 생 비	96,319,073	112,360,000	38,083,489	42,000,000	15,859,032	17,000,000	12,470,742	13,000,000
여 비 교 통 비	7,280,453	5,100,000	1,027,883	1,500,000	23,700			
통 신 비	13,834,470	14,200,000	3,182,484	3,200,000	2,307,195	2,400,000	1,385,494	1,400,000
수 도 광 열 비	5,560,321	5,900,000	1,878,019	2,000,000	617,511	700,000	194,314	200,000
전 력 비	25,120,009	26,600,000	8,134,228	8,300,000	3,790,126	4,000,000	3,887,361	4,100,000
세 금 과 공 과 금	45,482,840	50,100,000	16,781,270	19,000,000	5,376,470	5,500,000	7,522,900	8,000,000
감 가 상 각 비	106,591,969	68,160,000	32,535,371	44,240,000	6,848,059	3,600,000	7,248,446	3,300,000
지 급 임 차 료	84,060,000	84,060,000			20,196,000	20,196,000	8,400,000	8,400,000
수 선 비	4,462,800	4,500,000	458,300	800,000	721,500	400,000	374,500	400,000
보 험 료	24,074,748	26,640,000	9,768,351	11,000,000	3,193,366	3,200,000	4,491,432	4,500,000
차 량 유 지 비	421,000							
교 육 훈 련 비	5,213,700	4,820,000	1,376,900	1,500,000	463,700	360,000	480,000	480,000
도 서 인 쇄 비	1,275,350	2,616,000	224,800	250,000	251,800	316,000	538,200	550,000
회 의 비	6,657,050	6,600,000	97,260	900,000	71,180	300,000	33,180	300,000
소 모 품 비	20,370,286	19,200,000	7,043,810	7,000,000	3,351,820	3,500,000	1,648,920	1,700,000
지 급 수 수 료	125,946,226	112,000,000	63,672,980	65,000,000	5,586,831	6,000,000	10,006,250	14,000,000
건 물 관 리 비	3,710,345	4,280,000					480,000	480,000
협 회 비	424,000	400,000						



계정 과목	민들레 통합		의료사업소					
	통합결산	통합예산	의원,검진 가정간호 결산	의원,검진 가정간호 예산	대덕한의원 결산	대덕한의원 예산	대덕치과 결산	대덕치과 예산
무형고정자산상각	3,917,034	4,840,620	1,540,000	1,540,000			123,200	100,620
연 대 활 동 비	27,025,710	29,000,000						
조 직 활 동 비	1,789,060	13,000,000						
기 금 사 업 비	6,135,876	16,440,000						
홍 보 활 동 비	7,822,330	10,200,000		250,000	20,000			
인 적 용 역 비	28,724,920	14,700,000	50,000	200,000	4,832,820	1,400,000	50,000	100,00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119,163,151	89,000,000	55,704,140	35,000,000	14,247,850	15,000,000	19,814,861	16,000,000
(가칭)기부금충당금		30,000,000		20,000,000				5,000,000
(가칭)기부금충당금 차		-30,000,000		-20,000,000				-5,000,000
예 비 비		5,000,000						
<b>V . 영 업 이 익</b>	<b>64,308,740</b>	<b>-10,033,287</b>	<b>320,952,406</b>	<b>297,153,333</b>	<b>3,987,889</b>	<b>20,211,333</b>	<b>62,660,720</b>	<b>68,272,713</b>
<b>VI.영 업 외 수 익</b>	<b>31,469,176</b>	<b>83,920,000</b>	<b>938,351</b>		<b>732,388</b>		<b>4,339</b>	
이 자 수 익	2,124,054	2,000,000	3,347		3,488		4,339	
정부지원및보조금	11,360,000	81,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99,000							
잡 이 익	17,486,122	720,000	935,004		728,900			
<b>VII.영 업 외 비 용</b>	<b>51,402,640</b>	<b>50,410,000</b>			<b>10,000</b>		<b>10,000</b>	
이 자 비 용	49,828,919	50,000,000						
기 부 금	1,440,000	41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0				10,000		10,000	
잡 손 실	112,721							
<b>VIII.법인세차감전이익</b>	<b>44,375,276</b>	<b>23,476,713</b>	<b>321,890,757</b>	<b>297,153,333</b>	<b>4,710,277</b>	<b>20,211,333</b>	<b>62,655,059</b>	<b>68,272,713</b>
<b>IX.법 인 세</b>								
<b>손 익</b>	<b>44,375,276</b>	<b>23,476,713</b>	<b>321,890,757</b>	<b>297,153,333</b>	<b>4,710,277</b>	<b>20,211,333</b>	<b>62,655,059</b>	<b>68,272,713</b>

# 2017년 결산총합금액은 사업기간중(17년1월~12월) 종료된 사업소 제외된 금액임.(둔산한의원,스포츠의학센터,격차해소 리빙랩사업)

계정 과목	의료사업소		경영지원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둔산치과 결산	둔산치과 예산	경영지원실 결산	경영지원실 예산	참선 결산	참선 예산	노인건강돌봄 사업 결산	노인건강돌봄 사업 예산
I. 매출액	411,655,363	436,800,000	7,600,000	6,600,000	78,264,565			
II. 매출원가	58,657,660	60,000,000	-		-			
III. 매출총이익	352,997,703	376,800,000	7,600,000	6,600,000	78,264,565	-		
IV. 판매비와관리비	323,470,900	326,413,333	300,411,200	373,653,333	111,140,206	49,732,000	27,132,237	29,272,000
임직원급여	195,615,813	217,000,000	100,340,000	178,000,000	58,087,510	24,000,000	6,113,946	
갑					657,270			
퇴직급여	16,261,120	18,083,333	8,686,527	14,833,333	4,772,741	2,000,000	13,044,940	
복리후생비	10,351,008	12,000,000	12,694,952	22,400,000	3,224,517	1,460,000	3,635,333	4,500,000
여비교통비	2,102,000		2,698,644	3,000,000	1,364,326	600,000	63,900	
통신비	679,032	700,000	5,909,392	6,200,000	263,135	150,000	107,738	150,000
수도광열비	378,894	400,000	2,097,062	2,200,000	15,183	200,000	379,338	200,000
전력비	5,330,264	5,500,000	2,558,078	2,700,000	20,705	1,000,000	1,399,247	1,000,000
세금과공과금	6,229,100	6,500,000	7,792,280	10,000,000	1,780,820	1,100,000		
감가상각비	18,373,675	2,270,000	41,586,418	14,750,000				
지급임차료	18,480,000	18,480,000	32,644,000	23,520,000		6,732,000		6,732,000
수선비	76,450	400,000	2,832,050	2,000,000		250,000		250,000
보험료	4,235,208	4,500,000	3,202,093	3,000,000	786,243	440,000	-1,601,945	
차량유지비			341,000		80,000			
교육훈련비	622,600	480,000	895,000	1,500,000	348,700	500,000	1,026,800	
도서인쇄비			260,550	1,500,000				
회의비	35,500	300,000	5,493,620	4,500,000	733,010	300,000	193,300	
소모품비	2,362,310	2,000,000	5,888,236	5,000,000	75,190			
지급수수료	10,705,647	11,000,000	14,894,198	15,000,000	21,080,320	1,000,000		
건물관리비	3,230,345	3,800,000						
협회비	24,000		400,000	400,000				
무형고정자산상각	209,834		2,044,000	3,200,000				

계정 과목	의료사업소		경영지원실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둔산치과 결산	둔산치과 예산	경영지원실 결산	경영지원실 예산	참선 결산	참선 예산	노인건강돌봄 사업 결산	노인건강돌봄 사업 예산
연 대 활 동 비			24,625,750	27,000,000	2,399,960	2,000,000		
조 직 활 동 비			836,800	13,000,000	952,260			
기 금 사 업 비					3,366,236		2,769,640	16,440,000
홍 보 활 동 비			7,789,330	9,950,000	13,000			
인 적 용 역 비			13,628,480	10,000,000	10,163,620	3,000,00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28,168,100	23,000,000	272,740		955,460			
(가칭)기부금충당금		5,000,000						
(가칭)기부금충당금		-5,000,000						
예 비 비						5,000,000		
<b>V . 영 업 이 익</b>	<b>29,526,803</b>	<b>50,386,667</b>	<b>-292,811,200</b>	<b>-367,053,333</b>	<b>-32,875,641</b>	<b>-49,732,000</b>	<b>-27,132,237</b>	<b>-29,272,000</b>
<b>VI.영 업 외 수 익</b>	<b>8,781</b>		<b>15,667,340</b>	<b>59,920,000</b>	<b>374,896</b>	<b>24,000,000</b>	<b>13,743,081</b>	
이 자 수 익	8,755		1,954,122	2,000,000	26,958		123,045	
정부지원및보조금			11,360,000	57,200,000		24,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99,000					
잡 이 익	26		1,854,218	720,000	347,938		13,620,036	
<b>VII.영 업 외 비 용</b>			<b>51,269,929</b>	<b>50,410,000</b>	<b>70</b>		<b>112,641</b>	
이 자 비 용			49,828,919	50,000,000				
기 부 금			1,440,000	41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잡 손 실			10		70		112,641	
<b>VIII.법인세차감전이익</b>	<b>29,535,584</b>	<b>50,386,667</b>	<b>-328,413,789</b>	<b>-357,543,333</b>	<b>-32,500,815</b>	<b>-25,732,000</b>	<b>-13,501,797</b>	<b>-29,272,000</b>
<b>IX.법 인 세</b>								
손 익	29,535,584	50,386,667	-328,413,789	-357,543,333	-32,500,815	-25,732,000	-13,501,797	-29,272,000



##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결주문: 2017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는 현재의 차입금 1,395,864,555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관계조항: 정관 제32조제10호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기타의안





## 부록

### 민들레 10원칙에 의한 2017년 보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개정안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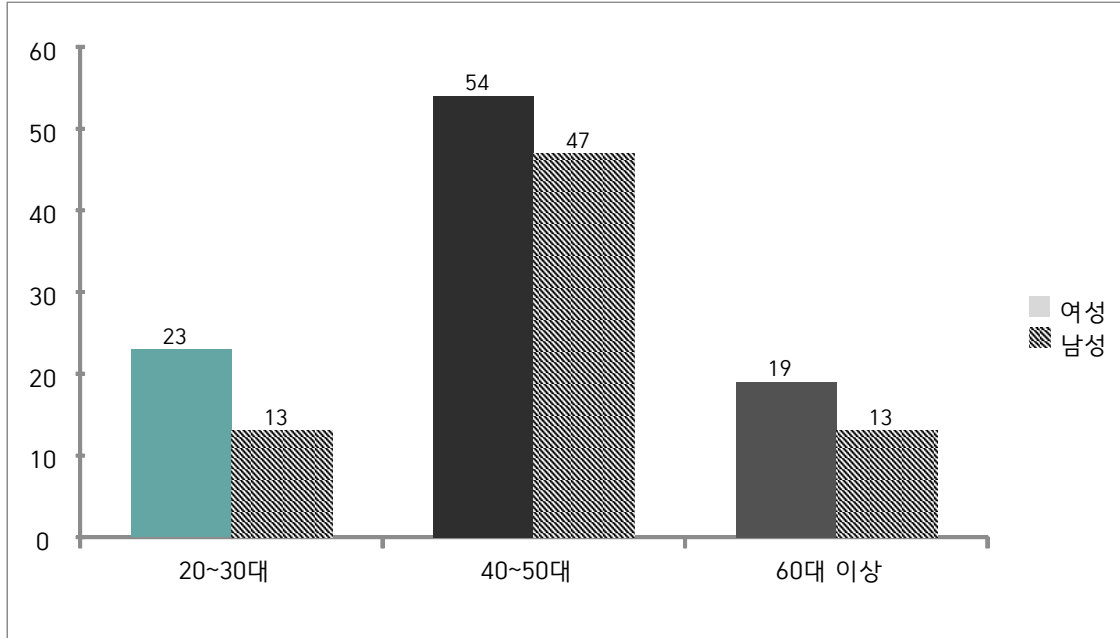
## 10원칙에 의한 사업평가

- 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 제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제 4원칙: 자율과 독립
- 제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제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제 8원칙: 적정진료, 적정서비스의 원칙
- 제 9원칙: 노동자 주권의 원칙
- 제10원칙: 약자우선

## I.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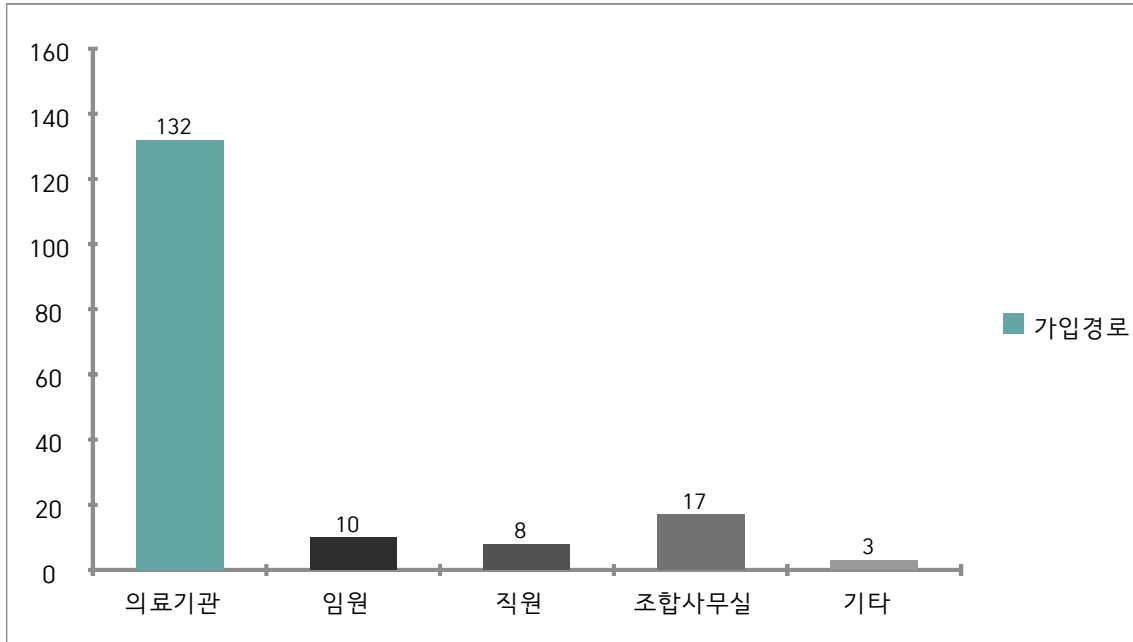
### <2017년 가입조합원 현황: 성별, 연령별>



#### o 2017년도 가입 조합원 연령별 성별 현황

총계(명)	여성(명)				남성(명)				법인
	20~30대	40 ~ 50대	60대 이상	계	20~30대	40 ~ 50대	60대 이상	계	
170	23	54	19	96	13	47	13	7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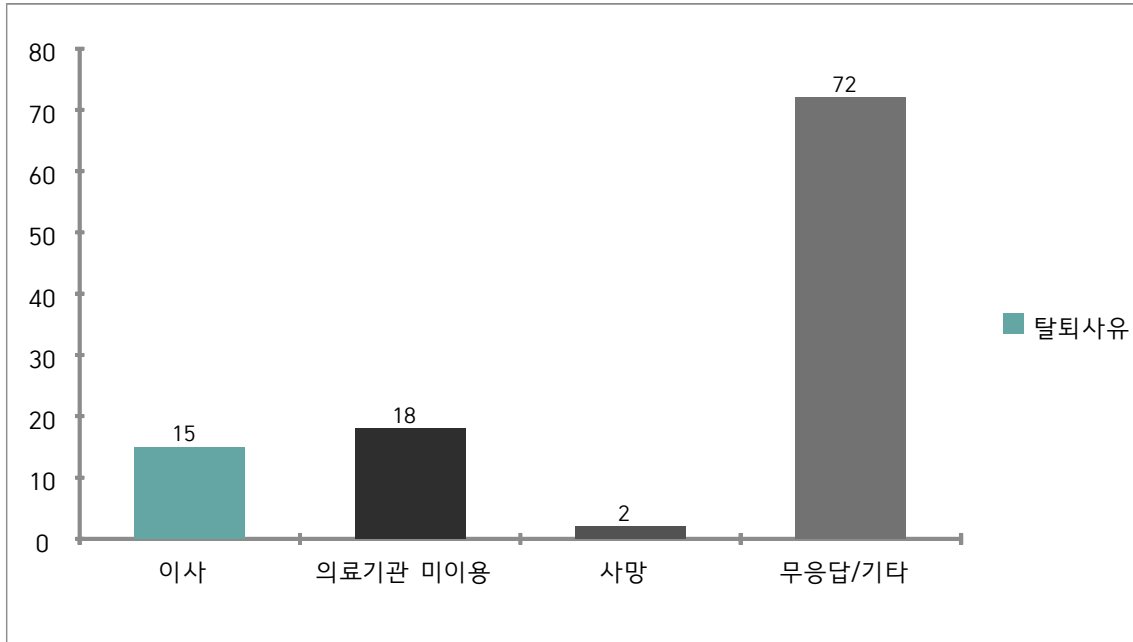
<2017년 가입조합원 가입경로>



o 2017년도 가입 조합원 가입 경로 분류

총계(명)	의료기관(명)	임원(명)	직원(명)	조합사무실(명)	기타(명)
170	132	10	8	1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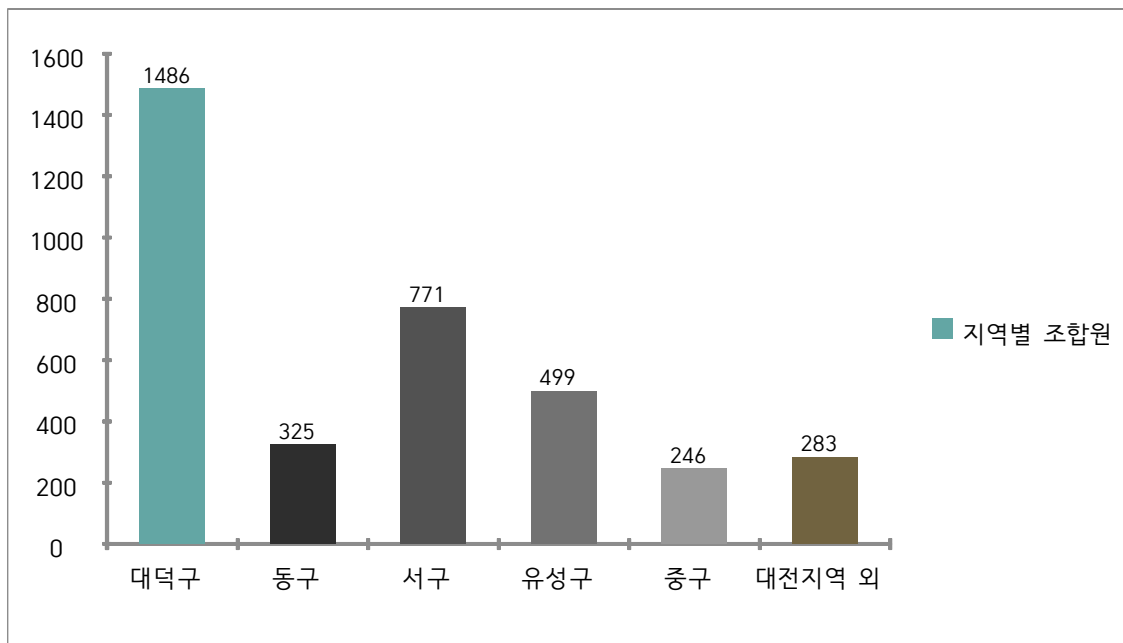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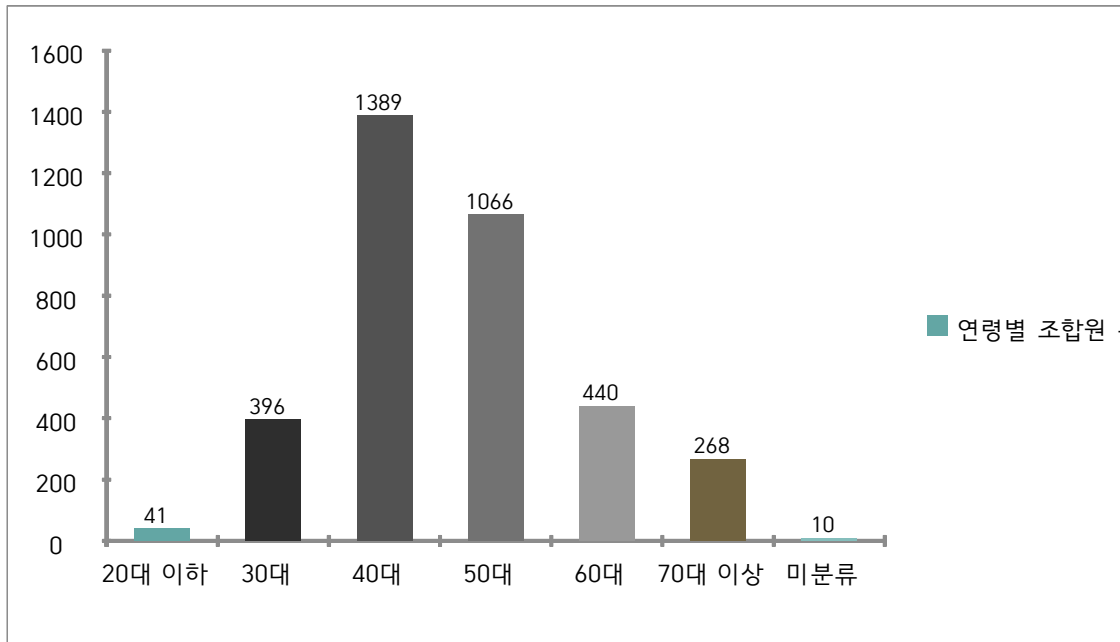
<2017년 탈퇴조합원 현황: 가입기간, 탈퇴사유별>



o 2017년도 탈퇴 조합원 가입 기간 및 탈퇴 사유에 따른 분류

가입기간	총계	이사	의료기관 미이용	사망	무응답/기타 (자금필요 등)
총계	107	15	18	2	72
10년 이상	4	1	1	-	2
10년 미만 5년 이상	35	6	4	-	25
2년 이상 5년 미만	50	6	13	1	30
2년 미만	17	2	-	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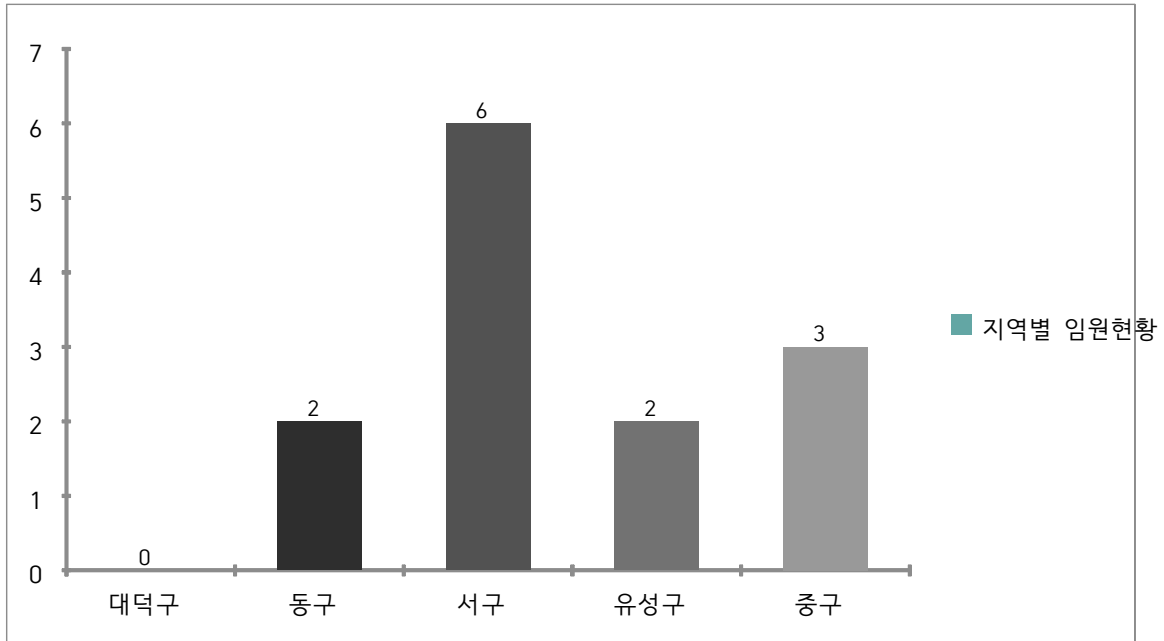
<총조합원: 2017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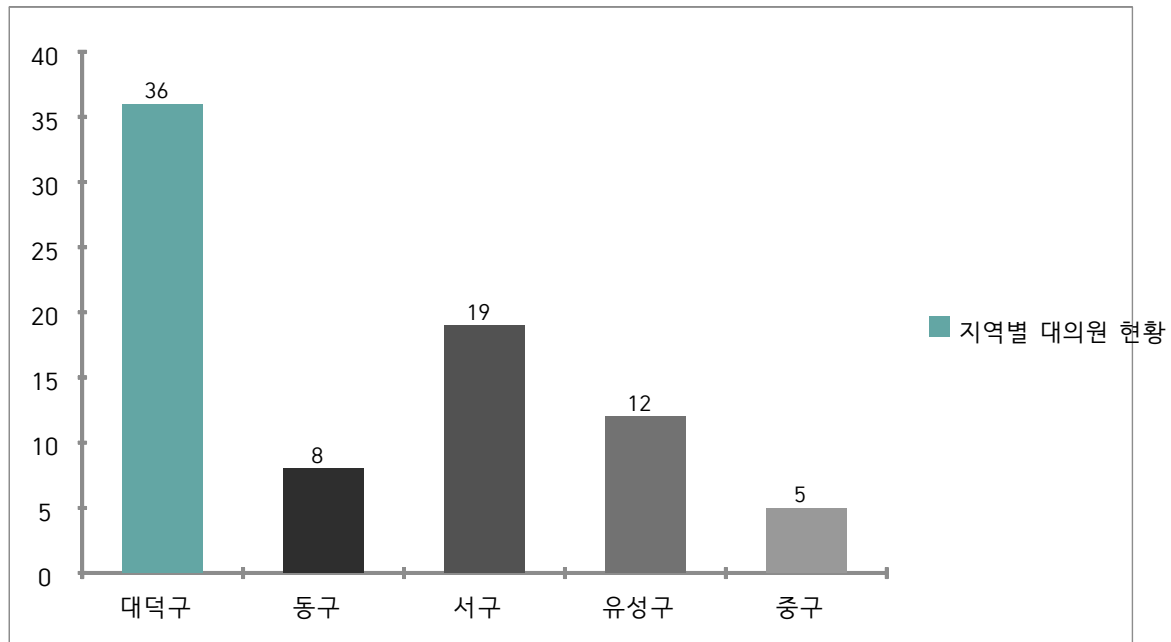
## II.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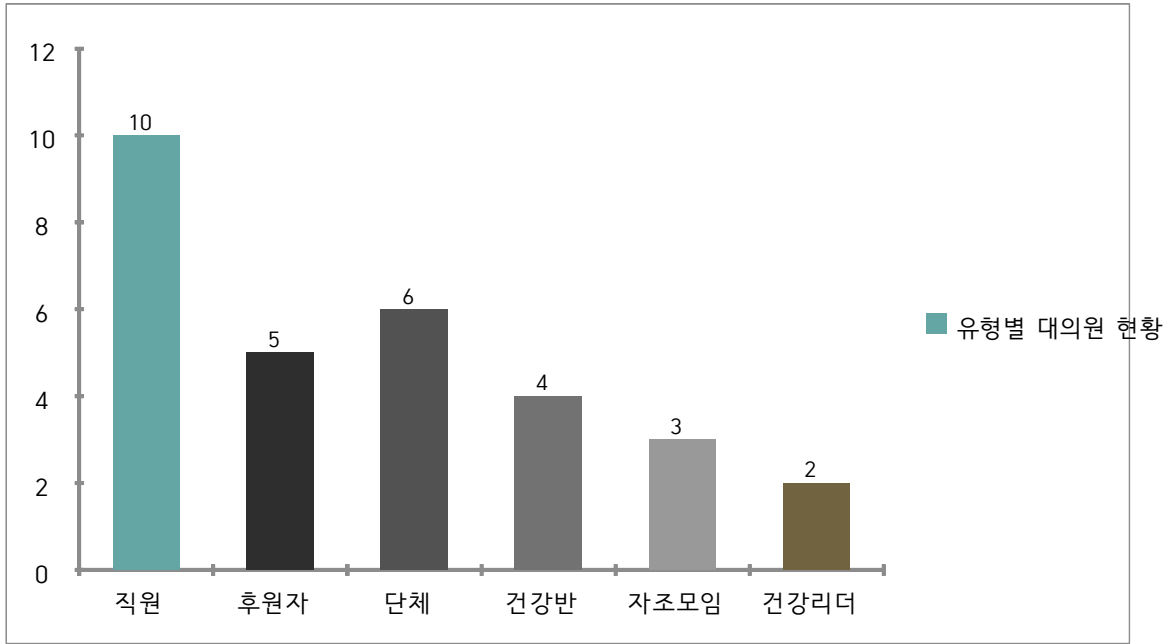
### <임원구성현황: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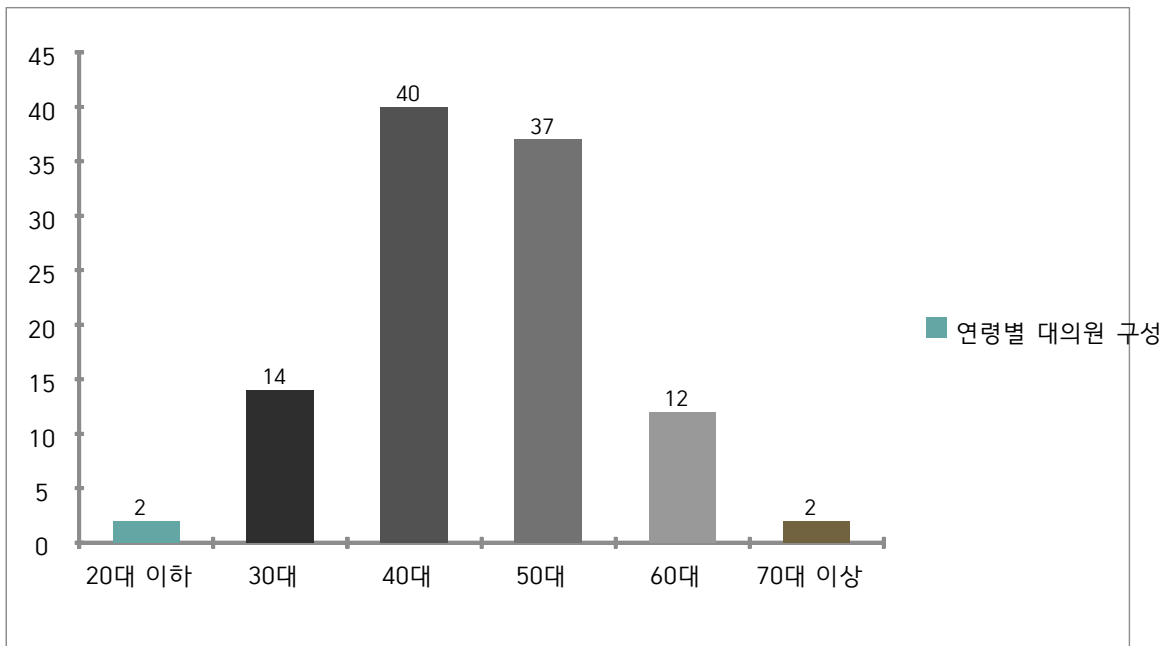
### <대의원 구성현황: 지역별>



<대의원 구성현황: 유형별>



<대의원 구성현황: 연령별>



<민주적 운영 현황>

구분	참여대상	개최횟수	평균참석률
총회	조합원(대의원)	1회	69.7%
이사회	임원	12회	62.8%



### Ⅲ. 제3원칙 : 조합원에 의한 경제적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준비금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기타, 조합원 동의를 얻은 활동지원”

#### ○ 출자금 현황(2017.12.31.현재)

총액(원)	증가액(원)	감소액(원)	증감액(원)	1인당 출자액(원)
1,299,503,241	263,192,650	336,585,000	△73,329,350	359,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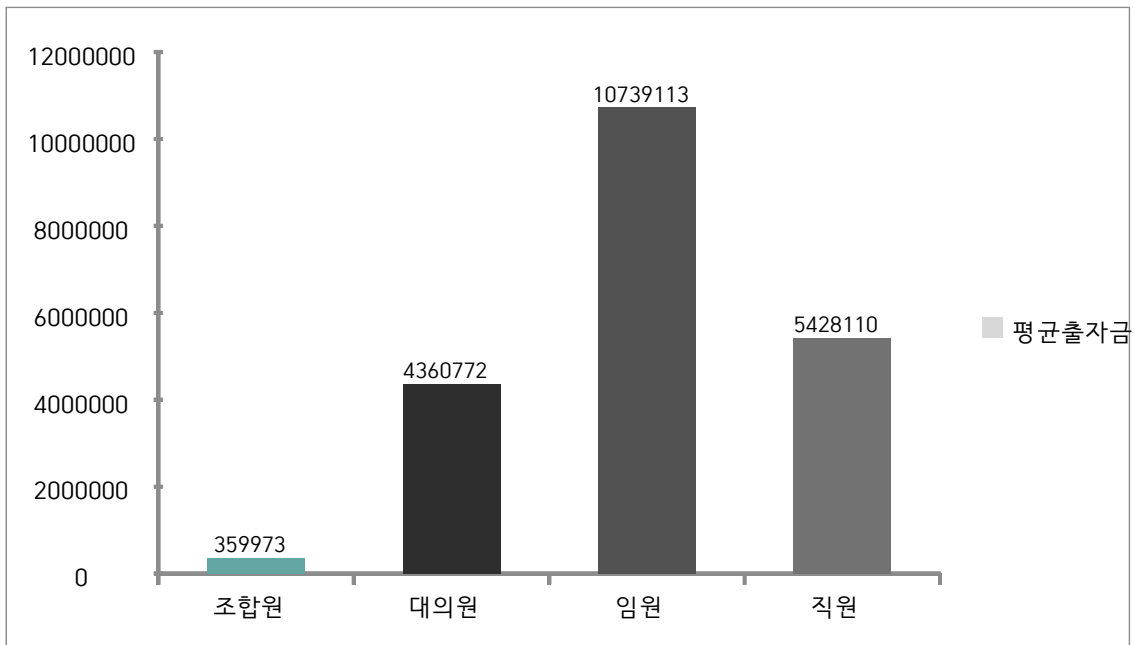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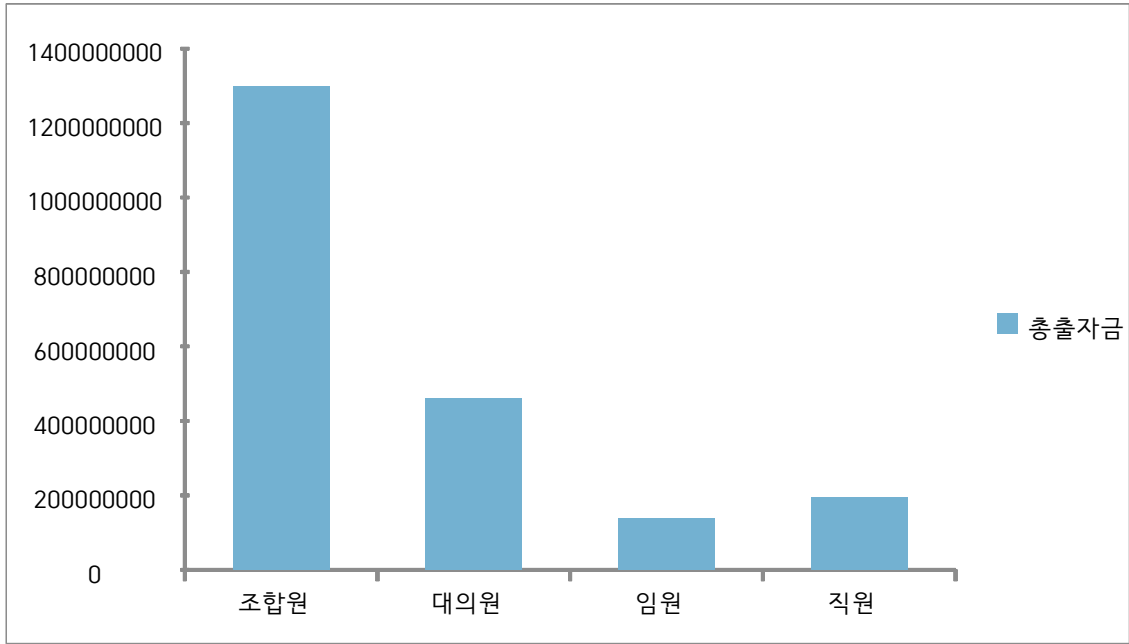
#### ○ 출자금액 분포 현황(2017.12.31.현재)

구분	50,000원	100,000원 미만	500,000원 미만	1,000,000 원 미만	1,000,000 원 이상	총계
조합원 수 (명)	1,919	356	1,066	112	157	3,610
금액(원)	95,950,000	23,399,500	156,262,690	75,553,050	948,338,001	1,299,503,241

#### ○ 출자금에 따른 지표 현황(2017.12.31.현재)

구분	비율	산출근거	비고 (법정 의무 비율)
자산대비 출자금 비율	64%	(출자금/총자산)×100, % (1,299,503,241/2,037,403,783)×100	50% 이상
조합원 이용률	인원대비	(조합원연인원 18,873 / 연인원 60,005)×100, %	50% 이상
	금액대비	(조합원매출990,671,574 / 총매출2,487,829,739)×100, %	

<2017년 출자금 현황: 구성원별>



○ 2017년도 출자금 현황(※대의원, 임원, 직원 중복의 경우 모두 포함하였음.)

구분	조합원	대의원	임원	직원
	3,610	107	13	36
총출자금	1,299,503,241	460,182,623	139,608,474	195,411,953
평균출자금	359,973	4,360,772	10,739,113	5,428,110

○ 기부금 현황(2017.12.31.현재)

총액(원)	스스로조합비		일반 후원금		비고
	회원수	금액	참여자수	금액	
28,147,070	195명	22,550,000원	12명	5,597,070원	단체 포함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강건구 강수환 강종구 강종숙 강종예 강현석 고광현 고명순 고명호 고미경 공옥순 권기철  
 권미양 권의경 권지연 권지훈 김경희 김광희 김대희 김동석 김동수 김무남 김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향 김민희 김삼용 김성훈 김수경 김수진 김영선 김영해 김옥순 김용경 김윤기  
 김은선 김 의 김자영 김재용 김찬옥 김창일 김현영 김현태 김혜원 김희형 나준식 남은순  
 노가은 노미정 노훈희 민혜란 박문주 박미양 박범진 박병철 박상수 박승도 박영민 박유경  
 박종례 박종희 박준규 박지영 박진희 박태일 배영미 백경수 백유선 봉미경 서운철 서현정  
 석연희 선재규 성광진 손태희 손형우 송석채 송직근 송해경 신경희 신귀연 신명호 신소연  
 신용희 신원식 신지혜 신현정 신호섭 안영섭 양봉석 양성주 엄경애 엄기정 엄윤숙 엄은경  
 오민우 우광제 우인옥 유 미 유미경 유수진 유승민 유승우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윤명숙  
 윤미경 윤보국 윤순애 윤연숙 윤창재 이경자 이금자 이기순 이덕희 이동철 이민영 이선아  
 이선영 이 송 이숙경 이연주 이영은 이원표 이윤정 이자우 이정섭 이종현 이주욱 이주현  
 이지명 이진미 이찬현 이해순 이혜영 이효진 임경옥 임애경 임은정 임인선 임주성 임현정  
 임희정 장기홍 장병천 장사라 장현미 전경화 전송희 정나현 정병오 정복희 정상민 정연희  
 정운재 정은희 정종하 정철호 정현숙 조병민 조성주 조세종 조영국 조윤희 주영배 주웅식  
 진옥화 차은영 차주연 채유희 천성아 최소영 최수이 최영태 최은남 최장희 최정주 최정혜  
 한선영 한영수 허애령 허영란 홍미옥 홍미자 홍완기 홍은영 홍종순 홍춘기 홍현채 황성희  
 황신애 황정애 황정인

<후원자>

강만식 김삼용 김영만 배영미 최장희 허애령 무명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주)동영건설 마음의숲생명복지관 씨앗기금

○ 공동체화폐 이용 현황(2017.12.31.현재)

<미산출>

#### IV.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외부자금 비율>

	총액	외부자금	비율	비고
지출금	2,637,357,057	496,582,114	19%	프로젝트 사업비, 공모사업 등
차입금	1,395,864,555	1,025,864,555	73%	cf) 조합원차입 370,000,000

#### ※ 프로젝트 사업비

프로젝트명	사업비(원)	기관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	379,043,25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사업	10,000,0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꾸자'사업	7,000,000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저통증 인슐린주사침 연구개발(리빙랩)	80,000,000	한국연구재단
2017년 건강나눔사업	258,140	(재)아이쿱씨앗재단
<b>계</b>	<b>476,301,395</b>	

#### ※ 공모사업 후원금

프로젝트명	사업비(원)	기관
사회적기업 홍보캠페인	5,900,0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성과인센티브	14,380,719	SK행복나눔재단
<b>계</b>	<b>20,280,719</b>	

## V. 제5원칙 :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리더 양성과정>

구분	참여자	인원
2기 건강리더 (자기건강관리)	김수진, 임주성, 배영미, 남은순, 박은배, 이금자, 김옥순, 박종례, 박진숙	9
시니어리더 2기 (자기건강관리)	강영순, 권영주, 김경순, 김경희, 김정자, 김태순, 소육례, 송선희, 서경숙, 심석순, 안영숙, 우종숙, 윤정순, 이정자, 이정자, 정옥금, 정춘택,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한귀분	21
3기 건강리더 (자기건강관리)	최미경, 국경덕, 한영수, 김혜원, 이명희, 이영은, 박정희	7
청소년리더 2기 (지역건강조사)	강규혁, 고경민, 구재모, 구지영, 김동용, 백찬하, 심지후, 안경민, 안도현, 윤희섭, 이민수, 허재영	12
4기 건강리더 (어르신건강돌봄)	이시현, 최석민, 박미리, 정성미, 최은숙, 김영미, 신지혜, 이순희, 유난형, 신철교, 이임향	11

### <실습, 인턴 프로그램>

소속	내용	참여자	인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비전체험실습	박준희, 이준호	2명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사회적경제 인턴십	박두환, 전민우, 설재균	3명

### <견학>

소속	내용	참여자	인원
대안화폐공부모임	의료협동조합 운영, 한발레츠	김덕은, 강시영, 고동의, 이선연, 정외숙, 이명은	6명
생명종합사회복지관	판암2동 협동조합 준비모임 (협동조합 학습)	-	14명

###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속	내용	참여자	인원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중학생)	의료인 진로체험 (활동소개, 의료인 만남)	-	7명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중학생)	의료인 진로체험 (활동소개, 의료인 만남)	-	3명

〈홍보채널〉

오프라인	소식지, 브로셔(사업홍보물), 사업결과보고서, 의료기관 모니터 등
온라인	홈페이지(공식), 페이스북페이지(주요공지), 블로그(주요활동), 밴드(커뮤니티: 조합원, 대의원, 직원, 소모임 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주치의, SNS소식지 등)

VI. 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구분	기관	내용
먹을거리	품앗이 생협, 대덕품앗이협동조합	친환경 로컬푸드 식재료: 직원식당 공급
	한살림대전생협 식생활문화센터	식생활문화교육 등
심리, 정서	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심리상담, 프로그램: 건강리더 양성과정
의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의료제도, 정책개선 등 연대활동
IT	위즈온협동조합	민들레 홈페이지 구축, 관리
연구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 협동조합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모델 구축 컨설팅
생태계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협동조합연대	

## Ⅶ.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 구축>

구분	내용	비고
인증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제2007-054호)
	아동, 여성 안전 협력병원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대전광역시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제2016-0130호)
	청소년 희망 멘토 사업장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양심과 인권 '나무'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자활센터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대전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대전유성구지역자활센터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파랑새동지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사단법인 토닥토닥	
	충남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주)센드커뮤니케이션	SNS모바일 소식지
	(주)제일사료	1사1사회적기업 결연
	굿네이버스 대전서부지부	사회공헌 협약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기업 결의 협약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업무제휴 협약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주)행복한 나눔센터	
	(재)아이쿱씨앗재단	생협건강나눔사업 추진 협약
	대전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제휴 협약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새벽	공동업무협약
	대전복지재단	1사1사회적경제기업 결연
	충남대학교병원	진료협력병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협력의료기관
	마당극패 우금치	업무협약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민주노총 건설노조	업무협약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프로젝트 운영, 수행 협약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업무협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업무협약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대전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의료, 건강분과
	한살림대전 식생활문화센터	업무협약
건강검진 협약	유성구청	
	대덕구청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애인보호작업장 '느루'	
	공공연구노동조합	
	청소년 일시보호센터	학교 밖 청소년 검진
	초, 중, 고교	학생검진
지역사회주 도형 노인건 강돌봄사업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대덕품앗이협동조합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법1동복지만두레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유성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충남대학교병원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대전중앙요양병원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사회적기업 (주)파란세상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노인건강돌봄사업 업무협약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91개)	<p>예그리나, 늘소망, 풀잎, 샛별, 즐거운유림, 스마일, 사랑뜰, 작은숲키 큰, 행복 한, 그린하트, 어울림, 꿈이큰, 산토끼, 아띠굿맘, 예쁜키즈, 하나, 아해뜰, 코 끼리, 예능, 예술, 호야가정, 꼬마예담, 참, 하나몬테소리, 아이린, 튼튼이, 선 비영아, 새록새록, 중리프뢰벨, 친구랑, 엄마사랑, 꼬망, 와동파랑새, 키다리, 예담,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송촌, 한마음, 샤론가정, 미니가정, 미소, 종이나라, 숲속오후, 해달별, 푸르미영재, 아이샘, 엔젤, 아이비, 하담영아, 행복나라, 행 복한,예그리나, 꼬마대장, 튼튼이, 예그리나, 초망, 염광, 늘푸른, 숲, 중원, 보 람바하, 킨더하바, 꽃망울, 꼬꼬마, 미피와친구들, 예다움, 좋은생각, 솜사탕, 늘사랑, 이솝, 열린, 사과나무, 샘사랑, 오성, 민들레, 은하수, 오렌지숲, 또래, 작은천사, 아기사랑미술, 효촌마을, 아기별, 별나라, 법동사랑가득, 사랑나무숲, 개구쟁이, 하람들, 브레인, 풀잎(둔산), 가온누리</p>	



**Ⅷ. 제8원칙 : 걱정진료, 걱정서비스의 원칙**

**“과잉진료를 경계하되 우리사회 현재수준의 진료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표개발 활동: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연구>**

총 25개 지표 중 비재무지표 건강분야 5개 지표 검토.

※기본지표(6), 재무지표(4), 비재무지표: 참여(4), 비재무지표: 건강(5), 지속가능성지표(6)

초진시간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 초진시간
생활처방전 제공횟수	생활습관 개선, 운동처방 등 제공 횟수
조합원 건강강좌, 건강교육 횟수	
지속관리, 사례관리 환자 수	등록관리 환자(조합원) 수
조합원 건강 실천률	금연, 금주 등 조합원 건강 실천률

**<의료기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성과, 혁신, 위험관리 3개 분야로 나눠 정기 관리예정(세부자료 2018년 단위별 사업계획 참조).

**Ⅸ. 제9원칙 : 노동자 주권의 원칙**

**“노동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성장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주권을 부여하며, 주체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 조합원 현황>**

직원 조합원 가입률 : 41명 중 37명 가입, 90%(신규 입사에 따른 1월 조합원 가입자 3인)

직원 출자금 총액 : 총 출자금 1,299,503,241원 중 174,948,953원(약 13%)

직원 1인당 평균 출자금 : 4,859,693원

**<노사협의회(임직원협의회) 규정>**

규정 개정 : 2017.4.24.

근로자대표위원 및 근로자위원 직접선거로 선출 : 이지명 대표위원, 장현미 위원, 황정인 위원

협의회 개최 : 총 4회 개최

근로자 대표위원 이사회 참석 : 1회(2017년 11월)

주요 이행 실적 : 임금 협상, 시간외근무 단축, 예결산 심의, 규정 재개정 심의 등

**<직원 상조회>**

직원상조회 회칙 제정 : 2017년 7월 1일

회의 개최 : 매월 1회

상조회 경조비 및 대출금 지급

**<직원대표 경영진 참여>**

직원 이사 : 나준식, 민혜란, 배영미 이사  
매월 정기 이사회 등 경영활동 참여

**<각 단위 기관 자주관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회의 주기 : 매주 화요일 13:00  
참석 대상 : 경영지원실장 및 각 기관 팀장  
회의 안건 : 각종 현안 공유 및 경영 성과 토의 등  
주요 이행 실적 : 예산에 따른 회계 사무 처리 및 각 단위 기관별 회의 개최,  
단위 기관별 자체 사업 평가 및 사업 계획 수립 등

**X. 제10원칙 : 약자우선**

“약자와 소수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재원: 외부지원금, 기부금(스스로조합비), 조합자체자금 순으로 총당예정: 연 37,453,180원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

성소수자진료 관련 직원교육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사업 수행  
대전 장애인건강권 네트워크 참여  
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참여(의료, 건강분과)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전 문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제 9 조 )
제 2 장	조 합 원	( 제 10 조 ~ 제 17 조 )
제 3 장	출 자	( 제 18 조 ~ 제 23 조 )
제 4 장	총 회 와 이 사 회	( 제 24 조 ~ 제 43 조 )
제 5 장	임 원	( 제 44 조 ~ 제 56 조 )
제 6 장	사 업	( 제 57 조 ~ 제 61 조 )
제 7 장	회 계	( 제 62 조 ~ 제 71 조 )
제 8 장	합병·분할 및 해산	( 제 72 조 ~ 제 75 조 )
부 칙		

##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계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협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밝힌 네가지 이념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의료의 공공성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
5.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단체조합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

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1. 차량 및 시설 사용료
2. 조합가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삭제 2015.4.9>**

-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4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변경전 정관의 임기로 선출된 대의원도 변경후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 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되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는 임원선출선거공고 3일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사 업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

설, 건강증진시설

-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
-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4.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 5.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7. 임대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

-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

**제58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57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5%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한도 이내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소액대출계약시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9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 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



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 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 계

**제62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4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56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년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9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9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1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2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5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규약

---

---

- 총회운영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소액대출사업 운영 규약(미제정)
  - 대손충당금 운영 규약(미제정)
  - 상호부조사업 운영 규약(미제정)
- 
-

# 총회 운영 규약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결사항]

-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제13조[표결 순위]**

-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의사록]**

-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 2. 소집통지 일자
  - 3. 개최일시 및 장소
  -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 5. 회의의 목적사항
  -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정]** 2013년 2월 23일 정기총회.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7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정] 2013년 2월 23일 정기총회.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정]** 2013년 2월 23일 정기총회.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기관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정]** 2013년 2월 23일 정기총회.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과태금]

-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금의 유예]

-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5조[과태금의 면제]

-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정] 2013년 2월 23일 정기총회.

---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개정정관(안)

---

일부개정 2014.04.21.

일부개정 2015.04.09.

일부개정 2017.04.04.

###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계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발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활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활협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 2층(탄방동)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
2. 조합가입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



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고문)** ① 총회회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회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5.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7. 임대사업

-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한다.
-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2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61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소액대출계약시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1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3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 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1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4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6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7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제68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9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1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5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개정규약(안)

---

- 총회운영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 총회운영규약

---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년도 말 30일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년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년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 통지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 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민들레** Mindlle

 Mindl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 대덕민들레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의원 638-9012

한의원 638-9013

치과 638-2275

건강검진 716-5002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638-9043

경영지원실 638-9053

조합대표번호 638-9042 / fax 638-9055

■ 둔산민들레

대전 서구 문예로 7(2층)

치과 716-7003